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1. 4. 23.

저작귀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 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목 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번호
목적	1
적용	한2.1
적용범위	2~7
용어의 정의	8
단기종업원급여	9~25
인식과 측정	11~24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11~12
단기유급휴가	13~18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	19~24
공시	25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26~49
복수사용자제도	32~39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40~42
공공제도	43~45
보험에 가입된 급여	46~49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50~54
인식과 측정	51~52
공시	53~5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55~152
인식과 측정	56~60
의제의무에 대한 회계처리	61~62
재무상태표	63~65
인식과 측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	66~98

목 차 보험수리적 평가방법 67~69 급여의 기가 배분 70~74 보험수리적 가정 75~80 보험수리적 가정: 사망률 81~82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83~86 보험수리적 가정: 임금, 급여, 의료원가 87~98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99~112 과거근무워가 102~108 정산 손익 109~112 인식과 측정: 사외적립자산 113~119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13~115 보상 116~119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20~130 당기근무원가 122A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123~126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27~130 표시 131~134 상계 131~132 유동성 · 비유동성의 구분 133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34 공시 135~152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 139 재무제표상 금액에 대한 설명 140~144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145~147 복수사용자 제도 148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149~150

목 차

다른 기준서의 공시규정	151~15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53~158
인식과 측정	155~157
공시	158
해고급여	159~171
인식	165~168
측정	169~170
공시	1 7 1
경과 규정과 적용일	172~179

부록 A. 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문단비교표

[결론도출근거]

IAS 19의 결론도출근거 (BC1-BC284)

IAS 19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개요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는 문단 1에서 179까지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의 권위는 같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목적

-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공시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미래에 지급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
 - (2)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2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이 기준서에서는 종업원급여제도에 의한 재무보고를 다루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보고' 참조).

- 4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종업원 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나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합의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 (2) 법률이나 산업별 약정에서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그 밖의 복 수사용자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급여
 - (3) 의제의무가 생기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종업 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 는 경우, 이 비공식적 관행으로 인하여 의제의무가 생긴다. 이 의제의무의 예에는 기업이 비공식 관행에 따르지 않는다면 종 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5 종업원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다음과 같은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개)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 (L) 유급연차휴가·유급병가
 - (대) 이익분배금·상여금
 - (라)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하는 재화·용역) 등
 - (2) 다음과 같은 퇴직급여:
 - (개)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 (내) 그 밖의 퇴직급여(예: 퇴직후생명보험, 퇴직후의료급여)
 - (3) 다음과 같은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개) 장기유급휴가(예: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 (내)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 (대) 장기장애급여
 - (4) 해고급여

- 6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나 그의 피부양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포함하며, 종업원이나 그의 배우자, 자녀, 그 밖의 피부양자에게 직접 지급(또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하거나 보험회사와 같은 제삼자에게 지급(또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하여 결제할 수있다.
- 종업원은 전일제, 시간제, 정규직,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는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도 종업 원에 포함한다.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급여의 정의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 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종업 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 퇴직 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 급여는 제외)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를 제외 한 종업원급여

해고급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

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

- (1)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
- (2)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 는 결정

퇴직급여제도의 분류와 관련된 정의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약정이나 비공식 약정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더는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즉 그 기금에서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복수사용자제도: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확정급여제도(공 공제도 제외)나 확정기여제도(공공제도 제외)

- (1) 동일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여러 기업이 출연한 자산을 공동 과리한다.
- (2) 둘 이상의 기업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그 자산을 사용하며, 기여금과 급여 수준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별 기업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관련된 정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과소적립액이나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

는 초과적립액

과소적립액 또는 초과적립액: 다음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 (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존재하는 경우)

자산인식상한. 제도에서 환급받는 형태로 또는 제도에 납부할 미래 기여금을 절감하는 형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사외적립자산: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장기종업원급여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2) 적격보험계약

장기종업원급여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할 수 없는 금융상품은 제외)

- (1)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실체(기금)가 보유하는 자산
- (2)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심지어 파산의 경우를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고기업에 반환될 수 없는 자산
 - (개) 기금의 잔여자산이 급여제도나 보고기업의 관련 종업원급 여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 (내) 보고기업이 종업원급여를 이미 지급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 해 반환하는 경우

적격보험계약.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의)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¹⁾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

- (1) 보험금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2) 보험금은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가 이용할 수 없으며(파산의 경우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다면 보고기업에 지급할 수 없다.
 - (가)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도 보험금이 남는 경 우
 - (H) 보고기업이 종업원급여를 이미 지급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 해 반환하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참조)

확정급여원가와 관련된 정의

근무원가: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 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
- (2) 과거근무원가: 제도가 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변경) 되거나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 으로 줄임)됨에 따라,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 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금액
- (3) 정산 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보고기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¹⁾ 적격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계약 일 필요는 없다.

생기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보험수리적손익
- (2)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 (3)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보험수리적손의: 다음으로 인해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 (1)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
- (2)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금과 그 밖의 수익(사외적립자산의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 포함)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

- (1) 제도운영원가
- (2)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제외)

정산: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제도의 규약에 정해져 있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종업원이나그 대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제외)

단기종업원급여

- 9 단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다만,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 (2) 유급연차휴가와 유급병가
 - (3) 이익분배금·상여금
 - (4)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하는 재화·용역)
- 10 결제 예상시기가 일시적으로 바뀐다면 단기종업원급여를 재분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여의 특성이 달라지거나(비누적 급여에서 누적 급여로 변경) 결제 예상시기의 변동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그 급여가 단기종업원 급여의 정의를 계속 충족하는지를 고려한다.

인식과 측정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 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 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으로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 (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 12 문단 13, 16, 19에서는 유급휴가, 이익분배금, 상여금 형식의 단기 종업원급여에 문단 11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단기유급휴가

- 13 문단 11에 따른 유급휴가 형식의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 (2) 비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 14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육아휴가, 배심원 참여,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원의 휴가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이 유급휴가는 누적 유급휴가와 비누적 유급휴가로 구분한다.
- 15 누적 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 누적 유급휴가는 가득되거 나(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가득되지 않을(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생긴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16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 가 누적되어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으로 측정하다.
- 17 문단 16에서 정한 방법은 급여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지급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많은 경우에, 미사용 유급휴가와 관련한 중요한 채무가 없다는 추정을 하기 위해 상세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급병가에 대한 채무는 미사용 유급병가를 유급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있다는 공식 또는 비공식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요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단 16과 17에 대한 사례

기업은 종업원 100명에게 1년에 5일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를 주고 있으며, 미사용 유급병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는 해당 연도에 부여된 권리를 먼저 사용한 다음 직전 연도에서 이월된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후입선출법). 20X1년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유급병가는 종업원 1명에 평균 2일이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X2년도중에 종업원 92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5일 이하, 나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5일 이하, 나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평균 6.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미사용 유급병가에 대해 추가로 12일(1.5일×8명)분의 병가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12일분의 유급병가에 상응하는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18 비누적 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 이 경우는 주로 유급병가(미사용 유급병가로 미래에 받게될 유급병가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출산·육아휴가와 유급 배심원참여·병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관련 급여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

- 19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문단 11의 이익분배금과 상여금의 예 상원가를 인식한다.
 -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긴다.
 - (2)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20 종업원이 특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이익분배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 종업원이 특정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기업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증가하므로 의제의무가 생긴다. 이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일부 종업원이 이익분배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문단 20에 대한 사례

기업은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회계연도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제도를 두고 있다. 해당 회계연도에 퇴사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익분배금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3%가 될 것이지만, 일부 종업원이 퇴사함에 따라 실제 이익분배금 총액은 당기순이익의 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은 당기순이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 21 기업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의제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제의무를 측정할 때 일부 종업원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22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1)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급여계산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 (2) 재무제표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지급액이 산정된다.
 - (3)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의제의무의 금액을 명백히 결정할 수 있다.
- 23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 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24 이익분배금이나 상여금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 차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 지 않는다면 기타장기종업원급여(문단 153~158 참조)에 해당된다.

공시

25 이 기준서에서는 단기종업원급여에 관한 공시사항을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주요 경영진의 종업원급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또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도 종업원급여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 26 퇴직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 (1)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 (2)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 급여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급여제도이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모든 약정에 적용하며, 기여금을 출연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실체의 별도 설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7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 환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생기는 투자수익에 따라 산정된다. 그결과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투자한 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 29 기업의 의무가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에 법적의무와 의제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1) 제도의 급여계산방식이 단순히 기여금에만 연동되지 않고, 투자한 자산이 제도의 급여계산방식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데충분하지 않을 때 기업에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2) 직접 또는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여금에 대해 확정수 익률을 보장하는 경우
 - (3) 의제의무가 생기는 비공식 관행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비록 법적의무는 없어도 기업이 관행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전직 종업원의 급여액을 인상해 왔다면 기업에 의제의무가 생 길 것이다.
- 30 확정급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 (1)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직·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 (2)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예상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늘어날 수 있다.

31 문단 32~49에서는 복수사용자제도,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그리고 공공제도와 보험에 가입된 급여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사용자제도

- 32 복수사용자제도는 제도규약(공식적 규약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 33 기업이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문단 34를 적 용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복수사용자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과 원가 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비례적 지분을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 (2) 문단 135~148(문단 148(4) 제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34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지만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 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처리한다.
 - (1)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문단 51과 5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2) 문단 148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 35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현금수지균형방식에 따라 제도의 기금이 조달되고 있다. 즉, 일정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준으로 그 기간의 기여금이 산정되고, 당 기에 생긴 미래 급여는 미래의 기여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 (2) 그리고 종업원급여액은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참여기업이 복수사용자제도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탈퇴일까 지 생긴 종업원급여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 한 제도에서는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생긴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가 예상보 다 많다면 기업은 기여금을 늘리거나 종업원에게 감액된 급여 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다.
- 36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는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하여 정보를 충분 히 얻을 수 있는 경우 그 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 자산, 퇴직급여원가에 대한 기업의 비례적 지분은 다른 확정급여 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제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기업의 비례적 지분을 신뢰성 있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1) 복수사용자제도에서 참여기업이 다른 참여기업의 전직·현직 종업원과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하고, 그 결과로 제도 에 참여하고 있는 각 개별 기업별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 산, 원가를 배분할 수 있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없다.
 - (2)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복수사용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한다.
 - 이 경우에는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문단 148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복수사용자제도와 그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합의에서 복수사용자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방법이나 과소적립액을 참여자에게서 보전 받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이 있는 복수사용자제도의 참여자가 복수사용자제도를 문단 34에따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 합의로 생기는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수익이나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37에 대한 사례

37

38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복수사용자제도에서는 이 기준서에서 규정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해당 복수사용자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평가방법과는 무관한 기금평가방식에 따르면 복수사용자제도에 1억원의 과소적립액이 생겼다. 복수사용자제도와 참여하는 사용자는 앞으로 5년간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의 납부 일정에 합의하는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기업이 분담하게 될 총기여금은 8백만원이다.

기업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조정한 기여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동 일한 금액을 당기손익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복수사용자제도는 집단관리제도와 구별된다. 집단관리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사용자제도를 결합한 것으로서, 참여하는 사용자들은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공동 관리하여 투자관리 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각 사용자의 청구액은 각자의 종업원급여별로 구분된다. 집단관리제도에서는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단일사용자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고, 참여기업이 다른 참여기업의 전직·현직 종업원에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에서 특별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집단관리제도는 이 기준서의 용어 정의에 따라 제도규약(공

식적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도 포함)을 고려하여 확정기 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39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의 청산이나 그 제도에서의 탈퇴와 관련 된 채무의 인식 시기와 측정방법을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한다.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 40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0에서 규정하는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그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를 구하여야 한다.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는 제도 전체에 적용되는 가정에 근거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전체로 측정된 정보를 말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 제도 전체의 순확정급여원가를 연결실체 내 개별 기업들에 부담하게 하는 계약상 합의나명시적 방침이 있다면, 기업은 각자가 부담하는 순확정급여원가를 해당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러한 합의나 방침이 없다면, 법률상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인 연결실체 내 기업은 순확정급여원가를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은 지급 의무가 있는 해당 기간의 기여금과동일한 금액을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원가로 인식한다.
- 42 연결실체 내 개별 기업에는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특수관 계자거래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문단 14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공공제도

- 43 공공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32~39 참조).
- 44 공공제도는 법령에 따라 모든 기업(또는 특정 산업과 같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여 수립되고 국가 또 는 지방정부나 보고기업의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기구 (예: 공공제도를 위해 특별히 설립된 독립기구)가 운영한다. 일부 제도의 경우, 기업이 공공제도에서의 급여를 대체하는 강제적 급 여와 함께 추가로 자발적 급여를 제공하기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공공제도가 아니다.
- 3 공공제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에 따라 확정급여제도나 확정기 여제도로 분류한다. 공공제도는 대체로 현금수지균형방식으로 기금을 조달한다. 즉 일정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준으로 그 기간의 기여금이 결정되고, 당기에 생긴 미래 급여는 미래의 기여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제도에서 기업은 미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기업은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만 있으며, 기업이 공공제도의 대상인 종업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해당 종업원과 관련하여 과거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공공제도는 일반적으로 확정기여제도로 본다. 그러나 공공제도가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단 32∼39를 적용한다.

보험에 가입된 급여

- 7업은 퇴직급여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한다.
 - (1) 종업원급여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그 급여를 직접 지급할 의무
 - (2) 보험자가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미래 종업원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그부족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

기업이 위 (1)이나 (2)와 같은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경우, 그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로 처리한다.

- 47 보험계약으로 보장된 급여는 종업원급여에 대한 기업의 의무와 직접적이거나 자동적인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을 수 반하는 퇴직급여제도에서도, 기금이 적립되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 지로, 회계처리와 기금적립을 구분한다.
- 기업이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통하거나 미래보험료 산정절차를 통하거나 보험자와의 특수 관계를 이용하 여 간접적으로)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급 여채무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보험료 납부액은 확정 기여약정에 따른 기여금이 아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 (1) 적격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8 참조).
 - (2) 그 밖의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문단 116을 충족한다면 보상 권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이 제도가입자 중 특정인의 명의나 제도가입자 단체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기업이 보험계약상의 손실을 보전해야 할 어 떠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은 종 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자가 전적으로 급여지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고정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종업원급여채무의 결제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기업은 종업원급여와 관련한 자산이나 부채가 없으며, 기업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확정기여제도의 기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화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보고기업이 각 기간에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길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하다.

인식과 측정

- 51 종업원이 일정 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하면, 기업은 그 대가로 확정 기여제도에 납부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할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 (2) 기여금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제1016호)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화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그 기여금은 문단 83에서 규정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공시

- 53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공시한다.
- 5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확정기여제도의 기여금 정보를 공시한다.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화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인식과 측정

화정급여제도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개인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도 기여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음)이 기여금을 납부하여 전부나일부의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급여가 지급된다. 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 가능성은 기금의 재무상태와 투자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산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에도 달려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인식하는 비용은 반드시 해당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여금만을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7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다음과 같이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산정한다.
 - (카)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 (문단 67~69 참조). 이 경우 당기와 과거 기간에 귀속되는 급여를 산정하고(문단 70~74참조), 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예: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와 재무적 변수(예: 미래의 임금상승률과 의료원가상승률)를 추정(보험수리적 가정) 한다(문단 75~98 참조).
 - (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한다(문단 67~69와 83~86 참조).
 - (F)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문 단 113~115 참조)를 차감한다.
-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금액을 위 (1)에서 산정된 과소적립액이나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으로 산정한다(문단 64 참조).

- (3)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한다.
 - (개) 당기근무원가(문단 70~74 및 122A 참조)
 - (나)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문단 99~112 참조)
 - (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
- (4)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 소를 결정한다. 재측정요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개) 보험수리적손익(문단 128과 129 참조)
 - (L)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 외적립자산의 수익(문단 130 참조)
 - (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 산인식상한(문단 64 참조)효과의 변동

확정급여제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 절차를 중요한 제도별로 각각 적용한다.

- 58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 보고기간 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 59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한다. 실무적인 이유에서 보고기간 말 전에 퇴직급여채무의 평가를 보 험계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평가일과 보고기간 말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상황변화(시장가격과 이자 율의 변동 포함)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 결과를 조정한다.
- 60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 평균, 추산이 이 기준서에서 예시하는 상세한 계산의 신뢰할 만한 근사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의제의무에 대한 회계처리

- 7업은 확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른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도 회계처리를 한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이 비공식적 관행으로 의제의무가 생긴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 예에 해당한다.
- 환정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따라 기업이 그 제도에 따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어도, 기업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려고 한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도에 따른 의무를 종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현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반증이 없다면 그 약속은 종업원의 잔여근무기간에 계속 유효하다고 가정하여 퇴직급여의 회계처리를 한다.

재무상태표

- 63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 64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다음 (1)과 (2)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1)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
 - (2) 문단 83에서 규정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인식상한

- 65 순확정급여자산은 확정급여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험수리적이익이 생긴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이 유로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 (1) 기업이 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그 초과적립액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 (2) 기업의 통제는 과거 사건(기업의 기여금 지급,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이다.
 - (3)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또는 결손이 있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으며,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현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산인식상한은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인식과 측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

- 학정급여제도의 궁극적인 원가는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변수에는 퇴직 전 최종임금, 종업원 이직률과 사망률, 종업원기여금과 의료원가 추세 등이 있다. 확정급여제도의 궁극적인 원가가 얼마가 될지는 불확실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당기근무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문단 67~69 참조).
 - (2)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한다(문단 70~74 참조).
 - (3) 보험수리적 가정을 한다(문단 75~98 참조).

보험수리적 평가방법

- 67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 68 예측단위적립방식('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발생급여방식'이나 '급여/ 근무연수방식'이라고도 한다)에서는 근무기간마다 추가적인 급여 수급권 단위(문단 70~74 참조)가 생긴다고 보며, 궁극적인 확정급 여채무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급여수급권 단위를 별도로 측정 한다(문단 75~98 참조).

문단 68에 대한 사례

기업은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급여를 지급하며, 일시불급여는 종업원의 퇴직 전 최종 임금의 1%에 근무연수를 곱하여산정한다. 종업원의 연간 임금은 1차 연도에 10,000원이며 앞으로 매년 7%(복리)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 연간 할인율은 10%로 가정한다. 아래 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변화가 없을때 5차 연도 말에 퇴직하는 종업원과 관련하여 확정급여채무가결정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편의상 이 사례에서는 종업원이 예상보다 일찍 또는 늦게 퇴직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추가 조정은 없다고 가정한다.

(단위: 원)

연 도	1	2	3	4	5
귀속 급여					
과거연도	-	131	262	393	524
해당연도(퇴직 전 최종 임금의 1%)	131	131	131	131	131
해당연도와 과거연도	131	262	393	524	655
기초 확정급여채무	-	89	196	324	476
이자원가(할인율=10%)	-	9	20	33	48
당기근무원가	89	98	108	_119_	131
기말 확정급여채무	89	196	324	476	655

- (주1)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 치를 말한다.
- (주2) 당기근무원가는 해당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주3)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해당연도와 과거연도에 귀속되는 급 여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69 퇴직급여채무의 일부를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퇴직급여채무 전부를 할인한다.

급여의 기간 배분

- 70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계산방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의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의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기간은 다음 (1)에서 (2)에 이르는 기간으로 한다.
 - (1)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가 처음 생기는 날(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 제공을 조 건으로 하는지와 무관함)
 - (2) 종업원이 추가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추가임금상승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 날
- 71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르면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급여 를 당기에 배분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확정급여제도의 급여를 당기와 과거 기간에 배분한다. 급여는 기

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생기는 기간에 배분한다. 이 채무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생기며, 그 근무용역은 기업이 미래 보고기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퇴직급여의 대가이다.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면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부채의 인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

문단 71에 대한 사례

사례 1.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이 퇴직할 때 각 근무연 도에 대해 일시불 급여 100원을 지급한다.

근무연도마다 급여 100원을 배분하고, 당기근무원가는 100원의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00원에 보고 기간 말까지의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종업원이 퇴직할 때 급여를 즉시 지급한다면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의 예상 퇴직시점을 반영하 게 된다. 따라서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할 인효과로 인해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결정될 금액보다 작게 결정된다.

사례 2.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퇴직 전 최종임금의 0.2%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연금은 65세부터 지급한다.

종업원이 예상퇴직일부터 예상사망일까지 매월 지급받게 될 단 위 연금(근무연수 1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서 퇴직 전 최종 임금의 0.2%)의 현재가치(예상퇴직일 기준)에 상당하는 급여를 매 근무연도에 배분한다. 당기근무원가는 당기에 배분한 급여의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단위 연금에 보고기간 말까지의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계산한 다.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65세에 연금지 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할인한다. 작정급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채무가 생기며, 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와 관계없이, 즉 급여가 가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생긴다. 급여가 가득되기 전이라도 각각 연속되는 보고기간 말 현재에 종업원이 앞으로 제공해야 할 근무용역의 양은 점차 감소하므로 가득일 전 에 제공되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해서 기업은 의제의무가 있 다. 다만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일부 종업원이 가득조건 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종 업원이 퇴직한 후 특정 사건이 일어남을 전제로 지급하는 경우 (예: 퇴직후의료급여)에도 그 급여를 가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종 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다면 기업에는 채무가 생긴다. 따라서

문단 72에 대한 사례

그 채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사례 1.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각 근무연도에 대해 급여 100 원씩 지급되며, 해당 급여는 근무기간이 10년을 경과하는 때에 가득된다.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채무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근무연도마다 급여 100원을 배분한다. 또 처음 10년 동안 메 근무연도의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종업원 이 근무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사례 2.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각 근무연도에 대해 급여가 100원씩 지급되며, 해당 급여는 즉시 가득된다. 다만 25세가 되기 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25세가 되기 전에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급여(조 건부 또는 무조건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25세가 되기 전의 근무기간에는 어떠한 급여도 배분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25 세가 된 날부터 각 근무연도마다 급여 100원을 배분한다.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게 되는 날까지 확정급여채무는 점점 증가한다. 따라서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 날까지의근무기간에 모든 급여를 배분하며, 각 회계기간에 급여를 배분하는 방식은 제도에서 정하는 급여계산방식에 따른다. 그러나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의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의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게 되는 날까지의 근무기간 전체에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배분한다. 이는 종업원이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근무용역을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73에 대한 사례

73

사례 1.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근무기간이 10년을 경과할 때 가득되는 일시불급여 1,00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그 후의 근무기간에는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처음 10년 동안 각 근무연도에 대해 급여 100원(1,000원 ÷ 10년)씩 배분한다.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의 당기근무원가에는 중업원이 근무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10년을 경과한 후의 근무연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사례 2.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55세가 되는 날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그 근무기간이 20년을 경과할 때일시불 퇴직금 2,000원을 지급하거나, 65세가 되는 날에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그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일시불 퇴직급여 2,000원을 지급한다.

3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한 종업원의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

는 35세가 되는 날부터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생긴다(종업원이 30세에 퇴사한 후 33세에 재입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급여의 금액이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해당 급여는 미래에 근무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하며 55세가 된후에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다. 이 종업원에게 35세가 된 날부터 55세가 되는 날까지 때 근무연도에 급여 100원(2,000원 ÷ 20년)씩 배분한다.

35세와 45세 사이에 입사한 종업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0년을 경과할 때 그 후 근무용역이 제공되더라도 더 이상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다. 이 종업원에게 처음 20년 동안 때 근무연도에 급여 100원(2,000원 ÷ 20년)씩 배분한다.

55세에 입사한 종업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10년을 경과할 때 그후 근무용역이 제공되더라도 더 이상의 급여가 생기지 않는다. 이 종업원에게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에 급여 200원(2,000원 : 10년)을 배분한다.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종 업원이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 사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 사례 3. 퇴직후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종업원의 퇴직후의료원가 중 일부를 보상해 준다.
 - (1)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후의료원가의 40% 보상
 - (2)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후 의료원가의 50% 보상

확정급여제도의 급여계산방식에 따라서 처음 10년 동안은 각 근무 연도에 대해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4%(40% ÷ 10년)씩 배분하 고, 그 다음 10년 동안은 각 근무연도에 대해 예상의료원가 현재 가치의 1%(10% ÷ 10년)씩 배분한다. 매 근무연도의 당기근무원가에는 종업원이 해당 의료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가득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을 반영한다. 예를들어, 10년 이내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 사례 4. 퇴직후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종업원의 퇴직후의료원가 중 일부를 보상해 준다.
 - (1)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후의료원가의 10% 보상
 - (2)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후 의료원가의 50% 보상

근무기간 후반의 의료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의 의료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으므로, 근무기간이 20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문단 6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액법으로 의료급여를 배분한다. 근무기간이 20년을 경과한 후에 는 근무용역이 제공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 기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처음 20년 동안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2.5%(50% ÷ 20년)만큼 배분한다.

근무기간이 10년을 넘지만 20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처음 10년 동안 매 근무연도에 예상의료원가 현재가치의 1%를 의료급여로 배분하고, 10년이 넘은 날부터 예상퇴사일까지는 의료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10년 이내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의료 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

74 근무연도마다 귀속되는 급여액이 퇴직 전 최종 임금의 일정 비율 인 경우, 미래임금상승은 보고기간 말 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 해 생긴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영향을 미치 지만 의무가 추가로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1) 문단 70(2)를 적용할 때 확정급여제도의 급여 금액이 퇴직 전 최종 임금에 좌 우되더라도 임금 상승으로 추가 급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2) 근무연도마다 배분하는 금액은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 전 최종 임금의 일정 비율로 한다.

문단 74에 대한 사례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은 55세가 되기 전의 매 근무연 도에 대해 퇴직 전 최종임금의 3%를 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종업원이 55세가 될 때까지 각 근무연도에 퇴직 전 최종임금 추정액의 3%를 퇴직급여로 배분한다. 종업원이 55세가 된 후에 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생 기지 않으므로 배분할 퇴직급여는 없다.

보험수리적 가정

- 75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어야 하며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하다.
- 76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전직·현직 종업원(그 피부양자 포함)의 미래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적 가정
 - (카) 사망률(문단 81과 82 참조)
 - (내)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 대 급여 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 (라) 제도규약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지급 선택권의 각 형태를 선택할 종업원의 비율
- (매)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 청구율

(2) 재무적 가정

- (개) 할인율(문단 83~86 참조)
- (나) 급여 수준(종업원이 부담할 수 있는 급여의 원가는 제외)과 미래의 임금(문단 87~95 참조)
- (다) 의료급여의 경우 보험금청구원가(즉, 보험금을 처리하고 해소할 때 생기는 원가로서 법정수수료와 손해사정인 수수료를 포함)를 포함하는 미래 의료원가(문단 88~91 참조)
- (라) 보고일 이전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기여금이나 보고일 이전의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급여에 부과되고 제도가 납부할 세금
- 77 보험수리적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보수 적이지도 않을 때 편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78 보험수리적 가정이 서로 양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임 금상승률, 할인율 등과 같은 요소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일정 기간의 특정 물가상승률에 좌우 되는 모든 가정(예: 이자율, 임금·급여 상승에 대한 가정)은 같은 물가상승률 수준을 가정하여야 한다.
- 79 할인율을 비롯한 그 밖의 재무적 가정은 명목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인플레이션 효과만큼 조정된 실질기준의 추정 치가 명목기준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경우 실질기준으로 할인율 등을 결정한다.

- (1)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있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 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참조)
- (2) 급여가 지수에 연동되고 급여와 통화·만기가 동일한 지수연동 채권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deep market)이 있는 경우
- 80 재무적 가정은 채무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대하여 보고기간 말 현 재 시장의 예상에 기초한다.

보험수리적 가정: 사망률

- 81 기업은 사망률 가정을 재직 중인 종업원과 퇴직 종업원의 사망률 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 82 궁극적인 급여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사망률의 변 동을 고려한다(예: 사망률 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표준사망률 표를 수정).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83 퇴직급여채무(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와 적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 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 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 한다. 그러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와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 지급 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84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보험수리적 가정 중 하나는 할인율이다. 할 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반영되지만 보험수리적위험이나 투 자위험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할인율에는 채권자가 부담하 고 있는 기업 고유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 래의 실제 결과가 보험수리적 가정과 다를 위험도 반영되지 않는 다.

환인율에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 시기가 반영된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 시기, 예상 금액, 지급 통화를 반영하는 단일 가중평균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할인율에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 시기를 반영할 수 있다.

86 퇴직급여의 모든 예상 지급 시기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만기가 충분히 긴 채권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지급 시기가 빠른 급여액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지급 시기가 늦은 급여액에는 수익률 곡선상의 현행 시장수익률을 예상 지급 시기까지 확장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확정급여채무의 총 현재가치는, 이용할 수 있는 회사채나 국공채의 최장 만기를 넘어서 지급되는 급여액에 적용하는 할인율에 특별히 민감하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

보험수리적 가정: 임금, 급여, 의료원가

87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보고기간 말 현재 제도규약에 정해져 있는 급여(또는 그 제도 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에 따른 급여)

- (2) 지급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임금상숭에 대한 추정
- (3) 미래급여원가 중 기업 부담분이 제한될 경우 그 효과
- (4) 이 급여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궁극적인 원가를 감소시키 는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
-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지급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급여 수준의 예상 미래변동
 - (개) 공공급여 수준의 변동이 보고기간 말 전에 법제화되었다.
 - (4) 역사적 자료나 그 밖의 신뢰할만한 증거로 비추어 볼 때 공공급여 수준이 예측 가능한 방식(예: 일반 물가수준이나 일반 임금수준의 미래 변동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변동될 것이다.
- 88 보험수리적 가정은 보고기간 말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서 정한 미 래급여의 변동(또는 공식적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을 반 영한다. 이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물가상승의 영향을 줄일 목적 등으로 퇴직급여를 증액한 관행이 있고, 그 관행이 미래에 바뀔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경우
 - (2) 제도의 공식적 규약(또는 공식적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 무)이나 법규에 따라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제도가입자의 급여 를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문단 108(3) 참조)
 - (3) 급여가 성과목표나 그 밖의 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예를 들면, 제도의 규약에서 사외적립자산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거나 종업원에게 추가 기여금을 요구하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무의 측정은 성과목표나 그 밖의 기준의 영향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

- 89 보고기간 말 현재 제도의 공식적 규약(또는 의제의무)에서 정하지 않는 미래의 급여 변경은 보험수리적 가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급여 변경은 다음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1) 급여 변경일 전에 이미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를 변경하는 범위에서 과거근무원가가 생긴다.
 - (2) 급여 변경일 이후에 제공되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 를 변경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간의 당기근무원가가 생긴다.
- 90 미래의 임금상승은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그 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예: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 91 일부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지급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제한 한다.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는 기여금 제한의 효과를 고려한다. 기여금 제한의 효과는 다음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결정된다.
 - (1) 기업의 추정 존속 기간
 - (2) 제도의 추정 존속 기간
- 92 일부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나 제삼자가 제도의 원가에 기 여할 것을 요구한다. 종업원의 기여금은 급여에 대한 기업의 원가 를 감소시킨다. 기업은 제삼자의 기여금이 급여에 대한 기업의 원 가를 감소시키는지 또는 문단 116에서 기술한 보상권인지를 고려 한다.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은 제도의 공식적인 규약에 정 해져 있거나 (또는 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무에서 생기거 나), 재량에 따른다.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킨다.
- 93 공식적 규약에 정해져 있는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거나(그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는 경우), 순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영향을 미친다(그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 근무용역에 연계되지 않은 기여금의 예에는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생기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이 있다.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이 근무용역과 연계되어 있다면, 그 기여금은 다음과 같이 근무원가를 감소시킨다.

- (1) 기여금액이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된다면, 기업은 총 급여에 대해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배분방법(예: 정액법이나 제도의 기여금공식을 이용)으로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한다.
- (2) 기여금액이 근무연수에서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 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할 수 있다. 근무연수에서 독립적인 기여금의 예에는 종업원 임금의 고정 비율로 또는 그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고정금액으로 결정되거나 종업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이 포함된다.

문단 A1에서 관련되는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 94 문단 93(1)에 따라 근무기간에 배분된 종업원이나 제삼자 기여금 의 경우, 기여금의 변동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 (1) 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종업원의 기여금 변동이 제도의 공식적인 규약에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의제의무에서 생기지도 않는 경우)
 - (2) 보험수리적손익(종업원의 기여금 변동이 제도의 공식적인 규약에 정해져 있거나 의제의무에서 생기는 경우)
- 95 퇴직급여가 공공퇴직급여 수준이나 공공의료급여 수준 등과 같은 변수에 연동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그러한 변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역사적 자료나 그 밖의 신뢰할 만한 증거 에 기초하여 반영한다.

- 96 의료원가에 관한 가정에는 물가 상승과 의료원가 자체의 개별가 격 변동에 따르는 의료원가의 예상 미래변동성을 반영한다.
- 97 퇴직후의료급여를 측정할 때에는 미래의 의료원가 청구 수준과 빈도, 그리고 미래의 의료원가 청구 충족에 소요되는 원가에 관한 가정이 필요하다. 예상 미래의료원가는 기업 고유의 과거 경험 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하되, 필요하다면 다른 기업, 보험회사, 의료기 관 등의 과거 경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상 미래 의료원가에는 의료기술의 진보, 의료 이용과 의료 시행의 양상 변화, 제도가입자의 건강상태 변화 등을 반영한다.
- 98 의료원가의 청구 수준과 빈도는 종업원(피부양자 포함)의 연령, 전 강상태와 성별에 특별히 민감하며, 지리적 위치와 같은 다른 요소 에도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원가 관련 추정을 위한 모집단 의 인구통계적 구성이 과거 경험 자료의 기초가 된 모집단의 인 구통계적 구성과 다르다면 과거 경험 자료를 적절히 수정한다. 또 과거의 추세가 앞으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만한 증 거가 있는 경우에도 과거 경험 자료를 적절히 수정한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 99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 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현행 시장이자율과 그 밖의 현 행 시장가격 포함)을 사용하여, 다음 (1)과 (2)를 반영한 순확정급 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한다.
 - (1)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 립자산

- (2)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 립자산
- 100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 축소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에 따른 급여를 변경하고 개정된 급여를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와 같이, 정산 전에 제도를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산 손익을 인식하기 전에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한다.
- 확정급여채무가 결제되고 제도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도의 정산이 제도의 개정 및 축소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제도가 종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된다면 정산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 101A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일어날 때, 문단 99~101 및 문단 102~112에 따라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이때,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인식한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문단 57(4)에 따라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을 인식한다.

과거근무원가

-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 재가치의 변동이다.
- 103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1)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 (2)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 급여(문단 165 참조)를 인식할 때
- 104 제도의 개정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거나, 기존 확 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일어난다.
- 105 제도의 축소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 시킬 때 일어난다. 축소는 공장폐쇄, 영업중단, 제도의 종료나 중 단과 같은 독립된 사건에서 비롯될 수 있다.
- 106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변동되어 확 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철회되거나 변동되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가 감소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 동일한 종업원에게, 현행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를 감액하는 동시에 같은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해야 할 다른 급여 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 일련의 변경을 순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108 과거근무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과거근무기간 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임금상승의 과거 가정치와 실제치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추정임금은 보험수리적 가정에서 이미 고려하므로 과거근무원가가 생기지 않는다)
 - (2) 기업이 재량적으로 연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의제의무를 부담할 때 연금 증가액에 대한 과소나 과대 추정의 효과(연금의

증가는 보험수리적 가정에서 이미 고려하므로 과거근무원가가 생기지 않는다)

- (3) 공식적 제도규약(또는 공식적 제도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 의무)이나 법규에 따라 기업이 제도에서 생긴 초과적립액을 제도가입자의 급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수리적이익이나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였다면, 해당 보험수리적이익이나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의 결과로 초래될 퇴직급여의 인상(그 급여인상이 공식화되어 있는지를 불문한다)에 대한 추정치(이로 인한 채무증가액은 보험수리적 손실이므로 과거근무원가는 없다. 문단 88참조)
- (4) 새로 부여하거나 추가로 부여하는 퇴직급여가 없는 상황에서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득급여(즉 종업원의 미래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급여)의 증가(종업원이 근무용 역을 제공할 때 기업이 예상한 퇴직급여원가를 이미 당기근무 원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과거근무원가는 없다)

정산 손익

- 109 정산 손익은 다음 (1)과 (2)의 차이이다.
 - (1) 정산일에 결정되는 정산대상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 110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한다.
- 111 제도의 정산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 는 거래가 있을 때 일어난다(제도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수

리적 가정에 포함된 종업원에 대한 또는 종업원의 대리인에 대한 지급은 제외).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체결로 제도에 따라 기업의 유의적인 확정급여채무를 보험회사에 일시에 이전하는 일은 정산이지만, 특정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대가로 제도의 규약에 따라 제도가입자에게 일시불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제도의 정산이 아니다.

The ST 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한 종업원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기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명시된 종업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때 기업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법적의무나 의제의무(문단 46 참조)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제도가 정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문단 116∼119에서는 사외적립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보상권 인식과 측정을 규정하고 있다.

인식과 측정: 사외적립자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1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한다.
- 114 보고기업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미지급기여금과 기업이 발행하고 기금이 보유하는 양도할 수 없는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업원급여와 관계없는 기금부채(예: 매입채무와 파생상품 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사외적립자산은 그만큼 감소한다.

115 사외적립자산이 제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의 전부나 일부와 금액·시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적격보험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는 관련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다고 본다.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해당 사외적립자산을 감액하여야 한다.

보상

- 116 제삼자가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기 위한 지출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할 것이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보상권을 별개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변동에 대한 처리와 같은 방식(문단 124와 125 참조)으로 보상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구분하여 인식한다. 문단 120에 따라 인식되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보상권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금액과 순액으로 인식될 수있다.
- 117 기업의 확정급여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제삼자(예: 보험자)가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 문단 8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적격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한다. 적격보험계약은 다른 모든 사외적립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므로 문단 116은 관련이 없다(문단46~49와 115참조).
- 기업이 보유하는 보험계약이 적격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단 116이 그러한 경우와 관련된다. 즉 보험계약의 보상권은 확정급여제도의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지 않고 별개의 자

산으로 인식한다. 문단 140(2)에 따라 보상권과 관련 채무 간의 연계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공시하여야 한다.

119 보상권이 제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의 전부나 일부와 금액·시 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보험계약에서 생긴다면 보상권의 공정가치 는 관련 채무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다고 본다. 보상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해당 보상권을 감액하여야 한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 120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 다.
 - (1) 근무원가(문단 66~112 및 122A 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를 당기손 익에 인식
 -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문단 127~130 참조)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 121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 1016호)에 따라 종업원급여원가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퇴직급여원가는 문단 120에서 열거하는 구성요소들의 적절한 부분을 말한다.
- 122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 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당기근무원가

122A 당기근무원가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는 문단 99(2)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 12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문단 83 에서 정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 123A 문단 123에 따라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연차보고기간 초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순이자는 다음 (1)과 (2)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 (1) 문단 99(2)에 따라 결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 문단 99(2)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데 사용된 할인율

문단 123A를 적용할 때, 기여금의 납부나 급여의 지급으로 생기는 보고기간 동안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한다.

124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확정 급여채무의 이자원가, 문단 64에서 언급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구성요소로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문단 123A에서 정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 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이자수 익은 문단 99(2)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하 여 사용된 사외적립자산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문단 125를 적용할 때, 기여금의 납부나 급여의 지급으로 생기는 보고기간 동안의 사 외적립자산의 변동을 고려한다.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과 사외 적립자산의 수익의 차이는 사외적립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포 합된다.

126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총변동의 일부로 서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문단 83에서 정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자산인식상한효과는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문단 101A에 따라 결정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를 결정한다.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와 자산인식상한의 총변동의 차이는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포함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127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1) 보험수리적손익(문단 128과 129 참조)
 -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문단 125 참조)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문단 130 참조)

-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문단 126 참조)
- 128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생긴다. 보험수리적손익이 생기는 원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 여가 증액되는 경우), 의료원가가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 (2) 급여지급선택권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영향
 - (3)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 여가 증액되는 경우), 의료원가의 추정치 변경의 영향
 - (4) 할인율의 변경 영향
- 129 보험수리적손익은 확정급여제도의 도입, 개정, 축소, 정산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이나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지급될 급여의 변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변동으로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이 생긴다.
- 130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 운영원가와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을 차감한다. 다만 확정급여채무(문단 76)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관리 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표시

상계

- 131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부채와 상계한다.
 - (1)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가 있다.
 - (2) 순액기준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동시에 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실현하고 다른 제도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 132 문단 131에서 정하는 상계조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 상품: 표시'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의 상계조건과 비슷하다.

유동성·비유동성의 구분

133 일부 기업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각각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 채와 구분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 과 부채를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는 특정 하지 아니한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134 문단 120에 따라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 (자산)의 순이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이 구성요소를 표시한다.

공시

- 135 기업은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1)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문 단 139 참조)
 - (2)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 하는 정보
 - (3) 확정급여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정보
- 136 문단 135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공시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함의 수준
 - (2) 각각의 다양한 규정을 강조하는 정도
 - (3) 수행하여야 할 통합과 세분화의 정도
 - (4) 재무제표이용자가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필 요 유무
- 137 이 기준서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 되는 공시사항이 문단 135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예 를 들면, 확정급여채무의 성격, 특성, 위험을 구분하는 확정급여채 무의 현재가치 분석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러한 공시사항에서 다 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1) 현재 근무 중인 가입자, 퇴직급여 수령 대기자, 연금수령자에 게 생기는 금액
 - (2) 가득된 급여와 생겼으나 가득되지 아니한 급여
 - (3) 조건부급여, 미래임금상승 금액, 그 밖의 급여

- 738 중요하게 다른 위험을 가진 제도나 제도의 집합을 구분하기 위하여 공시의 전부나 일부를 세분화할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제도에 관한 공시를 세분화할 수도 있다.
 - (1) 지리적 위치의 차이
 - (2) 정액임금기준 연금제도, 최종임금기준 연금제도, 퇴직후의료급 여제도 등 특성에 따른 차이
 - (3) 감독 환경의 차이
 - (4) 보고부문의 차이
 - (5) 기금적립약정의 차이(예: 미적립, 전부 적립, 일부 적립 등 기 금의 적립 수준)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

- 139 다음을 공시한다.
 - (1) 다음을 포함하는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
 - (가)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성격(예: 최종임금기준 확정급여 제도나 보장부 기여금기준제도)
 - (나) 제도를 운영하는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예: 최소적립요구액 의 수준, 자산인식상한 등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의 영향(문 단 64참조)]
 - (中) 제도의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그 밖의 책임에 대한 설명 (예: 제도의 기금관리자나 이사의 책임)
 - (2) 제도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기업이나 제도 에 특유한 비일상적 위험에 초점을 맞춤)과 유의적인 위험의 집중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사외적립자산이 주로 부동산과

같은 한 종류에 투자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제도로 인해 부 동산시장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3) 제도의 개정, 정산, 축소에 대한 설명

재무제표상 금액에 대한 설명

- 140 다음 각 항목(해당되는 경우)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으로 조정 한 내용을 공시한다.
 -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다음 각각의 조정내용을 구분한다.
 - (개) 사외적립자산
 - (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대) 자산인식상한효과
 - (2) 보상권. 보상권과 관련 의무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 141 문단 140에서 열거한 각 조정내용은 다음 사항(해당되는 경우)을 공시한다.
 - (1) 당기근무원가
 - (2)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구분하여 공시한다.
 - (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위 (2)의 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 (L) 인구통계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익(문단 **76**(1) 참조)
 - (다)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익(문단 76(2) 참조)

- (라) 순확정급여자산을 자산인식상한으로 제한하는 영향의 변동 (위 (2)의 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효익을 결정한 방법, 즉 이 경제적 효익이 환급의 형태인지 또는 미래기여금 감소의 형태인지 아니면 둘을 혼합한 형태인지를 공시한다.
- (4)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문단 100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 (5) 환율변동의 영향
- (6) 제도에 납부하는 기여금.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과 제도가입자 가 납부한 기여금을 별도로 구분한다.
- (7)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정산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한다.
- (8) 사업결합과 사업처분의 영향
- 14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외적립자산의 속성과 위험을 구분하는 종류별로 세분하고, 각 종류의 사외적립자산을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이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다시 세분한다. 예를 들면, 문단 136에서 논의한 공시수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2) 지분상품(산업유형, 회사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구분)
 - (3) 채무상품(발행자의 유형, 신용 건전성, 지역 등에 따라 구분)
 - (4) 부동산(지역 등에 따라 구분)
 - (5) 파생상품(이자율계약, 통화선도계약, 지분계약, 신용계약, 장수 스왑(longevity swaps) 등 계약이 기초하는 위험의 유형에 따 라 구분)

- (6) 투자펀드(펀드 유형에 따라 구분)
- (7) 자산담보부증권
- (8) 구조화채무상품
- 143 기업이 사외적립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도 가능한 기업 자신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기업이 점유한 부동산이나 사용 중인고 밖의 자산의 공정가치를 공시한다.
- 144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보험수리 적 가정을 공시한다(문단 76 참조). 그러한 가정은 절대 숫자로 공 시한다(예를 들면 절대 백분율로 공시하며 다른 백분율과의 차이 나 다른 변수와의 차이로 공시하지 아니한다.). 여러 제도를 묶어 합산하여 공시하는 경우 그러한 가정은 가중평균치나 비교적 좁 은 범위 값의 형태로 공시한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 145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현재 (문단 144에 따라 공시한) 유의적인 보험수 리적 가정 각각에 대한 민감도분석. 이를 통해 보고기간 말에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한다면 확정급여채무에 미치게 될 영향을 나타 낸다.
 - (2) 위 (1)에서 요구하는 민감도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가정 과 이 방법의 한계
 - (3) 민감도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이 종전 기간과 달라진 경우 그 내용과 이유

- 146 제도나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자산부채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연금보험이나 장수스왑과 같은 그 밖의 기법 사용을 포 함)을 공시한다.
- 147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미래기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적립약정과 기금적립방침에 대한 설명
 - (2) 다음 연차 보고기간의 제도에 대한 예상기여금
 - (3) 확정급여채무의 만기구성에 대한 정보. 이 정보에는 확정급여 채무의 가중평균만기가 포함되며, 급여 지급 시기의 분포에 관 한 정보(예: 급여 지급의 만기분석)가 포함될 수도 있다.

복수사용자제도

- 148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기금적립약정에 대한 설명(기업이 기여금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최소 적립 요구사항을 포함)
 - (2) 복수사용자제도의 규약과 조건에 따라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하여 기업이 제도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설명
 - (3) 다음의 경우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의 배분약정에 대한 설명
 - (개) 제도의 청산
 - (나) 제도에서 탈퇴

- (4) 문단 34에 따라 복수사용자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 처리하는 경우, 문단 139~147에서 요구하는 정보 대신에 위 (1)~(3)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개) 그 제도가 확정급여제도라는 사실
 - (山)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이유
 - (다) 다음 연차 보고기간의 제도에 대한 예상기여금
 - (라) 미래의 기여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에 대한 정보(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이 있다는 사실이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 의미를 포함)
 - (마) 기업이 제도에 참여하는 정도를 다른 참여기업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지표. 이러한 지표로 제공할 수 있는 예로는 제도에 대한 총 기여금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 퇴직자, 전직 종업원의 전체 인원수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을 들 수 있다.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 149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순확정급여원가의 부담에 관한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방침. 만약 그러한 합의나 방침이 없다면 그 사실
 - (2) 각 기업이 지급할 기여금 결정 방침

- (3) 문단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확정급여원가 배분액을 인식 하는 경우 그 제도 전체에 대해 문단 135~147에서 요구하는 정보
- (4) 문단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 의무가 있는 해당 기간의 기여금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제도 전체에 대해 문단 135~ 137, 139, 142~144, 147 (1)·(2)에서 요구하는 정보
- 150 다음의 경우 문단 149의 (3)과 (4)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의 공시를 상호 참조하여 공시할 수 있 다.
 - (1)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도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를 별도로 식별하여 공시하는 경우
 - (2)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으로 그리고 동시에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재무제표이 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다른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

- 15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시 하다.
 - (1) 퇴직급여제도와의 특수관계자거래
 - (2) 주요 경영진에 대한 퇴직급여
- 15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퇴직급여채무에서 비롯되는 우 발부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53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되며,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 (2)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 (3) 장기장애급여
 - (4)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 (5) 이연된 보상
- 154 일반적으로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 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비교적 간략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과 측정

- 155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 문단 56~98과 문단 113~115를 적용한다. 보상권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에는 문단 116~119를 적용한다.
- 156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합계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1) 근무원가(문단 66~112 및 122A 참조)
-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
-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문단 127~130 참조)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예로 장기장애급여가 있다. 장기장애급여액이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된다면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될 때 채무가 생긴다.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장기장애급여 지급사유가 생길가능성과 예상되는 급여 지급기간을 반영한다. 만약 장기장애급여액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종업원에게 일정하다면 장기장애를 초래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장기장애급여의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공시

158 이 기준서에서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관한 공시사항을 특정하지 않지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공시를 요구할 수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주요 경영진의 종업원급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또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에서 종업원급여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해고급여

159 이 기준서에서는 해고급여에 대해 다른 종업원급여와 구별하여 규정한다. 왜냐하면 채무가 생기는 사건은 종업원의 근무가 아니라 해고이기 때문이다. 해고급여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기업의 결정이나 해고대가로 기업이 제안한 급여를 받아들인 종업원의 결정으로 생긴다.

- 160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에 따른 해고나 의무 퇴직규정에 따라 생기는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실질적으로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할 때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더 많이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
- 7 161 종업원급여의 형태에 따라 종업원급여가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인 지 퇴직에 대한 대가인지가 결정되지 않는다. 해고급여는 통상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방식으로 지급할수 있다.
 - (1) 직접 또는 종업원급여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퇴직급여를 증액한다.
 - (2) 해고 대상 종업원이 기업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추가 근 무용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특정 예고기간까지 임금을 지급 한다.
- 162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종업원급여가 지급됨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1) 급여는 미래근무용역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다(추가적인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증가하는 급여를 포함).
 - (2) 급여는 종업원급여제도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
- 163 일부 해고급여는 기존 종업원급여제도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 예를 들면, 해고급여는 정관, 고용계약, 노조규약에 명시될 수 있으며, 유사한 급여를 제공한 기업의 과거 실무관행의 결과로 나타날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서 기업이 단기보다 긴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제안하는 경우나 그 제안일과 실제 해고 예상일 간의 기간이 단기보다 긴 경우, 기업은 새로운 종업원급여제도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제도에 따라 제안되는 급여가 해고급여나퇴직급여인지를 고려한다. 종업원급여제도의 규약에 따라 제공하는 종업원급여가 종업원을 해고하는 기업의 결정에 따라 생기고미래에 제공되는 근무용역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급여는 해고급여이다.

164 종업원급여를 종업원의 퇴사이유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종업원급여는 정해진 가득조건이나 최소근무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지급 시기만 불확실할 뿐 지급은 확실하다. 따라서 그러한 급여는 해고보상금이나 해고퇴직금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해고급여가 아닌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한다.

인식

- 165 다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을 인식한다.
 - (1)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을 때
 - (2)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 급여의 지급을 포함하는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할 때
- 166 해고대가로 기업이 제안한 급여를 받아들인 종업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급여의 경우,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은 다음 중 이른 날이다.
 - (1) 종업원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때
 - (2) 해고급여의 제안을 철회하는 기업의 능력에 대한 제한(예: 법적, 규제적, 계약상 규정이나 그 밖의 제한)의 효력이 생긴 때.

해고급여를 제안한 시점에 그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이 시점 은 해고급여를 제안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 167 기업이 종업원의 해고를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급여의 경우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해고계획을 해고대상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시점이다.
 - (1) 해고계획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행동을 고려할 때, 해고계획에 유의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 (2) 해고계획에 해고대상 종업원의 수, 직무분류, 근무 장소(다만 해고대상 종업원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필요는 없음)와 그 계획의 완성예상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 (3) 해고계획에서 설정한 해고급여는 해고될 때 종업원이 받을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종업원이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상세하다.
- 168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에는 제도의 개정이나 그 밖의 종업원급여 의 축소에 관한 회계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문단 103 참조).

측정

- 169 해고급여는 그 종업원급여의 성격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하고, 후속적 변동을 측정하고 인식한다. 해고급여가 퇴직급여를 증액하는 것이라면,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해고급여가 인식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급여가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기종업원 급여 규정을 적용한다.

(2) 해고급여가 인식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급여가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규정을 적용한다.

170 해고급여는 근무용역의 대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 여를 근무제공기간에 배분하기 위한 문단 70~74는 이와 관련이 없다.

문단 159~170에 대한 사례

배경

최근 취득의 결과로, 기업은 10개월 이내에 한 공장을 폐쇄하고, 폐쇄 시점에 그 공장에 남아있는 모든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은 일부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종업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해고계획을 발표한다.

공장의 폐쇄 시점까지 남아서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각 종업원은 해고되는 날에 30,000원을 지급받을 것이다. 공장의 폐쇄 시점 전에 퇴사하는 종업원은 10,000원을 지급받을 것이다.

공장에는 종업원 120명이 있다. 해고계획의 발표 시점에, 기업은 전체 종업원 중 20명이 공장 폐쇄 전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해고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총 현금유출액은 3,200,000원(즉 20×10,000원+100×30,000원)이다. 문단 160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업은 해고 대가로 제공하는 급여를 해고급여로 처리하고 근무용역 대가로 제공하는 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로 회계처리한다.

해고급여

해고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10,000원이다. 이는 종업원이 공장의 폐쇄 시점까지 남아서 근무용역을 제공하느냐, 공장 폐쇄전에 퇴사하느냐에 상관없이 해고로 인해 기업이 지급하여야하는 금액이다. 종업원이 공장의 폐쇄 시점 전에 퇴사할 수 있지만, 모든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공장을 폐쇄하고 종업원을 해고하는 기업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즉 공장이 폐쇄될 때에는 종업원이 모두 퇴사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해고계획을 발표하는 시점과 공장폐쇄와 관련된 구조조정원가를 인식하는시점 중 이른 날에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라 제공하는 해고급여인 1,200,000원(즉 120×10,000원)을 부채로 인식한다.

근무용역의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

종업원이 10개월 동안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증분급여는 그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다. 기업은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이 급여를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할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000원(즉 2,000,000÷10)을 10개월의 근무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각 1개월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만큼 부채의장부금액이 증가한다.

공시

171 이 기준서에서는 해고급여에 관한 공시사항을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공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는 주요 경영진의 종업원급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도 종업원급여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경과 규정과 시행일

- 172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공시한다.
- 17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 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 (1)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전에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종업원급여원가의 변동 에 대해 그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최초 적용일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최초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이다.
 - (2) 2014년 1월 1일 전에 최초로 시작되는 기간의 재무제표에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에 관하여 기업은 문단 145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 174 201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8의 공정가치의 정의와 문단 113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175 2014년 7월에 공표한 '확정급여제도: 종업원 기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93과 9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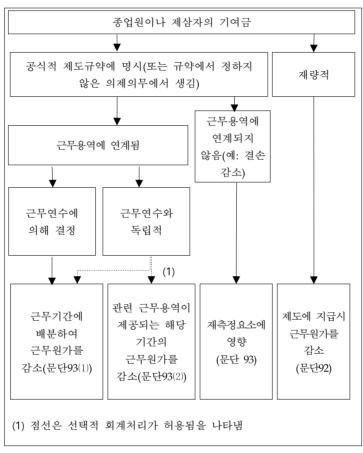
- 176 2015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83을 개정하였고, 문단 177을 추가하였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177 해당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최초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문단 176의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내용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초 조정액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 178 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8의 각주를 개정하였다^{한1)}.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179 2018년 12월에 공표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개정)에 따라 문단 101A, 122A, 123A를 추가하였고, 문단 57, 99, 120, 123, 125, 126, 15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한1)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8의 각주를 개정하였다.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은 문단 92와 93에 관해 서술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A1 다음 도표에서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제정(2007. 11. 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2011. 11. 1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2014. 4. 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2014. 12. 19.)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2018. 5. 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영석, 신병일, 이길우, 정석우, 한봉희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문단비교표

다음 표는 대체된 IAS 19(2004년 개정)와 IAS 19(2011년 개정)의 내용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여준다. 문단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언급하는 경우에는 지침이 다른 경우일지라도 대응되는 문단으로 간주한다.

대체된	IAS 19(2011)의	
IAS 19 문단	문단	
목적	1	
1~6	2~7	
7	8	
8	9	
9	없음	
10	11, 12	
11~23	13~25	
24	26	
25	27, 28	
26~28	29~31	
29	32, 33	
30	34와 148	
31	35	
32	36	
32A	37	
32B	없음	
33	38	
$34\sim34B$	40~42와 149	
	IAS 19의 종전	
35	개정에서	
	삭제되었음	
36~38	43~45	
39~42	$46 \sim 49$	
$43 \sim 47$	50~54	
$48 \sim 50$	55~57	
51	60	
95	95 없음	
96, 97	없음	
98	108	
99, 100	없음	
101	107	
$102 \sim 104$	113~115	

대체된	IAS 19(2011)의
IAS 19의 문단	문단
52, 53	61, 62
54	63
55	없음
56, 57	58, 59
58	64
58A, 58B	없음
59	65
60	없음
61, 62	120, 121
63	66
64~66	67~69
67~71	70~74
72~77	75~80
78~81	83~86
82	없음
83	87
84	90
85	88
86	89
87	95
88~90	96~98
91	$92 \sim 94$
92~93D	없음
94	128
120A(4)	138
120A (6), (9)	없음
120A(10), (11)	142, 143
120A(12), (13)	없음
120A(14)	144
120A(15), (16)	없음

대체된	IAS 19(2011)의
IAS 19 문단	문단
104A~104D	116~119
105, 106	없음
107	130
108	없음
109	109, 110
110	99
111	105
111A	없음
112	111
113	112
114	101
115	없음
116~119	131~134
120	135
120A (1)	없음
120A(2)	139(1)
120A (3), (5), (7), (8)	140, 141

대체된	IAS 19(2011)의
IAS 19의 문단	문단
120A(17)	147(2)
121	139(1)
122	138
123	148
124, 125	151, 152
126~131	153~158
132	159
133, 134	165~167
135	161
136	160와 164
137	없음
138	168
139, 141 142, 143	없음 171
142, 143	IAS 19의 종전
$144\!\sim\!152$	개정에서
	삭제되었음
153~161	없음
	10, 39, 81, 82,
	91, 100,
	102~104, 106,
	122, 123~126,
	127, 129, 136,
없음	137, 139(2),
	139 (3), 145 ,
	146 , 147 (1),
	147 (3), 150 ,
	162, 163, 169,
	170, 172, 173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19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의 결론도출근거

	문단번호
도입	BC1~BC2
2011년 개정	BC3~BC11
제한된 범위의 과제의 일부로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들	BC12~BC13
종업원급여 작업반	BC14~BC15
급여의 분류	BC16~BC24
단기종업원급여: 2011년 개정사항	BC16~BC21
장기종업원급여: 2010년 공개초안	BC22~BC24
단기종업원급여	BC25~BC27
유급휴가	BC25~BC27
퇴직급여	BC28~BC252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BC28~BC30
확정기여제도	BC28~BC29
확정급여제도: 2011년 개정	BC30
복수사용자제도와 공적제도	BC31~BC51
복수사용자제도: 2004년 12월 개정	BC35~BC38
복수사용자제도: 2010년 공개초안	BC39
연결집단제도: 2004년 개정사항	BC40~BC50
공공제도와 연결집단제도의 공시: 2011년 개정	BC51
확정급여제도: 인식과 측정	BC52~BC199
측정일	BC56~BC57
중간보고: 2011년 개정의 영향	BC58~BC64
인식: 2011년 개정	BC65~BC100
자산인식상한	BC101~BC102
추가 최소부채	BC103~BC105
자산의 일부로서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2011년 개정	BC106~BC107

결론도출근거 목차

보험수리적 계산방법	BC108~BC113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BC114~BC116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2010년 공개초안	BC117~BC120
보험수리적 가정: 제도와 관련된 세금(2011년 개정)	BC121~BC124
보험수리적 가정: 관리원가(2011년 개정)	BC125~BC128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BC129~BC137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2009년 공개초안)	BC138~BC139
보험수리적 가정: 임금, 급여, 의료원가	BC140~BC141
보험수리적 가정: 사망률(2011년 개정)	BC142
보험수리적 가정: 위험공유(2011년 개정)	BC143~BC150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지역시장)	BC150G~BC150Q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 2013년 개정	BC150A~BC150F
축소와 정산	BC151
제도개정, 축소 및 정산: 2011년 개정	BC152~BC173
제도개정, 축소 및 정산: 2018년 개정	BC173A~BC173H
사외적립자산	BC174~BC177
사외적립자산: 2000년 개정	BC178~BC190
사외적립자산: 측정	BC191~BC194
보상권: 2000년 개정	BC195~BC199
확정급여제도: 자산과 부채의 표시	BC200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원가의 표시(2011년 개정)	BC201~BC202
확정급여제도: 공시(2011년 개정)	BC203~BC252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공시사항에 대한 IASB의	
접근법	BC207~BC211
공시목적의 선택	BC212~BC214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재무제표의 금액	BC215~BC228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BC229~BC243
IASB가 고려하였으나 기각한 그 밖의 공시사항	BC244
복수사용자 제도	BC245~BC25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BC253

결론도출근거 목차

근무중사망급여 BC253

해고급여: 2011년 개정 BC254~BC261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BC256~BC257

인식 BC258~BC260

측정 BC261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해고급여 및 구조조정 원가의

상호작용 BC262~BC268

경과 규정 BC269~BC271C

최초채택기업 BC270

조기 적용 BC271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의 경과 규정 BC271A~BC271B

IFRS 2012-2014 연차개선 271C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BC271D~BC271E

2010년 공개초안과 2005년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 요약: 2011년 개정 BC272~BC273

US GAAP과의 상호합치: 2011년 개정 BC274~BC279

복수사용자제도 공시사항 BC274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BC275~BC276

해고급여 BC277~BC279

원가-효익 고려사항: 2011년 개정 BC280~BC284

IAS 19에 대한 소수의견

IAS 19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Conceptual Framework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
	for Financial Reporting		계
IFRS 2	Share-based Payment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IFRS 4	Insurance Contracts	제1104호	보험계약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Statements		
IAS 8	Accounting Policie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
	Changes in Accounting		경과 오류
	Estimates and Errors		
IAS 12	Income Taxes	제1012호	법인세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
	by Retirement Benefit		계처리와 보고
	Plans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
	Financial Statements		무제표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국제회계기준	한국	국채택국제회계기준
	Presentation		
IAS 34	Interim Financial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Reporting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
	Liabilities and Contingent		발자산
	Assets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Recognition and		
	Measurement		
SIC 12	Consolidation-Special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
	Purpose Entities		

IAS 19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19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도입

- BC1 IASB가 IAS 19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또는 IASC)의 개별 위원들은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을 두고 다루었다.
- BC2 IASB의 전신인 IASC는 1998년에 IAS 19 '종업원급여'를 승인하였으며, 이로써 이전의 기준서가 대체되었다. IASC는 1996년에 발표한 공개초안 E54의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1998년에 IAS 19를 개정하였다. 1998년 개정 이후 IASC와 IASB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하였다.
 - (1) IASC는 2000년 10월에 사외적립자산의 정의(문단 BC178~BC190 참조)를 확대하였으며, 보상권에 대한 인식과 측정규정 (문단 BC195~BC199 참조)을 도입하였다.
 - (2) IASB는 2004년 12월에 복수사용자제도와 연결집단제도의 회계 처리(문단 BC35~BC38과 BC40~BC50 참조)를 개정하였다.
 - (3) IASB는 2011년 6월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변동의 이연 인식 선택권을 제거하였고, 그 변동을 어디에 인식하여야 하는지를 개정하였으며, 확정급여제도와 복수사용자제도의 공시요구사항 을 개정하였다. 또한 그 밖의 많은 사항을 개정하였다(문단 BC3~BC13 참조).

2011년 개정

- BC3 퇴직급여약정의 회계처리는 중요한 재무보고 논제이다. 일화적 증거와 학술연구에 따르면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2011년 개정전 IAS 19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이 제공한 퇴직급여의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무제표이용자와 재무제표작성자는 모두 이 요구사항이 퇴직급여에 관한 고품질의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예를 들면, 손익 인식이 지연됨으로써 재무상태표 금액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손익인식에 관한 다양한 선택권과 불분명한 정의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
- BC4 IASB는 2006년 7월에 퇴직급여약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요청에 대응하여 재무제표의 품질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퇴직급여약정의 회계처리 과제를 의제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퇴직급여회계처리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전반적인 과제는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퇴직급여약정에 관하여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단기적인 요구를 받아들였다.
- BC5 따라서 IASB는 제한된 범위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 3월 에 토론서 'IAS 19 종업원급여 개정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 토론서에는 IAS 19의 다음 분야에 대한 IASB의 예비적 견해가 포함되었다.
 - (1)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일부 손익의 이연 인식
 - (2) 순확정급여부채 또는 순확정급여자산 변동의 표시
 - (3) 기여금과 약정수익에 기초하는 종업원급여, 약정된 수익 및 고급여선택권(기여금기준약정)이 있는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
- BC6 이 토론서에서는 의견제출자에게 다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이 과제의 목

적을 감안하여 이 과제에서 추가로 다루어야 할 논제
(2) 공시사항 검토의 일부로서, IASB가 고려하여야 하는 공시사항

- BC7 IASB는 이 토론서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150건을 받았다. IASB는 이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기여금기준약정에 대한 검토를 연기하고 이를 미래의 가능성 있는 과제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IASB는 이 검토의견을 통해 제기된 추가 논제를 고려하였고, 다음을 포함하기 위하여 과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 (1) 확정급여제도와 복수사용자제도 공시사항에 대한 검토
 - (2) 토론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기된 추가 논제와 IFRIC에 해석을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던 문제들 중 IASB가 신속하게 다룰 수 있고 확정급여채무 측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확정급여제도의 보고를 개선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항
- BC8 IASB는 2010년 4월에 공개초안 '확정급여제도'(2010년 공개초안) 를 발표하였으며, 이 공개초안에 대해 외부검토의견 227건을 받았다. 2010년 공개초안을 통한 공식 의견조회 외에, IASB는 공개기간에 다양한 지역의 광범위한 재무제표이용자, 재무제표 작성자, 감독기구 및 종업원급여의 재무보고에 관심이 있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의견수집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 BC9 2010년 공개초안과 토론서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종업원급여 의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미국의 회계제정기구인 FASB와의 공동으로 작업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연속적인 변화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IASB가 종업원급여를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종업원급여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재무제표이용자가 보다 유용하고 이해가 쉬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종업원급여의 재무보고를 단기

간에 개선해야 한다는 시급한 요구가 있었다는 이전의 우려를 되풀이하였다.

- BC10 IASB는 2011년 6월에 다음 분야의 개선을 목표로 한 IAS 19의 개 정을 발표하였다.
 - (1) 다음을 포함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변동의 인식(문단 BC6 5~BC100 참조)
 - (개) 확정급여원가의 즉시 인식(문단 BC70~BC72 참조)
 - (나) 확정급여원가를 구성요소로 분리 (문단 BC73~BC87 참조)
 - (대)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문단 BC88~BC100 참 조)
 - (2)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1)(문단 BC152~BC173 참조)
 - (3) 확정급여제도의 공시사항(문단 BC203~BC252 참조)
 - (4) 해고급여의 회계처리(문단 BC11, BC254~BC268 참조)
 - (5) 다음을 포함하는 그 밖의 논제
 - (개) 종업원급여의 분류(문단 BC16~BC24 참조)
 - (나) 사망률의 현행 추정치(문단 BC142 참조)
 - (대) 세금과 관리원가(문단 BC121~BC128 참조)
 - (라) 위험공유와 조건부연동특성(문단 BC143~BC150 참조)
 - (6) 해석을 구하기 위해 IFRIC에 제출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한 다음을 포함한 이슈
 - (가) 특별소득세(Special wage tax)(2007년 3월)(문단 BC121 ~ BC124 참조)
 - (나) 종업원기여금의 처리(2007년 12월)(문단 BC143~BC150 참 조)
 - (다) 성과목표치에 근거한 연금약정(2008년 1월)(문단 BC143~ BC150 참조)
 - (라) 정산(2008년 5월)(문단 BC163 참조)

¹⁾ 정산(精算)

BC11 IASB는 2005년 6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IAS 19 종업원급여에 대한 개정(*Proposed Amendments to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and *IAS 19 Employee Benefits*)'(2005년 공개초안)으로 인한 해고급여 관련 개정사항을 2010년 공개초안으로 인한 개정사항과 함께 발표하였다. IASB는 IAS 37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고급여 개정을 연기하는 것보다 이 두 개정사항을함께 발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한된 범위의 과제의 일부로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들

- BC12 2010년 공개초안과 토론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 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예: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등)을 제기하였다. IASB는 이 문제들을 자세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에 개선하고 자 하는 목표 범위를 벗어난 논제들을 다루는 과제는 IASB의 의제설정 절차에 따를 것이다.
- BC13 IASB는 다루어야 할 논제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논제를 논의하였으나, 2011년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 (1) 기여금기준약정: 토론서에서는 기여금기준약정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였다. IASB는 종업원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 하는 경우 이 제안사항을 추가적으로 개발할지를 고려할 것이 다.
 - (2) *종업원급여의 할인율*: IASB는 2009년 9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종업원급여의 할인율(*Discount Rate for Employee Benefits*)'의 제안을 계속 추진하지 않았다. IASB는 할인율과 관련된 논제를 전반적인 검토의 맥락에서만 다룰 것이라고 결정하였다(문단 BC138 및 BC139 참조).
 - (3) 기대되는 미래임금상승이 급여배분에 미치는 영향: 2010년 공 개초안에서는 현행 급여로 표시되는 급여계산방식에서 중요하

게 높은 수준의 급여를 나중의 기간에 배분하는지를 결정할 때, 기대되는 미래임금상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이 제안이 기여금기준약정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제안을 계속 추진하지 않았다(문단 BC117~BC139 참조).

- (4)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예외: IASB 는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그러한 예외를 확장하는 것이 예외를 제한하는 IASB의 일반적인 접근법에 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B는 또한 다른 참여기업이 복수사용자제도를 탈퇴하여 기업이 복수사용자제도의 주된 참여자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러한 예외가 모든 복수사용자제도에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문단 BC39 참조).
- (5) IFRIC과 관련된 문제들. IASB는 IFRIC 14를 IAS 19에 통합하지 않았다. IFRIC 14를 통합하려면 초안을 변경해야 하며, 이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IASB는 또한 IFRIC 이 받은 그 밖의 질문을 고려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IAS 19를 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종업원급여 작업반

- BC14 IASB는 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자 및 이용자, 계리사 및 감독기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전문가의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종업원급여 작업반을 2007년에 구성하였다. 이 작업반은 다양한 퇴직급여약정의 운영, 관리, 평가, 재무보고, 회계감사 또는 감독에 있어 광범위한 실무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 BC15 작업반의 구성원들은 2011년 작성된 개정 초안 이전의 토론서와 공개초안을 검토함으로써 IASB에 도움을 주었다. IASB는 작업반

구성원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바친 시간과 열정 그리고 수준 높은 기여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급여의 분류

단기종업원급여: 2011년 개정사항

- BC16 2011년 개정사항은 종업원이 급여가 생기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부터 그 급여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 사이의 기간에 따라 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BC17 단기종업원급여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있어 IASB의 목적은, 단순화된 측정접근법에 따르더라도 이 급여가 IAS 19의 일반적인 측정규정과 다른 금액으로 측정되지 않는 종업원급여의 집합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 BC18 IASB는 단기종업원급여를 결제시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이 목적을 가장 잘 충족하고 IAS 19의 측정기준과 가장 부합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BC19 단기종업원급여의 분류기준으로 IASB가 고려한 그 밖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 (1) 가장 빠른 결제가능일(즉 자격부여): 단기종업원급여로 분류되는 급여가 그 급여의 현재가치와 중요하게 다른 금액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IASB는 이 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12개월이 되기 전에 종업원에게 급여 자격이 부여되지만, 여러 해가 지날 때까지 급여가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2) *가장 늦은 결제가능일*: 가장 늦은 결제가능일이 단기종업원급 여의 측정과 퇴직급여에 대한 모형을 사용하여 동일한 급여를

측정하는 것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IASB의 목적과 부합하더라도, 이 대안은 가장 작은 집단의 급여만이 이 정의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IASB는 이 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 BC20 그러나 단기종업원급여를 예상결제일에 근거하여 분류하면, 다음 과 같은 우려가 생긴다.
 - (1) 회계단위: 예상결제일은 급여의 특성과 종업원의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약정된 급여의 특성보다는 특정 연도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할 것이다. IASB는 급여를 분류하기 위해 인구통계적 가정이나 재무적 가정보다는 급여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2) 급여의 구성요소별로 분리: 일부 급여가 한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IASB는 급여의 전부가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된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에 따라 그 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급여가 그 존속 기간에 같은 기준에 의해 측정되며 문단 69의 측정규정과 부합할 것이다.
 - (3) 재분류: 최초에는 단기종업원급여로 분류된 급여의 예상결제일 이 후속적으로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동되는 경우, 이 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은 그 급여의 현재가치와 중요하게 다를 수 있다. IASB는 그 급여가 더 이상 단기종업원급여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분류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급여를 급여의 현재가치와 중요하게 다른 금액으로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목적을 지지한다. 그러나 IASB는 급여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의 변동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므로 예상이 일시적으로 변동될 경우 재분류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B는 급여를 기타장기중업원급여에서 단기종업원급여로 재분류하는 것은 덜 우려스럽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그 경우 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

으로 측정하더라도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중요하게 다르 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BC21 문단 BC20에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IASB가 고려한 그 밖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계단위*: 개별 종업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분류하도록 요구. IASB는 이 접근법은 실행할 수 없고 분류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2) 재분류: 최초 분류 이후 단기종업원급여의 분류 수정을 금지. 이 접근법은 급여가 존속하는 동안에 측정의 계속성을 유지시킬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그 급여를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 개월이 되기 전에 결제할 것으로 더 이상 예상하지 않는 경우그 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게 되면 그 급여의 현재가치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장기종업원급여: 2010년 공개초안

- BC22 IASB는 퇴직급여와 기타장기 종업원급여를 하나의 분류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퇴직급여와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회계처리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1) 보험수리적손익을 이연하여 인식하는 이전의 선택권('범위')
 - (2)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가득기간에 인식하는 이전의 규정
- BC23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IASB는 2011년에 이 차이를 제거하였다. 그 제안에 비추어,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구별을 없애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이 구별을 없애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의견제출자들은 퇴직급여의 인식과공시요구사항이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

- 다. 의견제출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퇴직급여의 인식과 공시요구사항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적용하는 원가가 그 효익을 초과한다.
-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원래 이 과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었다.
- BC24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 검토의견을 검토한 후에, IASB는 의견제출자들이 제시한 이유에 따라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 급여를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단기종업원급여

유급휴가

- BC25 일부는 종업원이 미래유급휴가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그 권리의 획득이 미래근무용역 외의 미래 사건을 조건으로 한다면 기업에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ASC는 1998년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미래유급휴가에 대한 자신의 권리(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도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의무가 생긴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누적병가의 경우 미사용 권리로 인해 종업원이 미래에 병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의무가 생긴다. 종업원이 실제로 미래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의무의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무의존재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 BC26 IASC는 미사용 누적유급휴가권에서 생기는 의무를 측정하는 접근 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 (1) 미래급여가 미사용 권리에 대해 먼저 지급되고 미래에 누적되는 권리에 대해 그 다음 차례로 지급된다는 기준에 입각하여 전체 미사용 권리를 부채로 인식하는 접근법(선입선출접근법)

- (2) 종업원집단 전체에 지급될 미래급여에 누적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접근법(집단적 후입선출접근법)
- (3) 개별 종업원에게 지급될 미래급여에 누적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접근법(개별적 후입선출접근법)
- 위 세 가지 방법은 다음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BC 사례 1

어떤 기업이 1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5근무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사용 병가는 차기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는 당기에 생긴 권리에서 먼저 사용된 다음에, 전기에서 이월된 미사용 권리에서 사용된다(후입선출기준). 20X1년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병가는 종업원당 평균 2일이다. 기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거경험에 비추어, 20X2년도 중에 종업원 92명이 사용할 병가일수는 4일에 그칠 것이며, 나머지 종업원 8명이 사용할 병가일수는 평균 6.5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법 (1): 200일(2일×100명)치의 유급병가와 관련된 할인하지 않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처음 200일분의 유급병가는 미사용 권리에서 생긴다고 가정한다.

방법 (2): 종업원집단 전체의 유급병가일수가 20X2년에 생기는 중업원당 5일치의 권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인식할 부채가 없다.

방법 (3): 12일치(종업원 8명 각각에 대해 1.5일치)의 유급병가 와 관련된 할인하지 않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BC27 IASC는 방법 (3) 개별적 후입선출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이 방법에 따르면 채무를 오직 누적특성 때문에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 미래급여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새 IAS 19에서는 많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인식되는 부채금액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확정기여제도

- BC28 1998년 개정 이전의 IAS 19에서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1) 확정기여제도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기금에 대한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이다.
 - (2) 확정급여제도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대개 종업원보상 이나 근무기간에 기초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 여제도이다.
- BC29 IASC는 이 정의가 기업이 부담하는 원가가 아니라 종업원이 받는 급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보았다. 1998년에 도입된 정의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원가가 증가할 수 있는 기여가치하락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확정기여제도의 정의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원가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는 기여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확정급여제도: 2011년 개정

BC30 2011년 개정에서는 급여계산방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확정 급여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급여계산방식에 특정된 급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기는 기여금과 급여계산방식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문단 29에 대한 이 개정은 충분한 사외적립자산이 있다면 지급되는 급여를 결정하지만, 그 급여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사외적립자산이 없더라도 기업에게 기여금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우려를 다루고 있다. 사실상, 이 급여지급액은 급여계산방식과 이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 중 적은 금액에 기초한다. 개정사항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확정기여제도임을 명확히 한다.

복수사용자제도와 공적제도

- BC31 복수사용자제도의 경우 기업이 확정급여회계를 적용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항상 해당 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IASC는 다음 세 가지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 (1) 확정기여회계를 적용하거나 확정급여회계를 적용하는 방법
 - (2) 모든 복수사용자제도에 확정기여회계를 적용하되, 성격상 확정 급여제도에 해당한다면 주석공시를 추가하는 방법
 - (3)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는 복수사용자제도는 확정급여회계를 적용하되, 확정급여회계를 적용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확정기여회계를 적용 하는 방법
- BC32 IASC는 복수사용자확정급여제도에 대해 확정기여회계를 적용하거 나 확정급여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별을 짓는, 개념적으로 완전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방법은 없다고 보았다. 또 IASC는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확정기여회계를 적용한다면 정보이용자를 오도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예는 프랑스 은행들이 산업전체 단체 약정에서 현금수지균형방식으로 운영되는 확정급여연금제도에 대해 확정기여회계를 적용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인구 통계적 추세변화로 인해 해당확정급여제도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미래 근무용

역에 대해서는 확정기여제도로 대체하는 개혁이 1993년에 단행되었다. 개혁이 단행된 시점에 프랑스 은행들은 확정급여채무를 계량화하여야만 했다. 이 확정급여채무는 이미 예전부터 존재하였지만 부채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 BC33 IASC는 성격상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는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회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확정급여회계를 적용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확정기여회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IASC는 대부분의 공적제도가 확정기여제도라고 보아 이 원칙을 공적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BC34 E54의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IASC는 연결집단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전부소유종속기업(그리고 그 지배기업)에게 원가-효익상의 이유로 개별재무제표상 인식과 측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C는 그러한 면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수사용자제도: 2004년 12월 개정

- BC35 IFRIC은 2004년 4월에 해석서 공개초안 제6호(D6) '복수사용자제도(Multi-employer Plans)'를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에서는 가능할 경우 복수사용자제도에 확정급여회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안하였다.
 - (1) 제도 전체의 관점에서 적절한 가정을 사용하여 IAS 19에 따라 측정한다.
 - (2) 제도의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이 제도참여기업의 미래기 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각 제도참여기업에 배분한다.

- BC36 D6에 대한 외부의견조회결과,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의 이용가능성, 측정결과배분의 어려움 및 확정급여회계 적용 시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 부족에 대해 의견제출자로부터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IFRIC은 공개초안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BC37 IASB는 연결집단제도(문단 BC40~BC50 참조)를 2004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수사용자제도와 그 참여기업 사이에 초과적립액을 배분하는 방법과 과소적립액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연결집단제도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 복수사용자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즉 참여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과소적립액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 원칙이 IAS 37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 BC38 따라서 IASB는 IAS 19에서 확정급여형 복수사용자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음의 경우 계약상 약정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 (1) 참여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적용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 문단 34에 따라 확정기여회계를 적용하더라도,
 - (2) 초과적립액을 배분하는 방법과 과소적립액을 보전하는 방법에 관한 계약상 약정이 있다면 해당 계약에서 비롯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복수사용자제도: 2010년 공개초안

BC39 IASB는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IASB는 그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예외를 제한하는 IASB의 일반적인 접근법에 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또한 다른 참여기업이 복수사용자제도를 탈퇴하여 기업이 복수사용자제도의 주된 참여자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러 한 예외가 모든 복수사용자제도에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결집단제도: 2004년 개정사항

- BC40 IASB는 연결집단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에서 확정급여회계를 무조건 면제받는지 아니면 해당 제도를 복수사용자제도로 보아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관계자들로부터 받았다.
- BC41 2004년에 발표된 공개초안(2004년 공개초안) '보험수리적손익, 연결집단제도 및 공시'를 마련하면서, IASB는 연결집단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에서 확정급여회계를 무조건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하지 못하였다. 원칙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은 다른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 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따를 경우, 동일 지배 아래에 있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복수사용자제도의 정의를 충족하는 제도에 참여하는 연결집단기업들이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에서 복수사용자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도록 IAS 19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BC42 그러나, 2004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항상 제도 전체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복수사용자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도의 자산과 채무를 배분하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기준이 있다면 확정급여회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BC43 2004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제도

의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이 미래기여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반영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배분기준을 식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는 연결실체 내에서 초과적립액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과소적립액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도규약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이최소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예: 연금수급권이 있는 급여의 비율)을 항상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 BC44 IASB는 일부 연결집단기업의 경우 일관되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사용하는 확정급여회계의 효익이 정보입수에 소요되는 원가에 비해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IAS 272)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면제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BC45 따라서 2004년 공개초안에서는 참여기업이 동일 지배 아래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복수사용자제도의 정의를 충족하는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1) 2004년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복수사용자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이는 제도의자산과 부채를 배분하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확정기여회계를 적용하되 주석을 추가하여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그 밖의 모든 경우에 참여기업은 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하여 확정급여회계를 적용한다.
- BC46 2004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대체로 복수사용자제도에 관한 규정을 연결집단기업에게까지 확장하는 개정안을 지지하였

²⁾ IAS 27의 연결규정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는 규정은 변동되지 않았다.

다. 그러나 2004년 공개초안에 대한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공개초안에 제시된 요건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 다.

- (1) 개정안이 명확하지 않고 D6과의 상호작용도 명확하지 않다(문 단 BC35~BC38 참조).
- (2) 복수사용자 회계규정은 상장지배기업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여 하다.
- (3) 복수사용자 회계규정은 채무증권을 상장한 연결집단기업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4) 복수사용자제도 회계규정은 일부소유종속기업을 포함하여 모 든 연결집단기업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5) 모든 연결집단기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정급여회계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BC47 IASB는 연결집단제도에 관한 개정안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 IASB는 참여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 (연결집단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도 전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때문에 연결집단제도를 복수사용자제도와 구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IASB는 지배기업이 자신의 별도재무제표나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가 IFRS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주석공시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48 IASB는 제도 전체의 순확정급여원가를 연결집단기업들이 부담하는 방법에 대하여 약정이나 명시적 방침이 있다면 각 기업이 부담하는 원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그러한 약정이나 명시적 방침이 없다면 제도에 관한 위험은 자동적으로 책임사용자가 되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IASB는 연결집단제도에 약정이나 명시적 방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개별기업에 배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만약 그러한 약정이나 명시적 방침이

없다면 순확정급여원가는 책임사용자에게 배분한다. 그외 다른 연결집단기업은 책임사용자가 회수하는 기여금 상당액을 원가로 인식한다.

BC49 위와 같은 접근법은 모든 연결집단기업이 확정급여약정 때문에 부담하는 원가를 인식하도록 하면서도 적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BC50 IASB는 또한 연결집단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 24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IAS 24에서는 특수관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래와 잔액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IASB는연결집단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1) 확정급여원가를 부담시키는 방침, (2) 현행의 기여금 부과방침, (3) 제도 전체의 적립현황에 관한 정보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공공제도와 연결집단제도의 공시: 2011년 개정

BC51 2011년 개정에서는 복수사용자제도의 공시요구사항 및 확정급여 제도의 공시요구사항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제도나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 제도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재검토 없이 갱신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이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상 공시를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이 공시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

확정급여제도: 인식과 측정

- BC52 비록 1998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퇴직급여채무의 부채인식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급여채무를 1998년 개정 전후의 IAS 19의 요구사항에 따라 같은 시점에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1998년 개정 전후의 IAS 19의 규정은 그러한 부채의 측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 BC53 IAS 19 문단 63은 IASC의 Framework에에 있는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에 기초하고 있다. Framework에서는 부채를 '과거 사건에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로 정의하였다. Framework에 따르면,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다음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인식하여야 한다.
 - (1)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probable)
 - (2)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BC54 IASC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제도에서 약정하는 급여의 대가로 종업 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기업에게는 의무가 생긴다. 문단 70~74에서는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각 근무기 간에 급여를 배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 (2) 기업은 미래 보고기간에 그 급여를 지급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한다(문단 75~98 참조).
- (3)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면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BC55 IASC는 급여가 가득되지 않더라도, 달리 말해서 종업원의 수급권이 미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2년을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급여 100을 지급하는

³⁾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는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 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기업이 있다고 하자. 1차년도 말에 종업원과 기업이 처한 상황은 1차년도 초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종업원은 급여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기까지 앞으로 2년이 아니라 1년만 더 근무하면 되기 때문이다. 비록 급여가 가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IASC의 관점에서는 그 상황차이가 의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1차년도 말에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현재가치로 측정할 때에는 급여가 가득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

측정일

BC56 일부 국가의 회계기준에서는 확정급여제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일을 보고기간 말부터 3개월 전까지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IASC는 확정급여제도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보고기간 말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일 전에 의무를 상세하게 계산하였다면 대차대조표일(보고기간 말)까지의 유의적 거래나 상황변경을 고려하여 그계산결과를 갱신하여야 한다.

BC57 E54의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IASC는 재무제표에 실제로 인식되는 금액이 보고기간 말을 기준으로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다면, 대차대조표일에 완전한보험수리적 계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간보고: 2011년 개정의 영향

BC58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IAS 34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제안하지 아니하였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즉시 인식하도록 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각 중간보고일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 BC59 IASB는 IAS 19와 IAS 34에서 기업이 중간보고를 위해서 항상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두 기준서는 중간 보고기간 말 또는 연차 보고기간 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때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BC60 2011년도 개정에서는 재측정요소를 생긴 시점에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을 이연하는 것을 선택하였던 경우, 재측정요소는 개정 이전에 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보험수리적손익의 일부를 이연하여 인식한 기업은 중간보고목적을 위해 재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다.
- BC61 IASB는 중간보고일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변화는 IAS 34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가 될 것이며, 따라서 그 개정에 반대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전 판의 IAS 19에 따라 즉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하였던 기업이 이 중간보고 요구사항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우려를 알고 있지 않다.
- BC62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전 회계연도 말에 사용된 가정이나, 확정급여채무의 가장 최근 측정에 사용된 가정 (예: 앞선 중간기간 또는 제도 개정이나 정산의 영향을 결정할 때 사용된 가정)을 후속 중간기간의 확정급여원가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가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를 IASB가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BC63 IASB는 각 중간 보고기간에 대한 가정이 최근 중간보고일까지 갱신된다면, 기업의 연간 금액 측정치는 기업이 얼마나 자주 보고하는지에 (즉 기업이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지, 반기별로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중간 보고기간이 없는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IAS 34 문단 28과 2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64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2018년 2월에 공표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IAS 19 개정)'은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할 때,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갱신된 보험수리적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BC173A~BC173F는 이 개정 내용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 전 IAS 19에서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결정할 때 갱신된 가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며, 문단 BC64는 이러한 과거 요구사항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과거 요구사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IASB는 문단 BC64를 삭제하였다

인식: 2011년 개정

- BC65 2011년의 개정사항에 따라 기업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모든 변동을 생긴 기간에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원가를 세분 화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 (1) 제공받은 근무용역의 원가와 관련된 근무원가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 (2) 미리 지급하거나 나중에 지급하는 급여의 재무적 영향을 나타 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다.
 - (3)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기간별 변동을 나타내는 재측 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BC66 이 개정이 있기 전 IAS 19는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권을 허용하였다.
 - (1) 보험수리적손익이 '범위(corridor)' 안에 있는 경우 보험수리적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을 이연하여 당기손익으로 이연 인식하는 방법

- (2)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방법
- (3) 기타포괄손익에 즉시 인식하는 방법.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보험수리적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된다.
- BC67 2011년 개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식 요구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 (1) 즉시 인식: 범위의 삭제(문단 BC70~BC72)
 - (2) 확정급여원가 구성요소의 재정의(문단 BC73~BC87)
 - (3)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문단 BC88~BC100)
- BC68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이 과제에서 확정급여원가 세분화와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어디에서 인식해야 하는가를 다루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적절한 세분화 방법의 결정이 본질적으로 회계모형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IAS 19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IASB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IAS 19의 회계모형의 관점에서 고려하였다. IASB의 관점에따르면, 이 세분화의 규정은 그 모형과 일관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BC69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궁극적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는 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개념적 기초를 포함하여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IASB의 과제를 완성하기 전까지, IASB가 이 문제들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IASB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즉시 인식한다면 그 변동의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재무제표표시에 관한 과제를 완성할 때까지 그 변동에 대한 이해가능성의 향상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시 인식: 범위의 삭제

- BC70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즉시 인식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이연 인식으로 제공되는 정보보다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확정급여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충실하게 나타내며,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 더 쉽다. 이와반대로, 이연 인식은 다음의 예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줄 수 있다.
 - (1) 제도가 과소적립되어 있을 때에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인식할 수도 있다.
 - (2) 과거 기간에 일어난 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손익이 포괄손익계 산서에 포함될 수도 있다.
- BC71 또, 회계처리 선택권이 삭제되어 이용자가 보다 쉽게 기업들을 비교할 수 있다.
- BC72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 산의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을 발생시점에 인식하는 제안을 지지 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즉시 인식하는 것에 다음과 같 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 (1) *측정모형에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측정모형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IAS 19의 측정모형에서 생기는 변동을 즉시 인식하는 것으로 이동하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이연 인식은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를 모호하게 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IASB는 즉시 인식을 위한요구사항 도입을 늦추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2) 정보의 목적적합성: 일부 의견제출자는 회계기간에 생기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일부 변동은 장기부채의 측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이는 과거의 손익이 미래의 손

익에 의하여 상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미래의 손익이 생겨 과거의 손익을 상계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 (3) 변동성: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모든 변동을 각 기간에 보고하는 경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이 변동성이 회계연도 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업의 핵심사업의 수익성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 자체로 변동성이 있는 거래와 그밖의 사건을 충실히 나타낸다면 이에 대한 측정치는 변동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정보는 재무제표에서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고본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그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가에게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표시방법을 도입하였다(문단 BC88~BC100).
- (4) 행동적이고 사회적인 결과: 일부 의견제출자는 즉시 인식이 행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사외적립자산의분배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제도규약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개정함으로써 단기적 변동성을 없애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특정한 행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회계제정기구의 책임이 아니다.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책임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산출하도록회계기준을 정하여 정보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5) *부채계약에 대한 잠재적 영향*. 일부 의견제출자는 즉시 인식이 순이익이나 순자산을 기초로 한 부채계약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 금액에 기초한 법적제약으로 인해 기업의

배당금 지급능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부채계약을 새로운 또는 개정된 회계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또는 현재 존재하는 부채계약을 어떻게 재협상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과 부채계약의 보유자의 몫이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근무원가

BC73 근무원가 요소에는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으로 인한 손익이 포함되지만, 재측정요소에 포함되는 인구동태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등 보험수리적손익은 제외된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근무원가요소에 대한 인구동태적가정의 변동효과를 포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예측가치가 있는 금액을 결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근무원가요소에 근무원가에 대한 과거추정치의 변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근무원가요소는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 원가를 평가하는 데 보다 목적적합하다.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근무원가에서 인구동태적가정의 변동을 제외하여야한다는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하였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순이자

- BC74 2011년 개정에서는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순이자접근법).
- BC75 이 개정은 순확정급여부채가 제도 또는 종업원에게서 기업이 차입하여 조달한 금액과 같다는 관점과 일관된다. 이 자금조달의 경제적 원가는, 문단 83에 특정된 이자율을 사용하여 계산되는 이자원가이다. 이와 유사하게, 순확정급여자산은 기업에게서 제도 또는 종업원이 차입한 금액이다. 기업은 제도나 종업원에게서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환급의 형태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에 대하여 회계처리한다. 기업은 이 경제적 효익을 문단 83에 특정된 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 BC76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순이자접근법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구성요소인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 각각에 대해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이 결정되는 경우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한다. 순이자접근법은 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을 때 기업이 이자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제도에 과소적립액이 있을 때 이자원가를 인식하게 한다.
- BC77 IASB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가치의 변동은 시간의 경과로 생기는 금액과 그 밖의 변동으로 생기는 금액으로 나눌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긴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확정급여원가의 순이자요소에는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로 생기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IASB는 다른 예측가치가 있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분리하는 원칙과 일관되게, 순이자요소에는 시간의경과로 생기지 아니하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 BC78 IASB는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식별하는 실무적인 방법을 식별하는 것이 (특히 명시적인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사외적립자산의 경우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ASB는 다음을 이용하여 이 금액의 근사치를 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2011년 개정 전 IAS 19의 요구사항). 이 수익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수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지분상품인 사외적립자산의 배당수익(자본이득이 아님)과 채무 상품인 사외적립자산의 가득된 이자수익. IASB의 관점에 따르 면, 배당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 BC79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은 확정급여채무를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이자율을 사용하여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이자수익이 산출된다.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이자수익과의 차이는 재측정요소에 포함된다(문단 BC86 참조).
- BC80 의견제출자는 순이자요소에는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변동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일반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접근법을 지지하였으나 다른 의견제출자는 2011년 개정 전 IAS 19에서 사용된 (즉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에 기초하는) 기대수익접근법을 지지하였다.
- BC81 IASB는 순이자접근법이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일관되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이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 함으로써 기대수익접근법보다 목적적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한 의견제출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순이자접근법은 제도가 초과적립상태일 때 순이자수익을 보고하고, 제도가 과소적립 상태일 때 순이자비용을 보고함으로써 기업이 제도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관한 결정의 경제적 실질을 나타낸다.
- BC82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 (1) 사외적립자산은 서로 다른 여러 유형의 투자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다. 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익은 자의적이며, 투자자들이

각 유형의 자산에서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수익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부채를 할인하는데 사용되는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실용적인 접근법이다.

- (가)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이자요소와 재측정요소로 나누는 데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 (L)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 모두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 치의 영향을 반영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결과 가 된다.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제도의 기 금적립 여부의 차이를 반영한다.
- (2) 할인율 결정에 관한 문단 83의 요구사항으로 우량회사채에 대한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경제적으로 유사한 확정 급여채무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보고될 수 있다. 문단 BC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IAS 19의 할인율 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확정급여채무 측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지를 결정할 때까지 할인율에 대한 고려를 미루기로 결정하였다.
- BC83 IASB는 기대수익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였다.
 - (1) 기대수익접근법은 사외적립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과 일관성이 있으나, 순이자접근법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나타내며 그 결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그 순금액의 변동에 대하여 보다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 (2) 기대수익접근법이 순이자접근법보다 이론적으로 더 주관적이 지는 않지만, 기대수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실무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순이자접근법에 사용되는 할인율을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
 - (3) 기대수익접근법은 보고기간의 실제 성과에 관계없이 사외적립

자산의 기대성과를 보고하게 한다. 고위험 투자자산의 경우, 동 접근법은 예상되는 더 높은 수익을 인식하며, 더 큰 위험의 영향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반대로, 순이자접근법은 더 높은 수익과 더 큰 위험의 영향을 기타포괄손익에 모두 인식한다.

BC84 순이자접근법과 기대수익접근법 지지자 모두 각자가 선호하는 접근법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상반되는 견해는 각각 다른 의견제출자들이 재무상대표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별도로 측정되지만 함께표시되는 2개의 구성요소(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거나(총액 견해) 제도에게서 빌린 또는 제도에게 빌려준 하나의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는(순액 견해) 방법을반영할 수도 있다. 이 견해 차이는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업의통제의 정도와 같은 제도설계의 차이 또한 반영할 수도 있다. 기대수익접근법은 총액 견해와 보다 일관되며, 순이자접근법은 순액견해와 보다 일관된다. IASB는 순액 견해가 재무상태표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표시와 보다 일관되며 그 결과 순액 견해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순확정급여원가를 세분화하여야 한다고결론을 내렸다.

BC85 순이자접근법과 기대수익접근법에 대한 지지자들은 모두 각 접근법이 특정 방식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비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을 도출할 때 IASB는 특정한 행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어떤 접근법이 사외적립자산과 순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을 충실하게 표시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려하였다.

순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재측정

- BC86 근무원가요소와 순이자요소에 대한 IASB의 결정에 따라, 2011년 개정에서는 재측정요소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
 - (1)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
 - (2)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되는 금액 제외)
 - (3)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 BC87 재측정요소의 정의는 2011년 개정 전 IAS 19의 보험수리적손익의 정의와 다르다. 그 이유는 순이자접근법의 도입으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과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세분화 내용이 변동되었기 때문이다.

확정급여위가의 구성요소: 제측정요소의 인식

- BC88 문단 BC70~BC7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1년 개정에서는 이연 인식을 삭제하였다. 유익한 방식으로 재측정요소를 근무원가 및 순이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의 한 항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으 며, 이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는 종전의 선택권을 삭제하였다. IASB는 재측정요소에 포함된 변동이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 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적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 다.
- BC89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 (1)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일부 의견제출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을 지 지하지 아니하였다.

- (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개념적인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 (나) 재측정요소의 예측가치가 그 밖의 구성요소의 예측가치와 다르다는 사실로 인해 재측정요소가 기타포괄손이익에 인 식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실 은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의 별도항목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F) 가정의 변동이 근무원가와 같은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특정 회계처리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무원가를 잘못 추정하는 것이 조장될 수 있다.
- (2) *제측정요소 선택권*: 일부 의견제출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IASB가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 (가) IASB가 어떤 항목을 당기손익으로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 선택권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 (내)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최 선의 방법이다.
 - (대) 작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단순하게 유지한다.
 - (라)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것은 회계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다(예: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제도의 경우, 기 업이 확정급여채무에 대하여 지급할 자산을 보유하고, 이 자산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 (3)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 일부 의견제출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 식된 금액이 후속 기간에 재분류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내) 이 변동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후속 기 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US GAAP과 차이가 생긴 다.

BC90 2011년 개정을 완료할 때 IASB는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여야 한다는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을 확정하였다. IASB는 개념체계4)와 IAS 1이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항목을 식별하는 원칙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서로 다른 예측가치가 있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들을 세분화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BC91 IASB는 문단 BC92~BC98에 논의된 이유에서 문단 BC89(1)과 (2)에서 나타난 우려 중 일부를 다루는 대안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문단 BC99에서 논의되고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재측정요소를 인식하는 그 밖의 접근법

BC92 IASB는 재측정요소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하였다.

- (1) 즉시 인식하는 개정 전 IAS 19의 선택권(문단 BC93)
- (2) 모든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BC94~BC96)
- (3)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복합접근법(문단 BC97과 BC98)

^{4) 2010}년에 공표되어 이 기준서가 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 BC93 2011년 개정 전 IAS 19는 보험수리적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2가지 방법을 허용하였다. 2010년 공 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재측정요소를 당기손 익이나 기타포괄손익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선택권을 유지한다면 작은 규모의 제도를 가진 기업들이 회계처리를 단순하게 유지하고 기업들이 문단 BC89(2)에서 언급된 회계불일치를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선택권을 삭제하는 것이 재무보고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BC94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정급여원가의 일부 항목을 기타포괄손익을 이용하여 인식하기 보다는 모든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 (1) 일부 의견제출자는 Framework와 IAS 1이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항목을 식별하는 원칙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2) 일부 의견제출자는 재무상태표에 하나의 순금액으로 표시하는 것과 일관되게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금액을 인건비 또는 근 무비용에서 생기는 하나의 순금액으로 합하여 나타내야 한다 고 본다.
- BC95 그러나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장기적 속성이 있는 항목의 단기적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IASB는 2011년 6월 에 발표된 IAS 1의 개정에서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의 개선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다른 예측가치가 있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들을 세분화하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재측정요소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BC96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IASB가 수익과 비용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항목과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을 후속적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는지를 식별하는 과제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IASB가 그러한 과제를 수행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재측정요소의 인식에 관한 IASB의 결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 BC97 IASB는 회계불일치가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외적립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에서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이 기업은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것이지만, 이 자산의 장부금액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당기손익에서 회계불일치를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 재측정요소를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또는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 BC98 그러나 IASB는 그러한 복합접근법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복합접근법을 추구하려면 IASB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어야하며, 이는 IAS 19의 요구사항에 유의적인 복잡성을 추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1) 회계불일치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의 도입
 - (2) 그러한 선택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의 변동(기금이 적립되는 상태와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상태 사이에서 전환되는 제도 개정, 합병 또는 계획과 같은 경우)이 있는 경우 기업이 그러한 선택을 재검토할 수 있는지의 결정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

BC99 2011년 개정 전 IAS 19와 개정 후 IAS 19는 모두 재측정요소를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 지한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재분류를 금지하였다.

- (1) IFRS에서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에 대한 일관된 방침이 없으며, 이 문제를 2011년의 IAS 19 개정에서 다루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 (2) 그러한 재분류의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는 적절한 기준을 식별하기 어렵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재측정요소 누계액

BC100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금액을 이익잉 여금에 직접 대체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FRS는 '이익 잉여금' 문구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IASB는 이익잉여금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지 않았다. 더욱이 자본요소에 대하여 국가별로 특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2011년 개정은 기업이 재측정요소 누계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대체에 대해 특정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자산인식상한

- BC101 IAS 19 문단 63에 따라 자산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E54 에서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다음의 현재가치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1) 제도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환급액
 - (2) 초과적립액 때문에 기대되는 미래기여금절감액

E54를 의결할 때, IASC는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효익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이 관점은 IASC가 공개초안 제55호 (E55)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에서 자산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도록 제안한 것과 일관되었다. 1998년 개정 이전의 IAS 19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었다.

BC102 일부 외부검토의견에서는 기대환급액이나 기여금절감액에 대해 극도로 주관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54에서 정한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견에 대응하여 IASC는 이용할 수 있는 환급액이나 기여금절감액을 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추가 최소부채

- BC103 IASC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추가 최소부채를 인식하도 록 요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 (1) 대차대조표일 현재 제도를 중단하는 경우 그 시점의 채무가, 정 상적일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될 부채의 현재가치보다 큰 경우
 - (2) 종업원이 이직할 때 가득퇴직급여가 지급되고 그 결과, 할인효 과 때문에 대차대조표일 직후 종업원이 이직하는 경우의 가득 급여 현재가치가 종업원이 예상근무기간을 모두 채울 경우보 다 더 커지는 경우
 - (3) 가득급여의 현재가치가 정상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인식될 부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11년 IAS 19 개정 전에 이러한 경우는 급여의 대부분이 완전히 가득되었고 기업이 보험수리적손실과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하지 않았을 때 생겼다.
- BC104 추가 최소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미국의 재무회계기 준서 제87호(SFAS 87)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회계처리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최소부채는 현재임금에 기초하되 과거근무원가나 보험수리적손익을 이연하는 효과는 배제하여 산정하였다. 만약 최소부채가 정상적인 예측임금기준으로 측정한 채무(일부 유형의 수익과 비용은 이연하여 인식함)를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액은 무형자산(미상각과거근무원가금액을 한도로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함)과 추가 최소부채로 인식하였다.

BC105 IASC는 부채에 대해 그러한 추가적 측정치를 둔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 그러한 추가적 측정치는 개념체계상 계속기업가정과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새로운 IAS 19는 추가 최소부채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앞의 두 문단에서 언급한 일부 경우에서는 IAS 37에따라 주석공시가 필요한 우발부채가 생겼을 수도 있다.

자산의 일부로서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2011년 개정

BC106 IAS 19에서는 다른 IFRS 기준서에서 자산의 원가에 확정급여원가를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확정급여원가를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재측정요소가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기에 적합한 수익이나 비용인지를 명확히 해 줄 것을 IASB에 요청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재측정요소를 자산의 일부로 인식하고 그 자산을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IASB의 결론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BC107 자산의 원가 결정과 관련하여 IFRS는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수익과 비용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을 구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어떤 항목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지는 그 항목의 속성과 그 항목이 그 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IFRS에서 원가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달려있다. 게다가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의 재분류에 대한 IASB의 결론과 일관된다. 그 이유는 자산의 일부로 인식되는 금액은 처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험수리적 계산방법

- BC108 1998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발생급여평가방식(표준이 되는 처리방식)과 예측급여평가방식(대안으로서 허용되는 처리방식) 모두 를 인정하였다. 이 두 방식은 종업원급여를 회계처리하는 목적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랐으며 양립할 수 없었다.
 - (1) **발생급여방식**(때로는 '급여', '단위적립', '개별프리미엄' 방식으로 불린다)은 측정일까지의 근무용역에 기인하는 종업원급여의 현재가치를 결정한다.
 - (2) 예측급여방식(때로는 '원가', '균등기여금', '균등프리미엄' 방식으로 불린다)은 퇴직일의 예상총채무를 예측한 다음 투자수익을 고려하여 퇴직일에 총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균등기금적립원가를 계산한다.
- BC109 위 두 방식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한 경우는 우연한 경우이거나 제도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수와 연령분포가 오랫동안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외에는 없을 것이다. 두 방식에 따른 부채의 측정치 사이에는 유의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ASC는 하나의 방식만을 요구하여 비교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BC110 IASC는 발생급여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보 공시요 구사항을 도입하면서 예측급여방식을 대안적 처리방법으로 허용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C는 그 공시만으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보았다. IASC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예측급여방식이 부적절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1) 발생급여방식이 과거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예측급여 방식은 과거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 사건(미래 근무용역)에도 초점을 맞춘다.

- (2) 예측급여방식은 부채를 실제 금액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단지 원가배분의 결과치로만 나타낼 수 있다.
- (3) 예측급여방식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국제회계기준 제22호(IAS 22)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5)에서 요구하는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서 사용될 수 없다. 기업이 사업결합을 회계처리할 때 발생급여방식을 사용하였다면, 후속 기간에 같은 채무를 회계처리하기 위해 예측급여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실행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BC111 1998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발생급여평가방식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표준적 처리방법으로 인정되는지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1998년에 개정된 IAS 19에서는 하나의 발생급여방식(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며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때로 '근무용역비율에 의한 발생급여방식' 또는 '급여/근무연수방식'으로 불리기도 한다)만을 요구하였다.
- BC112 IASC는 발생급여방식 중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과 예측급여방식을 삭제할 경우 회계원가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계산능력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계산을 하더라도 추가되는 원가는 미미하였을 것이며, 비교가능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그 추가원가를 능가하였을 것이다.
- BC113 예컨대 폐쇄형기금의 경우, 때로는 보험계리인이 기금적립목적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C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데 합의하였다. 왜냐하면 예측단위적립방식은 1998년 개정된 IAS 19에서 규정한 회계처리 목적에 더 잘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⁵⁾ IAS 22는 2004년에 폐지되어 국제재무보고기준 제3호(IFRS 3)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으로 대체되었다.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 BC114 문단 BC54에서 설명한대로, IASC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제도에서 약정하는 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기업에게는 의무가 생긴다고 믿었다. IASC는 각기 다른 기간에 각기다른 금액의 급여를 배분하는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방법으로서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하였다.
 - (1)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종업원이 추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 도 추가임금상승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급여가 생기지 않는 날까지의 기간에 전체 급여를 정액법으로 배분하는 방법
 - (2) 급여를 제도급여계산방식에 따라 배분하되, 제도급여계산방식 이 근무기간 후반에 중요하게 더 높은 급여를 배분하는 경우 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는 방법
 - (3) 매 중간일에 가득되는 급여를 그 날과 직전의 중간가득일 사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배분하는 방법

다음 두 개의 사례에서는 위 세 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BC사례 2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된다.

- ①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10년 초과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400원을 지급한다.
- ②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100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 근무연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1년차~10년차	11년차~20년차
방법 (1)	25	25

방법 (2)	40	10
방법 (3)	40	10

BC사례 3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된다.

- ①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10년 초과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100원을 지급한다.
- ② 종업원의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400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 근무연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1년차~10년차	11년차~20년차
방법 (1)	25	25
방법 (2)	25	25
방법 (3)	10	40

주: BC사례 2의 제도는 근무기간 초반에 더 높은 급여를 배분하고 있는 반면, BC사례 3의 제도는 근무기간 후반에 더 높은 급여 를 배분하고 있다.

- BC115 IASC는 E54를 의결할 때 방법 (1)을 채택하였다. 이는 방법 (1)이 가장 단순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각기 다른 기간마다 각기 다른 금액의 급여를 배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는 데근거한 것이다.
- BC116 E54의 외부검토의견 중 유의적 소수의견에서는 급여계산방식에 따르는 방법(또는 그 대안으로서, 기준서에서 여전히 정액법에 의한 배분방법이 유지된다면 급여계산방식에 근거하여 최소부채를

인식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IASC는 이 외부검토의견에 동의하여 문단 BC114(2)에서 설명된 방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의 배분: 2010년 공개초안

- BC117 문단 70에서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근무기간 초반보다 근무기간 후반에 중요하게 높은 경우, 기업이 정액법으로 급여를 배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급여계산방식이 현재 급여의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는 경우 일부는 기대되는 미래임금상승은 급여계산방식이 근무기간 후반에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배분하는지를 결정할 때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BC118 그러나 그 견해가 받아들여지면, 근무기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의 비율에 근무연수를 곱한 것으로 기술되는 급여)과 현재임금(현재임금의 비율로 기술되는 급여)이 경제적으로 동일할지라도 그러한 급여들을 배분한 금액은 다를 것이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같은 급여는 급여계산방식이 그러한 급여를 기술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현재 임금의 관점으로 표현되는 급여계산방식이 중요하게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근무기간 후반에 할당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예상되는 미래임금상승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BC119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다음 이유로 이 제안 에 동의하지 않았다.
 - (1) 이전 기간 또는 후속 기간의 근무용역이 특정 연도에 가득된 급여증가액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 (2) 기업이 근무기간 후반에 더 높은 수준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사실이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모든 근무기간동안 원가를 평준할 이유는 없다. 그 제도는 정액기준으로 모든 근무용역을

보상할 의도가 없다.

BC120 IASB는 이번 단계에서 이 논제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이 논제는 이번 과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IASB가 결정하였던, 기여금기준약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수리적 가정: 제도와 관련된 세금(2011년 개정)

- BC121 2011년 개정은 다음을 명확히 한다.
 - (1) 제도와 관련된 세금이 보고일 전의 근무용역과 관련되거나 그 근무용역으로 인해 생긴 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경우 확정급 여채무 추정치에는 그 세금의 현재가치가 포함된다.
 - (2) 그 밖의 세금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감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 BC122 IASB는 IAS 19에서는 장기종업원급여 제공의 궁극적인 원가를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제도가 궁극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때 세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세금은 궁극적인 원가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기여금이그 기간 전의 근무용역과 관련되는 경우(예: 기여금이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궁극적인 원가에는 제도와 관련된 모든 세금이 포함된다.
- BC123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에 다음 사항을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 국가의 고유한 조세제도
 - (2)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
 - (3)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 대한 세금
- BC124 그러나 IASB는 연금원가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세금이 전세계적

으로 존재하며, 그 세금이 IAS 12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인세 인지, IAS 3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의 원가인지, IAS 1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종업원급여의 원가인지는 판단사항이라는 데주목하였다. 다양한 조세약정을 고려할 때, IASB는 제도 자체에부과된 세금과 관련된 논제를 벗어나는 논제를 다룰 수 없으며, 따라서 2011년 개정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보험수리적 가정: 관리원가(2011년 개정)

- BC125 2011년 개정에서는 관리용역이 제공될 때 관리원가를 인식할 것 과 사외적립자산 운영과 관련된 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개정이 있기 전, IAS 19에서는 확정급 여채무 측정에 사용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제도관리원가를 제외한 제도관리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정 전 IAS 19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원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 BC126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제도운영원가의 처리는 그 원가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은 다음을 제안하였다.
 - (1) 사외적립자산 운영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결정할 때 차감되는 유일한 관리원가여야 한다(이 원가는 재측정요소의 일부이다). 그 밖의 관리원가(예: 급여지급관리원가)는 사외적 립자산과 관련이 없다.
 - (2)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당기근무용역 또는 과거근무용역으로 인한 급여의 관리와 관련된 원가의 현재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확정급여채무는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측정목적과 일관된다.
- BC127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사외적립자산운영의 원가 및 그 밖의 관리용역의 원가를 식별하고 추정하는 방법과 그 밖

의 근무용역관리원가를 당기근무용역, 과거근무용역 및 미래근무용역에 배분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실무적인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IASB는 관리용역이 제공될 때 관리원가를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실무적 간편법으로 인해 현행근무용역, 과거근무용역, 미래근무용역 사이에 원가를 배분할 필요가 없다.

BC128 수수료 총액이 사외적립자산운영과 그 밖의 관리용역 모두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사외적립자산운영원가를 추정하는 것이 비용이 과도하게 들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사외적립자산이 없다면 기업은 관리원가를 추정하거나 시장에서 관리용역의 가격을 관측함으로써 그러한 원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

BC129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할인율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다. 1998년 개정 전 IAS 19에 따르면 약정퇴직금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가정하는 할인율은, 해당 채무의 청산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장기이자율(또는 그 근사치)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IASC는 그러한 이자율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자율은 채무의 청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기업과 관련이 없었으며, 해당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공의 이자율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BC130 일부는 기금이 적립되는 급여인 경우 제도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을 할인율로 해야 한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 궁극적인 기대현금흐름(즉, 미래기여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C는 기금이 특정한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느냐가 채무의 성격이나 금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특히 기대수익이 높은 자산은 그만큼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하게되는데, 단순히 제도가 기대수익이 높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부채를 더 적게 인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의 측정은 제도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측정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 BC131 결정해야 할 가장 유의적인 문제는 할인율이 위험조정할인율(채무와 관련된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지였다. 일부는 가장적절한 위험조정할인율은 사외적립자산의 적절한 포트폴리오에서기대되는 수익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사외적립자산의 적절한 포트폴리오는 장기적 관점에서 채무에 대해 효과적인 위험회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1) 전직종업원과 관련된 확정급여채무에 대응되는 고정이자부증 권. 단, 확정급여채무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에 연동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 (2) 전직종업원과 관련된 지수연동확정급여채무에 대응되는 지수 연동증권
 - (3) 현직 종업원과 관련되고 퇴직 전 최종임금에 연동되는 확정급 여채무에 대응되는 지분증권. 이는 지분증권의 장기적인 성과 가 경제 전체의 일반적인 임금상승추세, 따라서 확정급여채무 의 퇴직 전 최종임금요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적절한 포트폴리오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감독당국의 규제로 인해 제도가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가 자 산의 특정한 부분을 고정이자부증권의 형태로 보유하도록 요구한 다. 나아가 적절한 포트폴리오와 유효한 참조기준이라면 기금이 적립되는 제도와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제도 모두에 대해 똑같이 유효하다.

- BC132 위험조정할인율로서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 (1) 포트폴리오이론에 따르면 자산의 기대수익(또는 부채에 내재된 이자율)은 해당 자산(또는 부채)과 관련된 분산투자로 제거할 수 없는 위험과 관련된 것이다. 분산불가능위험은 절대적 수치로써 수익(또는 지급액)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수익(또는 지급액)이 다른 자산의 수익과 갖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포트폴리오로부터의 현금유입이 경제상황변화에 반응하는 양상이 확정급여채무의 현금유출과 동일하다면, 확정급여채무의 체계적 위험(따라서 적절한 할인율)은 자산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할인율)과 같다.
 - (2) 최종임금기준산정방식의 확정급여제도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측면은 최종임금과 지분증권수익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양자가 동일한 장기경제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양자의 상관관계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무시할 경우 부채가 체계적으로 과대계상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또 양자의 상관관계를 무시한다면 확정급여채무의 할인율과 제도자산의 공정가치에 내재된할인율 간에 격차가 생기고 그 격차가 단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오해하기 쉬운 변동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요인으로 인해기업은 더 이상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도 투자방식을 지분증권 위주에서 고정이자부채권 위주로 전환할 것이다. 확정급여제도의 적립금이주로 지분증권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 투자방식전환은 주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 이 투자방식전환은 연금원가를 증가시킬 것이다. 기업이 외견상의 기금부족(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음)을 해소하도록 하는 압력이 있을 것이다.

- (3) 기업이 연금보험계약을 매입함으로써 확정급여채무를 정산한 다면, 보험회사는 연금보험계약의 이자율을 결정할 때 해당 확 정급여채무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지급기일에 실질적으로 상쇄 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참조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사 용한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시장가치에 근사하게 측정할 수 있 다. 최종임금기준산정방식의 확정급여제도인 경우 최종임금의 결정이 피보험자의 재량으로 남는바, 어떤 보험회사도 최종임 금결정에 대해 보험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로는 연금보험계약을 구매하여 최종임금산정방식의 확정급여 채무를 정산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기업이 최종임 금기준산정방식의 퇴직연금제도가 포함된 사업을 매수 · 매각 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즉, 이 경우에 제공자와 매수자는 퇴직연금채무의 가격을 적절 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참조하여 협상할 것이다.
- (4) 잘 분산된 지분증권 포트폴리오에서도 투자위험은 있게 마련이지만, 증권의 전반적인 가격하락이 있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임금하락으로 반영될 것이다. 종업원은 최종임금기준산정방식의 확정급여제도에 동의함으로써 그 위험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그 위험을 배제한다면 측정상의 체계적 편의(bias)를 초래할 것이다.
- (5) 일부 국가의 전통적인 기금적립관행에서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의 기대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기금적립 시고려사항이 회계처리문제와는 구별되지만 이 접근법이 오랜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접근방법을 고려할때에는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BC133 위험조정할인율에 반대하는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 (1) 부채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자산의 수익률을 참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자산의 수익과 퇴직 전 최종임금 간에 충분히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최종임금기준산정방식의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또 양자간에 외견상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상관관계가 포트폴리오와 확정급여채무 간의 공통된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 연금약정의 변경에서 비롯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 (3) 사망률, 퇴직시기, 신체장애율, 역선택의 변동성과 같은 확정급 여제도와 관련된 위험과 지분증권의 수익 간에 상관관계가 있 다고 볼 수는 없다.
- (4) 불확실한 현금흐름을 갖고 있는 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무위험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오히려 무위험이자율보다도 높다.
- (5) 퇴직 전 최종임금이 자산의 수익과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최종임금도 하락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임금은 하락하 지 않는 경향이 있다.
- (6) 지분증권이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자산이 아니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시장가격이 폭락하더라도이후 반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불합리한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지분증권보유자가 자신의 지분증권을 지금 당장매각한다면 장기적 관점의 추가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서 얻지 못한다. 비록 오랜 기간동안 자산의 수익과퇴직 전 최종임금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실제 기일이 도래하였을 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따라서 기업이 기금을 지분증권으로 운용한다면 퇴직급여의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지분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위험을 부담

하게 된다. 또 지분증권의 실질수익이 물가상승과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지분증권이 장기적으로도 무위 험수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7) 실제로는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장기기대수익률을 회계기준의 적절한 근거로 삼을 만큼 충분히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즉, 실제로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특성들을 일일이 지정하기 어 렵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대상 기간을 정하기가 어려우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일도 매우 어렵다.
- BC134 IASC는 적절한 자산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신뢰할만한 지표가 된다거나, 신뢰성 있게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었다. 따라서 IASC는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만 반영하고 위험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나아가 할인율에 기업 자신의 신용등급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럴 경우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부채를 더 적게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IASC는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할인율은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이다.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국가에서는 국공채의 수익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BC135 할인율 선택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는 상응하는 만기를 갖는 확 정급여채무에 대해 과거 수년간의 경험자료에 근거한 장기평균수 익률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할 것인지였다. 장기평균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을 지 지하였던 측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나타내었다.
 - (1) 장기적 접근법은 다른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였거나 허용하였던 거래중심의 역사적 원가접근법과 일관될 수 있다.
 - (2)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은 정확성을 추구하는 데 목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확성이 달성되기 어렵고 오히려 과도한 변동성을 초래한다. 이 변동성은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간별 측정을 하면서 예측되는 미래 사건을 정확히 추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만을 나타낼 수도 있다.

- (3) 시장의 연금보험계약가격이나 기대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시 뮬레이션 중 어느 것도 최종임금기준산정방식의 확정급여채무 와 관련된 연금보험계약의 가격을 명확히 결정할 수는 없다.
- (4)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외적립자산을 적절히 구성할 경우 임금상승에 연계되어 상승하는 종업원급여채무에 대해 상당히 효과적인 위험회피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측정일현재 채무에 영향을 주는 임금상승률과 시장이자율이 서로 같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BC136 IASC는 다음의 이유에서 할인율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장수익 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 (1) 효율적 시장가격이 장기평균수익률로 수렴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높고 유통물량이 많은 시장의 가격에는 이용가능한 공시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고, 개별 시장참여자에 의한 장기추세추정치보다는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기 때문이다.
- (2) 당기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배분되는 급여의 원가는 당기의 가격을 반영하여야 한다.
- (3) 미래 예상퇴직급여가 미래 물가상승률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반영하는 미래 예상임금에 따라 정의된다면, 할인율도 현행 시 장이자율(명목기준)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 행 시장이자율은 미래 물가상승률에 대해 현행 시장에서 형성 된 기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 (4) 사외적립자산을 현행가치(즉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확정급여 채무도 현행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이는 측정기준의 차이

로 인해 관련없는 변동성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BC137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한다고 해서 장기채무를 할인하는 데까지 단기할인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신 IAS 19에서는 할인율에 확정급여채무의 예상만기와 일관된 예상 만기를 갖는 회사채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장수익률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2009년 공개초안)

BC138 IAS 19의 할인율 규정으로 인해, 부담하는 확정급여채무가 유사함 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우량회사채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 위치한 기업이 두터운 우량회사채 시장을 가지는 인근 국가에 위치한 기업보다 유의적으로 더 큰 확정급여채무를 보고할 수도 있다.

BC139 이 회계논제를 다루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IASB는 두터운 우량 회사채 시장이 없는 경우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는 공개초안 '종업원급여에 대한 할인율(Discount Rate for Employee Benefits)'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는 제안된 개정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검토의견을 고려한 후에 IASB는이 제안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근본적인 검토의 맥락에서만 할인율과 관련된 논제를 다루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13(2) 참조).

보험수리적 가정: 임금, 급여, 의료원가

BC140 일부는 다음의 이유로, 미래의 임금, 급여 및 의료원가 인상이 실제로 부여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추정치가 자산과 부채의 측정

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미래 인상은 미래 사건이다.
- (2) 미래 인상에 대한 추정치가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BC141 IASC는 위의 가정이 채무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일정한 기준(예상되는 자원 유출액을 가장 목적적합하게 측정케 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만약 미래 인상이 없다고 가정하였다면 이는 미래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된다. 기업이 미래 변화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IAS 19에서는 측정시 추정미래임금상승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1998년 개정 전 IAS 19 요구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IASC는 미래의료원가인상은 그 추정치를 채무측정에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히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험수리적 가정: 사망률(2011년 개정)

BC142 2011년 개정에서는 확정급여채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사망률 가정이 제도가입자의 재직 중과 퇴직 이후에 걸쳐 기대되는 사망률에 대한 현행 추정치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며,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궁극적인 원가를 반영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대되는 사망률의 변동(예: 예상 사망률의 개선)에 대하여 현행 사망률표가 조정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보험수리적 가정: 위험공유(2011년 개정)

BC143 2011년 개정에서는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 (1) 종업원과 제삼자의 기여금의 영향을 확정급여원가, 확정급여채 무의 현재가치 및 보상권의 측정치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 (2) IAS 19 문단 70에 따라 근무기간에 배분되는 급여는 근무용역 과 관련된 종업원기여금의 효과를 차감한 금액이다.6)
- (3) 급여의 연동 또는 변동이 자동적인지 또는 기업, 종업원 또는 제삼자(예: 제도의 기금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그러한 조건부 연동을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이 제한을 반영하여야 한다.
- BC144 일부 확정급여제도는 초과적립의 효익 및 과소적립의 원가를 기업과 제도참여자가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제도에 충분한 자산이 있는 급여를 제공한다. 그러한 특성에 따라 기업과 제도참여자는 위험을 공유하며,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에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위험공유와 조건부 연동 특성의 효과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이 제안에 동의하였다.
- BC145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확정급여와 확정기여의 기존 구분 및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현재의 측정모형 때문에 이 제안으로 위험특성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IASB가 기여금기준약정을 포함하는 확정기여제도에서 확

^{6) &#}x27;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2013년 11월 발표)은 근무용역에 연계된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이 근무기간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여금액이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한다. (문단 BC150G~BC150Q 참조)

정급여제도에 이르는 모든 범위의 제도를 다루기 위하여 분류와 측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는 위험공유 특성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현행 모형이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에 기초하며, 따라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감소시키는 위험공유특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BC146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다음을 보다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1) 조건부 연동(문단 BC147~BC149)
 - (2) 그 밖의 사항(문단 BC150)

조건부 연동

- BC147 일부 확정급여제도는 조건부 연동(예: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 따른 추가적인 급여 등)을 포함한다. 문단 8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은 그러한 조건부 연동의 미래 영향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 19에서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때문에 회계불일치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조건부 연동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포함되지만 사외적립자산의 측정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는 조건부 연동의 영향은 사외적립자산의 측정치에 포함되어에 그 기초수익이 포함되기 전에는 확정급여채무 측정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BC148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문단 7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투자 성과(또는 급여가 연동되는 그 밖의 기준)에 대한 현행 가정에 기초하여 급여를 추정하는 것은 확정급여채무 측정의 목적인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추정하는 것과 일관된다. IASB는 또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와 일관된 방식으로 조건부 연동의 효과를 포착하기 위하여 옵션가격결정기법의 사용 등 측정접근법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대안을 기각하였다. IASB는 조건부 연동이 있는 급여의 측정에 관한 우려는, 2008년 토론서에서 논의된 기여금기준약정의 측정과 관련된 우려와 유사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우려를 다루는 것은 2011년 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

BC149 일부 의견제출자는 조건부 연동의 영향을 결정할 때 기업이 미래의 사외적립상태를 예측하여야 하며(기여율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외적립수준이 미래의 급여와 기여금 요구사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늠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2010년 공개초안을 해석하였다. 이 의견제출자는 사외적립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유의적인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외적립상태에 따른 조건부 연동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채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믿는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문단 80에 따라 재무적 가정이 결정되는 방법과 일관되게, 제도의 현재 사외적립상태에 기초하여 발생가능한 급여의조건부 연동을 추정하여야 한다. 문단 80에서는 재무적 가정이 확정급여채무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의 명확화

BC150 IASB는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을 고려하여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1) 근무용역과 관련된 종업원의 기여금을 문단 70에 따라 급여계 산방식을 사용하거나 정액법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배분해야 한다[즉 문단 70에 따라 근무기간 후반의 근무용역에 중요하게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부여하는지의 검토(back-end loading test)와 배분은 순급여에 기초해야 한다].7 이는 종업원 기여금 은 부(-)의 급여로 볼 수 있다는 IASB의 견해를 반영한다. 이뿐만 아니라 IASB는 미래종업원기여금의 일부가 확정급여채무에 포함되는 임금인상과 연관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여금의 일부와 임금인상에 같은 배분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불일치를 피할 수 있다.

- (2) 투입변수의 변동이 급여규약의 변동인지(과거근무원가를 발생시킴) 또는 가정의 변동인지(보험수리적 손실을 발생시킴)를 결정할 때 기업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러한 명확화는 2011년 개정 전 IAS 19에 존재하였고 의료원가에 대한 종업원기여금을 다루는 방법을 설명한 지침과 일관된다.
- (3)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급여가 기업, 제도관리자 또는 종업원 중 누구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는지 에 관계없이, 급여수준에 대한 변동을 요구 또는 허용하거나 그 밖의 급여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규약의 영향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
- (4)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은 기업의 기여금납부를 제한하는 효과를 반영한다(문단 91 참조).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목적과 일관된다. IASB는 그러한 제한의 영향은 제도의 예상 존속 기간과 기업의 예상 존속 기 간 중 짧은 기간동안 결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의 기간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 제한을 결정하는 것은 제한의 효과가 일시적인지 또는 영구적인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 예를 들면, 근무원가는 당기의 최대기여금액보다 클 수 있으나, 후속 기간에 근무원가가 기여금액보다 작을 경우, 제 한의 효과는 요구되는 총기여금에 대한 제한이라기보다는 당 기의 기여금을 이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5) 위험공유와 관련된 개정은 특정 관계에 국한하고자 한 것은

^{7) &#}x27;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2013년 11월 발표)은 근무용역에 연계된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이 근무기간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여금액이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한다. (문단 BC150G~BC150Q 참조)

아니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일부 제도의 위험이 종업원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예: 정부)와도 공유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기업은 확정급여채무를 결정할 때 그러한 약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러한 기여금이 문단 116~119에서 설명된 보상인지(따라서 이러한 기여금이 보상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또는 확정급여채무의 감소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수리적 가정: 할인율(지역시장)

- BC150A IASB는 같은 통화를 함께 사용하는 지역시장(예: 유로존)에서 할 인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IAS 19의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문제는 일부에서 우량회사채의 범주가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견해가 있는 이유는 IAS 19의 문단 83에서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국가 안에 없는 경우에,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BC150B IASB는 IAS 19의 문단 83에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와 기간이 퇴직급여채무의 통화와 추정 지급시기와 일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 BC150C IASB는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를 통화 수준에서 평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 19의 문단 83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 다.
- BC150D 2013년 12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2012-2014 연차개선'('2013 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할인율을 정 하여 퇴직급여채무에 적용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IASB에 제안하였다. IASB는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가 할인율과 관련하여 넓은 범위의 개정 가능성을 이미 논의한 바 있는데, 몇 번의 회의 후에 퇴직급여채무에 적용할 할인율의 결정은 IASB의 할인율에 관한 연구과제에서 다루도록 건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50E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우량회사 채의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시장 또는 지역시장에서 영업 하는 기업이 자신의 국가시장 또는 지역시장에서 발행된 우량회사채만을 이용하는 것을 개정안이 금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IASB에 제안하였다. IASB는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는 국가시장이나 지역시장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통화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이 명확히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개정안은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우량회사채의 범주에 같은 통화로 발행된 모든 우량회사채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BC150F 2013년 연차개선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지역시장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그 지역시장의 일부가 아니면서도 어떤 통화를 공식적 또는 법률적 통화로 채택한국가에 개정안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강세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에 따라 결정되는 할인율이 퇴직급여원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물가상승률(그리고 다른가정)과 모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러한 국가에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ASB는 이러한 비정상적결과가 제기된 사실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하였다. 오히려 같은 통화를 함께 사용하는 국가시장, 주시장, 지역시장에서도 한 지역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지역의 물가상승률과 다를 수있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개정에 따른 그러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을 것

이다. IASB는 이번 개정은 제안을 할 때부터 이미 고려했던 지엽 적인 상황 때문에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되는 개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 2013년 개정

BC150G 2012년 해석위원회는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에 대해 IAS 19의 문단 93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C150H 해석위원회는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 중 특정 형태의 경우 퇴직급여원가를 감소시키는 대신에 단기종 업원급여원가를 감소시켜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93의 문구가 근무용역과 연계된 모든 종업원 기여금은 근무원가의 감소(예: 부(-)의 급여)로 근무기간에 배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종업원 기여금이 지급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제공되는 종업원의 근무에만 연계되는 종업원 기여금(예: 전체 재직기간에 걸쳐 임금의 일정 비율인 기여금)은 단기종업원급여원가의 감소(예: 임금의 감소)로 볼수도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ASB가 그러한 기여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IAS 19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BC150I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확정급여제도의 규약에 의한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은 단기종업원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그러한 기여금은 근무원가의 차감(즉, 부(-)의급여)으로 근무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순급여를 근무기간에 배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산 상의 복잡성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단순한 형태의 기여제도에 배분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소요되

는 원가는 효익을 초과한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따라 문단 93에 실무적 간편법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BC150J 따라서, 2013년 3월 IASB는 IAS 19의 문단 93을 개정하는 공개초 안 ED/2013/4 '확정급여제도: 종업원 기여금'('ED/2013/4')을 발표하였다. ED/2013/4에서 IASB는 종업원이나 제3자의 일부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부(-)의 급여로 배분하는 것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대신 이러한 기여금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만 연계된 경우라면 지급해야 하는 그 기간의 근무원가의 차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예로는 종업원의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임금의 일정 비율에 기초하는 기여금이 될 수 있다. 한편, 종업원이 근무기간의 후반에 임금의 더 높은 비율만큼 기여해야 한다면, 그러한 기여금은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만 연계된 것은 아니다.

ED/2013/4를 개발하면서, IASB는 문단 93이 우선 근무용역과 관 BC150K 런된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은 문단 70에 따라 근무기간에 부(-)의 급여로 배분된다고 기술한 다음, 순급여는 문단 70에 따라 배분된다고 기술한 것에 주목하였다. 부(-)의 급여와 순급여 모두 에 대한 언급은 문단 70에 따라 근무기간 후반의 근무용역에 중 요하게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부여하는지의 검토(back-end loading test)가 순급여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 또는 총급여와 부(-)의 급여 각각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혼동을 일으 킬 수 있다. IASB는 순급여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복잡성 을 더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총급여와 부(-)의 급여에 대해 각각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와 다를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당기의 근무용역에만 연계된 것이 아닌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 금은 문단 70에 따라 총급여를 배분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문단 93에 특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BC150L 총 63명이 ED/2013/4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제안된 개정내용을 지지하였으나, 그 중 절반 정도는 실무적 간편법의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화나 적용지침 또는 사례의 추가를 요청하였다.

BC150M 일부 응답자는 기여금액이 근무연수 대신에 종업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면(연령에 기초한 기여금),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될 수 있는 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ED/2013/4에서 제안된 실무적 간편법의 예들이 두 가지 기준, 즉 기여금이 임금의 고정 비율인지와 근무연수와 독립적인지를 암시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BC150N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두 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는지 또는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지를 고려하였다. 일부 상황에서 연령에 기초한 기여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과 유사한데, 이는 두 가지 기여금 산정식이 모두시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령에 기초한 기여금은 근무연수와 독립적이다. 예를 들어, 제도규약이 처음 10년 동안급여의 4%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요구하고, 그 후에는 6%를 요구할 경우, 6%로 증가하는 것은 당기 근무용역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기여비율 변동의 전제조건인 처음 10년의 근무와도 관련된 것이다. 만약, 제도규약이 30세 이하인 경우 4%, 30세 초과인 경우 6%의 종업원기여금을 요구한다면, 종업원은 근무기간과는 관계없이 4% 또는 6%를 기여해야 할 것이다. 즉, 매년 지급되는 기여금은 과거의 근무용역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BC150O 따라서 IASB는 기여금액이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경우에만 실무적 간편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이 원칙은 실무적 간편법이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일정 비율과 대비되는 형태)인 기여금을 포함하는 기여약정의 다른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C150P ED/2013/4의 한 응답자는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기여금의 누적가치가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 모두에서 차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IASB는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는 지급된 기여금액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지급된 기여금이 순원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른 근무기간에 배분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채무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BC150Q 개정과정에서 IASB는 문단 94가 종업원이나 제3자 기여금의 변동에 관련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 문단의 요구사항은 총급여에 대해 문단 70에서 요구되는 배분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배분되는 기여금에 적용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IASB는 이 문단에서 요구사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94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축소와 정산

BC151 1998년 개정 전 IAS 19에 따르면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이익은 축소나 정산이 실제로 일어날 때 인식하였지만, 손실은 축소나 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만 해도 인식하였다. IASC는 확정급여제도를 축소하거나 정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만으로는 손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8년에 개정된 IAS 19에서는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축소나 정산이 실제로 일어날 때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축소와 정산의 인식에 관한 지침은 E59에서 제안한 내용에 맞추어마련되었다.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1년 개정

- BC152 2011년 개정에서는 (1)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문단 BC154~BC159), (2)과거근무원가, 축소 및 정산의 정의를 개정한다(문단 BC160~BC163).
- BC153 IASB는 제도 개정과 정산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그 밖의 접근법을 고려하였다(문단 BC164~BC173).

즉시 인식: 과거근무원가

- BC154 2011년 개정에서는 과거근무원가를 발생시키는 제도 개정이 일어 난 시기에 과거근무원가를 가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개정 전 IAS 19에서는 가득된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미가득된 과거근무원가는 가득기간동안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다.
- BC155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가득되지 아니한 과거근무원가를 즉시에 인식하는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제안에 반대하였다.
 - (1) 대부분의 제도 개정은 미래 기간에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작된다. 더욱이 IAS 19의 원칙은 종업원급여비용을 종업원이 급여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무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다. 가득되지 아니한 과거근무원가를 잔여가득기간동안 가득될 때까지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과 보다 일관될 것이다.
 - (2) 가득되지 아니한 과거근무원가를 가득기간동안 인식하는 것은 IFRS 2에서 IASB가 최선의 개념적인 답변이라고 판단하여 채택하였던 것과 일관될 것이다.
 - (3) 이 제안은 자의적 선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미가득 과거근

무원가가 즉시 인식된다면 기업은 급여의 금액과 시기를 변동 시키지 아니하고 과거근무기간을 변동시킴으로써 인식되는 비 용의 총액을 변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 BC156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득된 과거근무원가와 미가득 과거 근무원가를 모두 즉시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확정하였다.
 - (1) IAS 19에서는 급여가 미래 근무를 조건으로 할지라도 급여 계산방식에 따라 급여를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득되지 아니한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는 것은 IAS 19가문단 72에서 채무로 처리하는 미가득 당기근무원가를 인식하는 것과 일관된다. IASB는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IFRS 2와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IFRS 2와의 일관성보다는 IAS 19 내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2) IASB는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함으로써 급여계산방식의 선택을 통해 회계상 자의적 선택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가득기간 동안 인식하는 것 또한 회계상 자의적 선택이 가능할 수있다.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가득기간동안 인식하는 경우 가득조건과 가득기간에 따른 금액을 변동시킴으로써 인식되는 총비용을 변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가득 급여를 근무기간에 배분하는 모든 접근법은 자의적이다. 그러나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는 것은 문단 72와 미가득 당기근무원가의인식과 일관된다.
- BC157 2011년 개정 이전에는 기업이 공식적으로 인원감축을 확약할 때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의 유의적인 감소로 인해 일어나는 축소를 인식하였다. 2011년 개정에서는 제도 개정과 축소가 일어 났을 때 이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BC158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제도 개정과 축소의 맥락에서 '일어난다'의 의미가 변화가 발표되는 시점인지, 실행되는 시점인지, 변화가 유효한 시점인지를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도 개정과 축소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즉 정산, 해고급여 또는 구조조정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은 경우), 제도 개정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인식시기는 개별적인 사실과 상황 및 이들이 문단 61과 62의 의제의무규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IASB는 제도 개정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2011년 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BC159 2011년 개정은 또한 (1)'공식적으로 확약된' 해고급여에 대한 인식 기준을 삭제하였고(문단 BC258~BC260), (2)관련되는 제도 개정, 축소, 해고급여 및 구조조정원가의 인식을 연계시켰다(문단 BC26 2~BC268).

과거근무원가, 축소 및 정산의 정의

BC160 IASB는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함으로써 과거근무원가 와 축소에 대한 회계처리가 같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2011년 개정은 제도 개정과 축소의 정의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전 IAS 19는 제도의 축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제도의 축소가 일어나는 때는 다음과 같다.

- (1) 확정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한 때
- (2) 현직 종업원의 미래근무용역의 유의적 요소에 대해 더 이상 퇴직급여를 부여하지 않거나 적게 퇴직급여를 부여하도록 확 정급여제도의 규약을 개정한 때

- BC161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는 가득기간동안 인식되었기 때문에 2011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과거근무원가와 축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에서는 미가득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근무원가와 축소의 정의중 두 번째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IASB는 이 정의중 두 번째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과거근무원가는 제도 개정에 따라 과거근무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할 것이고 즉시 인식될 것이다.
- BC162 IASB는 축소의 정의 중 첫 번째 부분을 유지하였다. 이 정의는 유의적인 수의 종업원을 감소시키는 제도의 폐쇄(제도의 개정과 가까움)와 추정종업원이직률(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가까움)의 증가를 구분한다. 따라서 종업원 수의 감소가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제도 개정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이를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인지 아니면 제도 개정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IAS 19에서는 이제 제도 개정과 축소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축소로 인한 손익을 과거근무원가의 한 형태로 다루고 있다.
- BC163 2011년 개정은 제도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급여의 지급이 정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도규약(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같이 급여지급의 성격에 관한 선택권을 제도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규약을 포함하는)에 명시된 급여의 지급은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추정되는 급여지급액과 실제 급여지급의 차이가 보험수리적손익이다.

제도 개정과 정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고려된 그 밖의 대안

- BC164 IASB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대안을 고려하였다.
 - (1) 2010년 공개초안상 제안의 확정: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과거

근무원가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근무원가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고,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재측정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문단 BC165~BC170).

(2) 재측정요소 접근법: 과거근무원가와 축소나 정산으로 인한 손 익을 재측정요소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문단 BC171~BC173).

고려된 그 밖의 대안: 2010년 공개초안상 제안의 확정

- BC165 2010년 공개초안을 개발할 때 IASB의 견해는 거래일에 재측정된 확정급여채무와 정산금액의 차이 때문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다음 사항을 제안하였다.
 - (1)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재측정요소에 포함됨으로써 보험수리적 손익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2) 제도 개정과 축소의 효과는 근무원가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
- BC166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과거근무원가와 축소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경상적인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산의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 (1) 정산과 축소 및 제도 개정의 정의가 일부 중복되며 이 거래들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손익을 이 거래들에 배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정산, 축소 및 제도 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요구하게 되면, 실무적 어려움, 실무관행의 다양성 및 거래설계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 (2) 제삼자와의 정산은 제삼자의 수익마진과 같은 추가적인 원가를 수반하며, 이러한 추가적 원가를 일으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른 영향은 그 거래가 일어났을 때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한다.

- (3) 부채의 제거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것은 부채의 제거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다른 IFRS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 정산이 당기손익으로 별도 회계처리되는 사건의 결과인 경우,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그 사건과 동일한 위치에 인식되어야 한다.
- (5) 정산은 제도후원자의 '행위'로 인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제도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기업이 할 [때] [제도 개정]이 일어나기 때문에(2010년 공개초안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8)' 과거근무원가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정산의 회계처리에도 적용가능하다.
- BC167 일부는 정산의 정의가 제도 개정, 축소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의 정의와 중복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어떤 거래가 제도를 폐쇄하고 추가적인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없애는 경우, 이 거래는 제도 개정, 축소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의는 상호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확정급여제도의 폐쇄와 관련하여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협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2가지의 견해가 있을수 있다. 하나의 견해는 퇴직일시금이 추가적인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모두 없애기 때문에 확정급여채무의 모든 변동이 정산이라는 것이고, 다른 견해는 미래지급액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상보다 이른 지급 및 퇴직일시금으로 급여를 변환하는 효과는 제도 개정과 축소이며, 지급이 이루어질 때 정산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 BC168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정의가 상호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의 가 중복되는지 또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이들의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각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확정급여원가의 서로 다른 요소

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기업은 이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BC169 IASB는 과거근무원가와 정산(2010년 공개초안에서 비경상적 정산으로 정의되었음)으로 인해 생기는 손익을 근무원가의 일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 항목들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 각각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또한 2011년 IAS 19 개정전 요구사항과 일관되며, 해고급여와 구조조정원가와 같은 그 밖의 관련 거래에서 생기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도일관된다.
- BC170 그러한 접근법에서는 경상적인 급여지급과 정산(즉 2010년 공개초 안에서 정의된 경상적인 정산과 비경상적인 정산)을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근무원가에 포함되고 경상적인 급여지급으로 인한 손익은 재측정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제도 개정과 정산을 구별하지 않는 것보다 경상적인 급여지급과 정산을 구별하는 것을 덜 우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고려된 그 밖의 대안: 재측정요소 접근법

- BC171 일부 의견제출자는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의 영향은 재측정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한 접근법은 과거근무원가, 정산으로 인한 손익 및 보험수리적손익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거래로부터 생기는 손익은 재측정요소에 포함될 것이다.
- BC172 이 의견제출자들은 과거근무원가가 현행근무원가에 비하여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정보를 더 적게 제공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제도 개정의 효과를 재측정요소에 포함하는 것을 정

당화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는 근무원가를 현행근무원가에 한 정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서로 다른 예측가치를 가진 금액은 별도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IASB의 결론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더 나아가 그러한 접근법은 표시를 위하여 과거근무 원가, 정산의 효과 및 보험수리적손익을 구별하도록 하는 요구사 항을 제거할 것이다.

BC173 그러나 IASB는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이전 기간의 거래의 재측정이 아니고, 새로운 거래의 결과로서 생기며, 따라서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가적으로 제도 개정과 정산은 관련되는 구조조정 또는 해고급여의 일부로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 BC173A 문단 99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있을 때,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도록 요구한다. 개정 내용은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할 때 다음 (1)과 (2)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1)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하여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결정
 - (2) 재측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기초로 하여 잔여 연차보고 기간에 대한 순이자를 결정
- BC173B IASB는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결정할 때 갱신된 가정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갱신된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높

인다고 보았다.

BC173C IASB는 기준서의 개정으로 문단 99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의 재측정 여부와 재측정 시기가 변경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기업은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때 문단 99를 적용한다.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에 따라 문단 9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이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개정 내용은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 가와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효과가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기업은 과거근무원 가나 정산 손익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갱신된 가정을 사용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BC173D IASB는 기준서의 개정으로 문단 99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의 재측정 여부와 재측정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러한 결론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문단 99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기준서 개정의 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문단 BC173B 참조).

BC173E IASB는 심의과정에서 문단 99의 요구사항을 제도별로 적용하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 국가별이나 기업별로는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문단 57에서 이미 중요한 확정급여제도 별로 회계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173F IASB는 IAS 34의 문단 B9에서 논의된 '유의적인 시장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룰지도 고려하였다.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은 일반적으로 경영진의 결정에 기인하므로 경영진의 결정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유의적인 시장 변동과는 다르다. IASB는 '유의적인 시장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번 개정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내용은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만을 다룬다.

자산인식상한효과 요구사항

BC173G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에 대한 회계처리로 초과적립액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산인식상한효과가 변동될 수 있다. IASB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101A를 추가하였다.

BC173H IASB는 이 개정 내용이 IAS 19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며 이를 명확히 한다고 생각한다.

- (1) 이 개정 내용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이 재분류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의 인식이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는 것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 (2)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면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인식하 게 되어 이전에 인식하지 않았던 초과적립액이 감소하는 결과 가 나타날 수 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거래를 충실히 표현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이나 정산을 통해 기업이 사실 상 초과적립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나, 초과적립액이 기업 에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 (3)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면 기업이 정산 직전에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였는지, 또는 정산의 일부로 종업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사외적립자산

- BC174 IAS 19는 확정급여채무에서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확정급여부채 또는 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이 기준서 문단 8 참조). IASC는 이 회계처리는 이미 실무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었으며 아마전세계적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IASC는 사외적립자산이 기업의 채무를 감소시키고(그러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아님) 그 결과 하나의 순부채만 생긴다고 본다. 비록 순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하나의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개별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것과 다르지만, IASC는 사외적립자산의정의가 IAS 32%에서 정하고 있는 상계요건과 일관되어야 한다고결정하였다. IAS 32에서는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여 대차대조표에 순금액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1) 인식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 (2) 그리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 BC175 1998년 개정된 IAS 19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체 (또는 기금)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불능 금융상품은 제외)이 사외적립자산이라고 정의하였다.
 - (1) 실체가 보고기업과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 (2) 기금의 자산은 단지 종업원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하고, 기업의 채권자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기업에게 환급될 수도 없다(또는 기금의 잔여자산이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충분할 경우에만 기업에게 환급될 수 있다).

^{8) 2005}년에 IASB는 IAS 32를 개정하여 그 명칭을 '금융상품: 표시(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로 바꾸었다.

- (3) 기금에 충분한 자산이 있다면 기업이 관련 종업원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다.
- BC176 1998년에 IAS 19를 공표하면서 IASC는 사외적립자산의 정의에 네 번째 조건(기업이 기금을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추가로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ASC는 기금자산이 기업의 채무를 감소시키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통제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BC177 E54의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IASC는 사외적립자산의 정의에서 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불능 금융상품이 제외되도록 정의를 수정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상대로 양도불능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부채를 감소시키고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외적립자산: 2000년 개정

- BC178 1999년에 IASC는 위 문단 BC175에서 언급한 정의 중 (1)과 (2)를 충족하지만 여전히 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건 (3)은 충족하지 못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회계처리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의 과제에 착수하였다. 2000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그러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 BC179 IASC는 그러한 기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 (1) 순액접근법: 총채무에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공정가 치를 차감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 (2) 총액접근법: 총채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기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 BC180 순액접근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였다.
 - (1) 총액표시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정보이용자를 오도하게 될 것이다.
 - (개) 위 문단 BC175의 정의 중 조건 (1)과 (2)가 충족되면 기업 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 (L) 설사 기업이 여전히 급여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할 법적의 무를 지고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이 그런 것은 아니다.
 - (2) 총액표시를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순액표시가 허용되는 현행의 회계관행을 불필요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미 이 기준서 문단 120(3)에서 총금액을 주석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도, 총액 표시까지 요구하면 정보이용자에게 주는 효익은 제한적인 데 반해 기준서만 과도하게 복잡해 질 것이다.
 - (3) 총액접근법을 사용하면 2011년 IAS 19 개정 이전에 존재하였 던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10% 범위와의 상호관계 때문에 측정 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 (4) 순액접근법은 IAS 37 문단 29에서 정하고 있는 연대부채 회계 처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채무의 일부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채무의 일부가 다른 당사자에 의해 충족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우발부채로 회계처리한다.

BC181 총액접근법을 지지하는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위 문단 BC174에서는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설명은 상계가 적절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8년의 정의중 (3)은 상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산이 정의중 (1)과 (2)를 충족하지만 (3)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식과측정 목적으로는 사외적립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지만 대차대조표 본문에는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 (2) 조건 (3)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상계를 허용한다면, IAS 32에서 명시적으로 상계가 부적절하다는 '실질상환'이나 그 밖의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도 순액표시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다. IASC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실질상환'을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는데(IAS 399)의 적용지침 문단 AG59 참조)10),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할 만한 명백한 이유는 없었다. 이 경우 기업은 부채로 인식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으며, 기업이 제도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자산으로 인식해야할 경제적 효익의 원천이다. 자산과 부채의 상계는 IAS 32 문단 42의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될 것이다.
- (3) IASC는 IAS 37에서 비록 기존의 일반 회계관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당부채와 관련된 보상권을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종업원급여에 대해서만 이와 다른 회계처리를 요구할 어떠한 개념적 이유도 없다.
- (4) 일부는 총액접근법에 따르면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산도 인식해야 한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이 견해가 틀렸다고 본 다. 총액접근법에서는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산을 보유하 고 있는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5) 1998년에 채택된 정의를 충족하는 사외적립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도의 경우, 종업원은 일차적으로 기금에 대해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기금에 자산이 충분히 있다면 기업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한다. 일부는 종업원이 일차적으로 기금에 대해 급여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단순한 형식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채무의 실질까지 바꾸는 것이라고 본다.

⁹⁾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IAS 39의 문단 AG59의 요구사항을 IFRS 9의 문단 B3.3.3으로 재배치하였다

^{10)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일부 요구사항을 개정하고 이를 IFRS 9 '금 융상품'에 재배치하였다. IAS 39 문단 AG59의 요구사항은 IFRS 9의 문단 B3.3.3으로 재배치되 었다.

(6) SIC 12¹¹⁾에 따르면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통제하고 또 연결해야 하는 특수목적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결해야 할 수있다. IAS 19의 상계요건이 다른 국제회계기준의 상계요건과일관되었기 때문에,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퇴직연금제도를 연결해야 하는지 여부는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조건 (3)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산을 관련 급여채무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면제도를 연결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해 질수 있다.

BC182 일부는 기업이 급여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도 그 의무가 실무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보인다면 순액접근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ASC는 이와 관련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BC183 또 IASC는 영국 재무보고기준 제5호(FRS 5) '거래실질의 보고 (Reporting the Substance of Transactions)'에서 '비소구금융'에 대해 요구하였던 '연계표시'의 채택 여부를 고려하였다. FRS 5에 따르면 대차대조표 본문에 해당 자산의 총액을 표시하고 그 금액에서 상환청구권이 없는 관련 차입금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한다. 이접근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일반적인 상계요건을 훼손하지 않고도 관련 자산과 부채 사이의 밀접한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주장하였다. 연계표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IASC가 과거에 사용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대차대조표표시를 낳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IASC는 연계표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184 IASC는 자산의 용도에 제약(보고기업의 파산 시 적용되는 제약

¹¹⁾ SIC 12는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해 대체되었다. IFRS 10이 모든 유형의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특정 회계지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포함)이 가해져 종업원급여만을 지급하거나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순액표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C는 위 문단 BC175에서 언급한 사외적립자산의 정의를 다음의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 (1) 기업의 채권자는 보고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 (2) 종업원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순액표시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건 (3)을 삭제한다. 또 기업이 장기종업원급여를 지급한 데 대해 기금이 보상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조건 (2)를 수정한다.
- BC185 IASC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순액으로 표시하면 IAS 39¹²)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제거요건 및 IAS 32에서 정하고 있는 상계요건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C는 자산의 용도에 제약이 있는 것만으로도 종업원급여채무와 충분히 밀접한 연계성을 갖게 하므로,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있을지라도 총액표시보다는 순액표시가 더 목적적합하다고 본다.
- BC186 IASC는 그러한 제약이 종업원급여제도에만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IAS 32와 IAS 39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다른 부채에까지 순액표시를 허용할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새 정의에서 조건(1)은 기금의 존재이유를 참조하고 있다. IASC는 이러한 종류의자의적 제약이, 다른 경우에까지 부당하게 확장하여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IASC의 일반적 상계요건에 대해 실용적 예외를 허용하는 유일한 실무적 방안이라고 보았다.

BC187 어떤 국가의 제도에서는, 기업이 별도의 기금에서 종업원급여를

¹²⁾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19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보상받을 자격을 갖지만, 한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미루거나 보상금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일부는 이러한 재량적 요소 때문에 급여와 보상 사이의 연계성이 약화되어 순액표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사외적립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총액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IASC는 그러한 경우에도 급여와 보상 사이의 연계성이 충분히 강하였으므로 순액표시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C188 IASC는 2000년 7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제67호(E67) '연금제도자산 (Pension Plan Assets)'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정의를 확장하는 제안을 하였다. E67에 대한 39명의 의견제출자 중 대다수가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BC189 E67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일부는 정의를 더 확장하여, E67이 제안한 수정된 정의에 맞는 사외적립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과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는 특정 보험계약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IASC는 사외적립자산의 정의를 확장하여 다른 사외적립자산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보험계약(현행IAS 19에서는 적격보험계약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2000년 10월에 IASC가 의결한 개정 IAS 19에 이 결정을 반영하였다.

BC190 적격보험계약이 반드시 IFRS 4¹³)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일 필요 는 없다.

사외적립자산: 측정

BC191 1998년도 개정 전 IAS 19에서는 사외적립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

^{13) 2017}년 5월에 공표된 IFRS 17 '보험계약'은 IFRS 4를 대체하였다.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그 공정가치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¹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산 매각 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는 차감하지 않는 것(즉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은 중간시장가치이다)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제도가 궁극적으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처분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IASC는 E54에서 사외적립자산은 시장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장가치는 국제회계기준 제25호(IAS 25) '투자자산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Investments)'¹⁵⁾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정상거래시장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BC192 E54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중 일부는 사외적립자산을 시장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제안이, IAS 2216) 및 IASC의 금융상품 운영위원 회(Financial Instruments Steering Committee)가 1997년 3월에 발표한 토론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에서 제안한 금융자산 측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C는 사외적립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93 일부는 (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보고이익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외적립자산을 일정 기간 (예: 5년)의 공정가치변동을 반영하는 시장관련가치로 측정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ASC는 시장관련가치를

^{14) 2011}년 5월 발표된 IFRS 13에서는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 측정에서 거래원가의 영향을 설명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적용을 다루고 있다.

¹⁵⁾ IAS 25를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과 IAS 40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였다. IFRS 9 '금 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19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¹⁶⁾ IAS 22는 2004년에 IFRS 3에 의해 대체되었다.

사용하면 기준이 과도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것이라고 보며,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해 '범위' 밖의 금액만 이연 인식하는 '범위접근법'을 함께 사용하면 변동성이 커질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수 있었다고 본다.17)

BC194 IASC는 상환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투자자산과 제도의 채무(또는 그 중 특정부분)와 대응되는 투자자산에 대해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IAS 26에 따르면 그러한 투자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보상권: 2000년 개정

BC195 IAS 19 문단 48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험계약을 보유한다면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한다. 2000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이러한 보험계약의 측정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보험계약상 기업의 권리는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는 IAS 39¹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IAS 39는 IAS 19가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제도상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AS 19 문단 46~49에서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구분하면서 보험에 가입된 급여를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 논의에서 측정은 다루지 않는다.

BC196 사외적립자산의 정의를 재검토하면서(문단 BC178~BC190 참조), IASC는 종업원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회계처리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0년에 채택된 개정 정의에 따르더라도 적격보험계약(2000년에 개정된 IAS 19의 정의에 따른 것임)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사외적

^{17) 2011}년 개정에서는 IAS 19의 10%의 범위를 삭제하였다.

¹⁸⁾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19가 공표되었을 때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립자산이 될 수 없다.

BC197 2000년에 IASC는 그러한 보험계약에서의 보상권에 대해 인식과 측정 요건을 신설하였다(문단 116~119 참조). IASC는 IAS 37의 문단 53~58에 근거하여 보상권 회계처리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IAS 19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한 보상권을 관련 채무에서 차감하지 말고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그 외의 다른 모든 면에서는(예: 보험수리적손익의 처리), 보상권을 사외적립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요구사항에는 보상권과 관련 채무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BC198 이 기준서 문단 115에 따르면, 제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의 전부나 일부와 금액 및 시기 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보험계약이 사외적립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에서 제도가 갖는 권리는 관련 채무와 같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문단 119에서는 이 결론을 기업 자체의 자산이 되는 보험계약으로 확장하고 있다.

BC199 IAS 37에서는 보상권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충당부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단 116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이 없는데, 이는 애초부터 문단 64의 자산한도가 적용되어 자산인식상한을 초과하는 순확정급여자산이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확정급여제도: 자산과 부채의 표시

BC200 IASC는 퇴직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중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의 구분 여부를 특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분이 때때로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원가의 표시(2011년 개정)

BC201 2011년 개정에서는 근무원가요소와 순이자요소를 당기손익에 표시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대신, 2011년 개정 전 IAS 19와 일관되게, IAS 1의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BC202 IASB는 다음도 고려하였다.

- (1)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것처럼, 순이자요소를 IAS 1의 금융원가 별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가 이 접근법을 채택하였더라면 순이자요소가 수익을 나타낼때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IAS 1에서 금융수익이 아니라 금융원가만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IASB는 수익인식, 보험계약, 리스와 같은 다른 과제에서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금액을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정규절차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IASB는 이는 과제의 범위를 벗어날 것이며, 재무제표 과제의 일부로서 손익과기타손익포괄계산서의 표시의 측면을 보다 광범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2) 순이자요소를 별도 항목으로 요구하거나 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결합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IAS 1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IASB는 비록 이 금액이 많은 기업들에게 중요할 것이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퇴직급여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업이 연금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충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IAS 1은 성과보고서에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IASB는 기업이 기능별로 비용을 표시하는 경우 의무적인 별도 항목을 IAS 1에 추가하는 것의 의미를 고려하여야 했을 것이다. IASB는 이는 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론을 내렸다.

확정급여제도: 공시(2011년 개정)

BC203 2011년 개정은 다음의 우려 때문에 공시요구사항을 갱신하였다.

- (1) 이전 판의 IAS 19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부채와 자산이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 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
- (2) 많은 재무제표에서 확정급여제도의 관한 공시의 양으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모호하게 되어 이해가능성과 유용성이 감소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많은 국가에서 매우 다양 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BC204 2011년 개정된 공시는 다음과 관련된다.

- (1) 공시 목적(문단 BC212~BC214)
- (2)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재무제표의 금액(문단 BC215~문단 BC228)
- (3)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문단 BC229~BC243)
- (4)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문단 BC245~BC252)

BC205 문단 BC244에서는 고려되었으나 기각된 공시사항을 논의한다.

BC206 IASB는 공시요구사항을 검토할 때 다음을 고려하였다.

- (1) 토론서와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 (2) 유럽선행회계활동(Pro-active Accounting Activities in Europe, PAAinE)의 토론서 '연금재무보고(The Financial Reporting of Pensions)', ASB의 보고서 '퇴직급여: 공시(Retirement Benefits Disclosures)', FASB의 스태프 의견서 제132(R)호[FSP FAS 132(R)-1] '퇴직급여제도자산에 관한 기업의 공시(Disclosures about Postretirement Benefit Plan Assets)'를 포함하는 재무보고에 관심이 있는 다른 기구의 발간물
- (3) 원칙중심의 공시체계를 위한 FASB의 투자자기법전문자문위원 회(the Investors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ITAC)의 제

안과 AcSB의 스태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의 정보공시에 관한 토론서 초안

- (4) 세계작성자포럼(Global Preparers' Forum), IASB의 분석가대표 모임(Analyst Representative Group), 종업원급여작업반의 자문
- (5) 다른 IFRS 기준서 (특히 IFRS 7과 IFRS 13)에서 개발된 공시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IAS 19의 공시규정을 갱신할 필요성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공시사항에 대한 IASB의 접근법

BC207 IASB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추구하였다.

- (1) 확정급여제도가 기업의 영업에 중요한 경우 확정급여제도에 관하여 충분한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 (2)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로 인해 모호해지지 않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 BC208 따라서 2011년 개정은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공시의 명시적 목적을 도입하였다.
- BC209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을 개발할 때 IASB는 기업들이 IAS 1의 문단 17(3)과 31의 일반적인 중요성 규정(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는 요구사항을 포함)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중요하지아니한 공시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BC210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는 기업이 공시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판단을 행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우려하였다. 그 이유는다음과 같다.
 - (1) 확정급여제도의 중요한 공시와 중요하지 않은 공시를 구분하기 위한 보편적인 양적 기준이 없다.
 - (2) 중요성 개념은 이분법적인 결정(특정 공시사항을 제공할 것인 지 또는 생략할 것인지의 결정)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만, 공시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시의 정도 또는 다른 공시요구사항과의 전체적인 균형을 결정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BC211 비록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공시 목적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였지만, 그 목적이 광범위한 공시요구사항의 목록을 추가하는 것은 IASB가 의도하였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공시 목적의 충족을 더 강조하는 원칙중심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가 '권장되지만 요구되지 않는' 공시를 통해서 또는 다른 환경에서 공시 목적의 상황별적용을 설명하는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공시 목적을 지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IASB는 기업이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시수준과 각요구사항에 대한 강조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공시 목적의 선택

BC212 IASB는 금융상품과 보험계약에 대한 공시 목적과 동일하게 확정 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목적을 요구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 세 항목은 모두 유사한 위험(부채를 결제하는 궁극적인 원가가 추정 금액과 다를 수도 있는 위험과 부채측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생기는 위험을 포함)을 기업에게 노출시킨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 19의 공시사항이 다른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제공되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IASB는 자산에 대하여 IFRS 7과 IFRS 419에서 요구하는 정보들 중 많은 정보가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여를보여주는 데 불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같다.

^{19) 2017}년 5월에 공표된 IFRS 17 '보험계약'은 IFRS 4를 대체하였다.

- (1) 기업은 사외적립자산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외적 립자산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접근하는 데 제한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외적립자산은 기 업이 직접 보유하는 자산과는 다르다. 따라서 사외적립자산의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에 관한 공시는 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자 산에 관한 공시보다 덜 목적적합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사외적 립자산에 대하여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 (2) 유동성 위험은 기업이 제도에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의 시기와 금액에서 생기며 확정급여채무에 따른 지급을 직접 충족할 요 구에서 생기지 않는다.
- BC213 따라서 IASB는 IAS 19의 공시 목적의 초점을 기업의 재무제표이 용자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두었다. 즉 다음의 정보이다.
 - (1)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
 - (2)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재무제표의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 (3)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관여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정보
- BC214 의견제출자들의 제안에 대응하여 IASB는 공시 목적을 총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기업이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재무제표의 금액

- BC215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에 관한 공시와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재무제표의 금액에 관한 공시는 2011년 개정 전 IAS 19의 공시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다.
 - (1) 위험노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문단 BC216~BC218)

- (2) 인구동대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 손익의 구분(문단 BC219)
- (3) 제도 개정, 축소, 정산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 이를 구분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문단 BC220)
- (4) 요구되는 범주를 나열하는 대신에 사외적립자산의 세분화에 대한 원칙을 기술함(문단 BC221~BC226)
- (5) 공시가 요구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나열하는 대신에 유의적 인 보험수리적 가정의 공시에 대한 원칙을 기술함(문단 BC227 과 BC228)

위험에 대한 노출

- BC216 2011년 개정에서는 기업의 제도에 대한 관여로 인해 생기는 위험에 대한 노출을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시에 대한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 BC217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확정급여제도를 가진 기업이 노출되는 일반적인 위험에 관하여 틀에 박힌 공시가 이루 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에 특정되거나 비일상적인 위험으로 서술적 공시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 BC218 IASB는 중요한 모든 위험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공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그 공시가 특별히 유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제출자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특정되거나 비일상적인 위험으로 공시를 제한하는 것은, 그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고서는 실용적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2011년 개정에서는 기업이 유의적이거나 비일상적이라고 판단하는 위험에 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동태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익

BC219 2011년 IAS 19 개정에서는 인구동태적 가정의 변동에 다른 영향을 제무적 가정의 변동에 따른 영향과 구분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일부 보험수리적 가정 간의 상호관계 특히 재무적 가정 간의 상호관계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자의적일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할인율은 물가상승률과 상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일반적으로 재무적 가정과 인구동태적 가정과의 관련성이 재무적 가정들 간의 상호 관련성보다 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IASB는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 따른 영향과 인구동태적 가정의 변동에 따른 영향과 인구동태적 가정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구별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렵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도 개정, 축소, 정산

BC220 2011년 개정은 제도 개정, 축소, 정산에 대하여 유사한 공시사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IASB는 제도 개정, 축소, 정산이 함께일어날 때 공시를 위해 각각을 구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할것이라는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개정사항에서는 제도 개정, 축소, 정산이 함께 일어날 때 각각을 구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사외적립자산

- BC221 2011년 개정에 따라 사외적립자산의 세분화를 위한 최소한의 범주목록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다음으로 세분화하는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세분화한다.

(2) 사외적립자산의 위험과 유동성 특성을 구분하는 종류로 세분화하다.

BC222 세분화에 대한 원칙을 기술하는 것에 추가하여,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에 따르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는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과 그렇지 아니한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을 최소한 구별할 것이다. 또 이 제안사항에서는 (세분화하는 시점의 IAS 19에 따른 범주에 기초하여) 사외적립자산을 세분화해야 하는 최소한의 범주목록을 특정하였다.

BC223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세분화의 원칙에 동의하였으나 제안된 최소 범주가 항상 그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IASB는 공시원칙 즉, 그 구성 자산들의 위험과 유동성 특성을 구분하는 종류로 세분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 원칙을 지지하면서, 개정사항은 기업이 제도에 포함된 자산의 특성과 위험에 적합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예시적 범주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BC224 또 일부 의견제출자는 시장공시가격이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구분하는 규정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이들은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시장공시가격이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은 광범위한 공시를 유발하지만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항목에 대한 측정의 불확실성의 수준(예: IFRS 13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IASB는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시장공시가격이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세분화하는 제안을 유지하였다.

BC225 이 결론을 내리면서, IASB는 이 세분화 규정은 3가지 수준의 서

열체계에 기초하여 세분화하는 IFRS 13의 요구사항보다는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보았다.

BC226 일부는 기업이 사외적립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에 관하여 세분화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IASB는 사외적립자산에 관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정보는 사용자인 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기업은 사외적립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IASB는 사외적립자산의 경우 IFRS 13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에 관한 공시는 목적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보험수리적 가정

- BC227 2011년 개정에서는 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의 의무적 공시목록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공시하는 요구사항으로 대체한다.
- BC228 IASB는 특정 공시가 모든 경우에 공시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시가 요구되는 특정 가정을 특정하지 않았다. 사실 그러한 공시사항은 지나치게 상세하여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공시가 요구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판단하도록 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대체로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 BC229 2011년 개정은 다음의 측면에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관하여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개선한다.
 - (1) 자산·부채대응전략에 관한 정보(문단 BC230~BC239)

- (2) 민감도분석(문단 BC235~BC239)
- (3) 사외적립과 부채의 만기에 관한 정보(문단 BC240~BC243)

자산부채대응전략

BC230 2011년 개정은 자산·부채대응전략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BC231 201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면서, IASB는 기업이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위험을 완화하는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자산·부채대응전략의 사용이나 장수위험(longevity risk)을 관리하는 연금 또는 장수스왑(longevity swap) 같은 기법의 사용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확정급여제도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이 항목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BC232 자산부채대응전략에 관한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 공시사항을 지지하였다. 반면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이 공시사항이 위험관리 및 투자 전략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범위의 공시의 일부가되어야 하거나 모두 함께 삭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 공시가 위험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보는 이들은 제도로 인해 노출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기술할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위험의 속성을 설명하는 요구사항과 이 공시를 연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자산·부채대응전략의 공시를 지지하지 않았던 의견제출자들은 다음 사항을 우려하였다.

- (1) 전략에 대한 모든 공시는 일반적이고 틀에 박힌 것이다.
- (2) 이용자는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에 관한 공시를 사용하여 보다 나은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즉 그러한 전략의 결과가 서술적 논의보다 더 목적적합하다).
- (3) 이 요구사항은 모든 기업이 자산·부채대응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BC233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자산·부채대응전략에 관한 공시가 일반적 인 투자전략에 관한 공시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산·부채대응전략은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현금유입의 금액과 시기를 확정급여채무에서 생기는 현금유출의 금액과 시기에 대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BC234 이 개정에 따라 제도나 기업에 의하여 사용되는 자산·부채대응전략이 있다면, 그 세부사항을 공시하여야 하지만, 모든 제도나 기업이 자산·부채대응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감도 분석

- BC235 2011년 개정에 따라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 확정급여채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시하는 것을 요구한다.
- BC236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민감도분석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왔다.
- BC237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순확정급여채무(자산)에 관한 민감도분석 이 확정급여채무에 관한 민감도분석보다 더 유용할 것이다. 그러

나 IASB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민감도분석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그 이유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정의 변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복잡하고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BC238 IASB는 2010년 공개초안에서 회계연도 초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가정의 변동에 대응하여 근무원가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근무원가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제안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회계연도 초 가정의 변동이 당기근무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적합하다고 보지 않았다. IASB는 이 견해에 동의하였고 따라서 그 제안을 철회하였다.
- BC239 의견제출자들은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분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 (1) 민감도 공시에서 다양한 보험수리적 가정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시나리오분석이 보다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IASB는 비록 시나리오분석이 보다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이 정보를 산출하는원가가 그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2) 일부 의견제출자는 몇몇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해 일련의 민감 도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였다. 일부는 민감도분석을 할인율과 같이 재무제표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만 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많은 경우에 할인율이 가장 유의적인 가정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제도와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그 밖의 가정이 유의적일 수도 있다. 2010년 공개초안에서 민감도분석은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IASB는 그 제안을 확정하였다.

(3) 일부 의견제출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변동이 주관적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IAS 19에서 양적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비율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을 개선하지만, IASB는 양적 범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를 반영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IASB는 그 시점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관련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기초한 민감도를 요구하는 것은 IFRS 7과 같은 그 밖의 기준서의 민감도 공시요구사항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사외적립과 부채의 만기에 관한 정보

- BC240 2011년 개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 (1) 사외적립약정과 사외적립방침에 관한 설명
 - (2) 다음 연도의 예상기여금액(IAS 19 이전 판에서 승계됨)
 - (3) 가중평균만기를 포함하는 확정급여채무의 만기에 관한 정보
- BC241 확정급여제도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공개초안에서 기업은 기여금을 근무원가와 다르게 하는 요소를 논의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확정급여제도가 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시는 오히려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1) 사외적립약정과 사외적립방침
 - (2) 예상되는 기여 및 급여 지급의 금액과 시기
- BC242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의견제출자들에 의하여 제안되는 공시는 기여금의 변동과 현금유출액 예측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문단 BC244(4)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제안보다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할 것이다.

BC243 따라서 IASB는 대체로 확정급여제도의 부채의 평균적 만기가 도 대하는 시기를 공시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현금흐름의 내역을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IASB는 기업이 확정급여채무의 만기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지만, 그러한 공시원가가 부담이 될 수도 있기때문에 IASB는 기업의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만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개정은 공시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시의 예시로서 만기분석을 포함한다. 평균만기의 공시는 만기분석과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만기에 종속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의 공시와 같은 그 밖의 공시의유용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IASB가 고려하였으나 기각한 그 밖의 공시사항

- BC244 또 IASB는 다음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였다.
 - (1) 보험수리적 가정과 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추가적인 인구동태 정보 없이 인구동태적 가정(예: 사망률)에 관한 공시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업은 그 보험수리적 가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이 그 제안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그 공시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특별히 유용하지 않은 틀에 박힌 설명이 될 것이며 이용자는 인구동태적 가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 연금계리인, 감사인에게 의지한다고 기술하였다. IASB는 이 견해에 동의하였고 그 제안을 철회하였다.
 - (2) 장기종업원급여부채에 대한 대안적 측정치: 2010년 공개초안에 서는 예상되는 급여상승이 제외된 확정급여채무(때때로 누적급 여채무로 언급됨)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많은 의견 제출자들은 그러한 공시의 관련성이 국가나 제도별로 다를 것

- 이며, 이 공시를 단순히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사용자에게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였다. IASB는 이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이 제안을 철회하였다.
- (3) 확정급여채무의 세분화: 일부 의견제출자는 문단 BC244(2)에서 설명하는 공시에 대한 제안 대신에 보다 관련성 있는 공시는 확정급여채무를 가득된 급여, 발생하였으나 가득되지 아니한 급여, 미래임금상승, 그 밖의 의제의무와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 퇴직급여 수령 대기자, 연금수령자에 기인하는 금액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IASB는 일부의견제출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위험특성을 가진요소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확정급여채무를 세분화하는 것이 공시 목적을 보다 잘 충족시킬 것이지만, 특정한 세분화를 요구하면 작성자에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확정급여채무의 세분화는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업이 제공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정보의 예로서 포함된다.
- (4) 기여금을 근무원가와 다르게 할 수 있는 요소: IASB의 관점에 따르면, 초과적립액 또는 과소적립액이 기업 기여금의 크기와 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는 유용하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향후 5개 연도 동안 근무원가와 다른 기여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공시하도록 제안하였다. 많은 의견 제출자들이 기업의 현금흐름은 사외적립약정에 의해 결정되고 IAS 19에 따라 결정되는 근무원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요소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와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IASB는 이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이 제안을 철회하였다.
- (5) 역사적 정보: 2011년 개정에서는 5개 연도 동안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경험조정치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이

전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이 이전의 재무제표에서 이미 이용 가능하였던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따라서 중복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수사용자제도

- BC245 2011년 개정에서는 IAS 19의 이전 판의 공시에 기초하며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였고 다음의 공시를 추가하였다.
 - (1) 제도가 정산되는 경우 합의에 따라 배분되는 과소적립액 또는 초과적립액에 관한 질적 정보 또는 기업이 제도에서 탈퇴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문단 BC247~BC249)
 - (2) 다음 연차기간에 대한 예상기여금
 - (3)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한 참여 정도(문단 BC251, 252)
- BC246 IASB의 관점에 따르면,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큰 위험(예: 제도의 다른 참여자들의 행위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다. 토론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 19의 공시는 기업의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이용자에게 알리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복수사용자제도 참여에 관한 추가적인공시사항을 제안하였고 의견제출자들은 그 제안을 대체로 환영하였다.

탈퇴에 따른 의무

BC247 IAS 37에서는 우발채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IAS 19에서는 우발부채가 기업의 복수사용자제도 참여에서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다. IASB는 그러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2가지 경우, 즉 제도에서의 탈퇴와 제도의 정산을 식별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탈퇴에 따른 부채의 공시는 다음의 이유로 질적 정보로 한정되어야 한다.

- (1) 기업이 제도에서의 탈퇴를 확약하지 않았거나, 제도가 정산되는 것으로 확약되지 않거나, 탈퇴에 따른 부채가 기업과 제도사이에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탈퇴에 따른 부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측정 규정 뿐만 아니라 사용된 가정에 관한 추가적인 주석을 함께 개발하여야만할 것이다.
- (2) 기업이 항상 탈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ASB는 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공시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 (3) 모든 상황에서 모든 기업에 대하여 그 공시가 요구된다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원가는 공시를 부담스럽게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그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 BC248 일부 의견제출자는 서로 다른 제도나 국가에서 탈퇴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가정을 사용하고, 금액이 비교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에 따른 부채의 공시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였다. IASB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제도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금액은, 그 금액이 다른 제도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또는 서로 다른 기준에서 결정되는지에 관계없이, 그 책무를 충실히 나타낸다. 서로 다른 규정에 기초하여 금액이 결정된다면 탈퇴에 필요한 실제 금액도 다를 것이다.
- BC249 IASB는 기업이 제도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부채가 IAS 37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IAS 19에서 명시적이지 않았지만, IASB는 2011년 개정에서 이를 명시하였다. 기업이 제도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을 때 추가적인 부채를 기업이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한 US GAAP의 비슷한 요구사항과 합치된다.

미래 기여금

BC250 IASB는 향후 5개 연도에 대한 기여금을 공시하는 2010년 공개초 안의 제안사항은,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매우 주관적일 수도 있는 추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제출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 공시사항을, 기업이 다른 연차기간의 확정급여 제도에 대한 예상기여금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일관성을 맞추었다. IASB는 사외적립 약정과 사외적립방침에 관한 설명에 대한 공개초안의 제안을 확정하였다.

참여의 정도

BC251 2011년 개정에서는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기업에게, 다른 제도참여자와 비교하여 그 제도에 참여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공시를 요구한다. 전체 제도에 관한 정보와 함께, 그 공시는 초과적립액과 과소적립액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BC252 IASB는 기업의 참여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측정치의 예를 제공하였지만, 하나의 측정치가 모든 경우에 관련성이 있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특정한 측정치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근무중사망급여

BC253 E54에서는 근무중사망급여가 외부에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퇴직급여제도를 통해서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IASC는 그러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C는 근무중사망급여에 대한 지침을 삭제하였다.

해고급여: 2011년 개정

BC254 2005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서는 해고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시 해고급여(one-time termination benefits)'와 관련된 FASB ASC® 주제 420 '청산 또는 처분원가의무(Exit or Disposal Cost Obligations)'와 '특별해고급여(special termination benefits)'와 관련된 FASB ASC® 주제 712 '보상 - 기타 퇴직급여(Compensation - Nonretirement Postemployment Benefits)'와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 개정의 도입 이후에도 US GAAP과의 차이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제안된 개정이 US GAAP의 일부 요구사항과 일관될 것이고 해고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았다. 해고급여에 대한 제안은 2005년 ED에서 IAS 37의 구조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IASB는 2005년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해 123 개의 검토의견을 받았다.

BC255 IASB는 다음을 고려하였다.

- (1)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문단 BC256~ BC257 참조)
- (2) 해고급여의 인식(문단 BC258~BC260 참조)
- (3) 해고급여의 측정(문단 BC261 참조)
- (4) 구조조정원가, 제도 개정, 축소, 정산의 상호작용(문단 BC262~BC268 참조)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BC256 IAS 19에서는 해고급여를 그 밖의 종업원급여와 별도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의무가 생기는 사건이 근무용역이 아니라 해고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FASB ASC® 주제 420에서는 일부 비자발적인 해고급여를 종업원의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또는 '체류보너스(stay bonus)'로도 표현]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US GAAP에서는 기업은 종업원의 근무용역기간동안 이 급여의 원가를 그 밖의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인식한다.

BC257 2005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주제 420과 일관되게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해고급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인식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1년 개정을 마무리할때 IASB는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일부 급여를 해고급여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를 단기또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또는 퇴직급여로 처리함으로써 주제 420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할 것이고(즉 그 급여의 원가는 근무기간동안 인식될 것이고), 해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급여와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유지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인식

BC258 2011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해고급여를 제공하기로 명시적으로 확약할 때 해고급여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특정하였다. 그 결론을 재검토할 때 IASB는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 (1) 종업원이 받아들이기 전에 기업의 재량에 따라 철회할 수 있는 해고급여의 제안
- (2) 기업이 철회할 수 없는 해고급여(종업원을 해고하려는 기업의 결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의 제안(즉 종업원은 주어진

해고급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없는 경우)

BC259 IASB는 인식시점을 결정하는 요소는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의 경우 종업원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때가 이에 해당할 것이며, (2)의 경우에는 기업이 영향을 받는 종업원에게 해고계획을 전달하는 시점에 해당할 것이다. IASB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업은 해고급여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며 따라서 부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BC260 해고계획과 관련된 주제 420의 기준은, 기업이 해고계획을 명시적으로 확약하고 따라서 해고급여를 인식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하는 2011년 개정 전 IAS 19의 기준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전 판의 IAS 19에서는 종업원에게 해고계획을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이없었다. IASB는 기업이 영향을 받는 각 종업원에게 해고계획을 전달할 때까지 기업에게 해고급여를 제공하는 현재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IASB는 해고계획과 관련된 IAS 19의 기준을 주제 420의 기준으로 대체하였다. 비록 이 기준들은 매우 유사하였지만 IASB는 이 기준들이 동일하다면 더 나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측정

BC261 2011년 개정 전 IAS 19에서는 보고일 이후 12개월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해고급여를 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가적인 측정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IASB는 해고급여의 측정은 그급여의 성격에 따른 측정 규정과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를 개정하였다.

제도 개정, 축소, 정산, 해고급여와 구조조정 원가의 상호작용

- BC262 2011년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IASB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 (1) 제도 개정과 축소는 일어났을 때 인식하여야 한다(문단 BC15 4~BC159).
 - (2) 기업이 해고급여를 제공하는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해고급여를 인식하여야 한다(문단 BC258~BC260).
- BC263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제도 개정, 축소, 정산, 해고급여, 구조조정 간의 상호작용을 회계처리하는 것을 우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종종 함께 일어나며, 인식 규정이 서로 다르거나 확정급여원가의 서로 다른 요소에 포함된다면, 각 거래에서 생기는 손익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제도 개정, 축소, 정산, 해고급여, 구조조정이 관련된다면 이들에 따른 금액을 인식하는 시기를 서로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 BC264 2011년 개정 전 IAS 19의 요구사항은 축소의 인식시기를 관련 구조조정의 인식시기와 맞추었고, 기업이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기업이 축소를 회계처리하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규정의 목적은 축소로 인한 손익을 관련 해고급여, 구조조정 충당부채 또는 이 둘 모두에서 생기는 비용과 동일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었다. 2011년 개정 전 IAS 19와 IAS 37에서 해고급여와충당부채의 인식기준은 구조조정 충당부채와 서로 매우 비슷하였으며, 이 두 기준서에서 기업이 그 거래를 명시적으로 확약하였을 때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련 해고급여와구조조정이 동시에 인식되었을 것이다.
- BC265 2005년 공개초안에서는 축소의 인식시기를 관련 구조조정과 맞추는 것에서 관련 해고급여와 맞추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이 개정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시점에 해고급여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 하는 단계

중이기 때문이었다.

- BC266 관련 거래를 인식하는 시기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하여 IASB는 다음을 결정하였다.
 - (1)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인식한다.
 - (개) 제도 개정이 일어날 때
 - (내) 관련 구정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 (2) 해고급여는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인식한다.
 - (개)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 (내) 관련 구조조정원가가 인식될 때
- BC267 또 IASB는 제도 개정 또는 축소의 인식시기를 관련 해고급여와 맞추지만 관련 구조조정과 맞추지 않는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을 포함하는 그 밖의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2011년 개정은 그 밖의 접근법에 대하여 다음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 (1) 2011년 개정은 축소, 해고급여, 구조조정의 모든 조합에 대해 관련 거래의 인식시기를 맞춘다(현재의 규정과 일관됨).
 - (2) 2011년 개정은 제도 개정과 축소에 대하여 개발된 독립된 인식기준을 포함한다(즉 제도 개정은 일어날 때 인식될 것이다).
- BC268 2005년 ED에서는 구조조정원가에 대한 특정 인식기준이 IAS 37 에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가 이 제안을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구조조정원가의 인식시기에 대한 언급은 중복될 것이며 제도 개정과 축소에 대한 인식시기는 오직 해고급여의 인식시기와 맞추어 질 것이다. IASB는 2005년 공개초안에 따른 IAS 37의 개정을 마무리할 때 구조조정원가에 대한 인식시기를 검토할 것이다.

경과 규정

- BC269 2011년 개정은 다음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IAS 8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 (1) IAS 19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초 이전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종업원급여원가의 변동에 대하여 조정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기업은 이러한 조정을 재고자산과 같은 자산의 장부금액에 배분하는 대신 자본을 조정함으로써 이전에 미인식된 보험수리적 손익과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할 수도 있다. IASB의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배분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익은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이다.
 - (2) 201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서, 기업은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에 대한 비교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IASB는 기업이 필요한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면제사항을 제공하였다.

최초채택기업

BC270 IFRS를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은 IFRS 1에 따라 2011년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IASB는 문단 BC269(2)와 같은 이유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이 문단 173(2)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시적인 면제사항을 포함하였다.20)

조기 적용

BC271 2011년 개정은 회계처리를 개선할 것이며, 특히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보고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시사항을 개선할 것이다. 또 개정사항 중 일부는 실무에서 IAS 19를 적용할 때 존재하던 문제를 다루고 있다. IASB는 IAS 19의 이전 판에서 2011년 개정사항의 대부분을 허용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

^{20) 2016}년 12월에 공표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 '에 따라 IFRS 1을 개정하여 최초채택기업 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단기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다(IFRS 1 문단 BC99 참조).

서 IASB는 2011년 개정의 조기 적용을 허용하였다.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의 경과 규정

BC271A ED/2013/4에서 IASB는 소급적용과 조기 적용 허용을 제안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일부 계산을 위해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가 필요할 수 있기때문에 소급적용이 실행 가능한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IASB는 현행 실무상 제삼자나 종업원의 기여금은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에 배분되지 않고 근무원가에서 차감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제안된 개정 내용은 완화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IAS 19의 2011년 개정 전의 일반적 관행대로 기업이 기여금을 근무가 제공된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이러한 경우 소급적용의 효과는 작을 것이다. IASB는 소급적용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BC271B 2011년에 발표된 IAS 19의 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2013년 에 발표된 개정의 목적은,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완화된 규정을 제공하는 데 있고, 따라서 시행일은 가능한 빨리 정하되 각국이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로 하고, 조기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FRS 2012-2014 연차개선

BC271C 2014년 9월에 발표된 IFRS 2012-2014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83이 수정되었다. IASB는 일부 기업에게 개정 내용을 완전 소급적용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IASB는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최초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

간의 기초부터 이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개정 내용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최초 조정액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해야 한다.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2018년 개정

- BC271D IASB는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IAS 19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 (1) 소급 적용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 재측정금액을 자본의 별도 요소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일부 기업에 유의적인원가가 발생할 수 있다. 문단 BC173C~BC173D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준서의 개정으로 문단 99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여부와 재측정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그러한 기업들은 수년 전에 발생하였던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을 재검토하여 해당일자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해야 할 수도 있다.
 - (2)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은 별개의 일회성 사건이므로 소급적용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추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3) 소급적용은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의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 익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이나 재 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BC271E IASB는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면제조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IFRS 1에서 최초채택기업이 IAS 19의 요구사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IAS 19의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소급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의 소급 적용을 면제해주는 것은 그 효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010년 공개초안과 2005년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내용 요약: 2011년 개정

BC272 2010년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011년 개정에서는 순이자요소를 당기손익에서 표시하여야 하는 위치를 특정하지 않았다.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순이자요소를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금융원가의 일부로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2) 2011년 개정에서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근무원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재측정요소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3) 2011년 개정에서는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되었던 다음의 공시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개) 예상되는 급여 상승을 제외한 확정급여채무
 - (나)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근무원가의 민감도
 - (다) 인구동태적 보험수리적 가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4) 2011년 개정에서는 제도 개정, 해고급여, 구조조정원가의 인식 시기를 맞추고 있다.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제도 개정과 해고 급여의 인식시기만을 맞추자고 제안하였다.
- (5) 2011년 개정에서는
 - (가)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과 달리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 원급여 범주를 통합하지 않는다.
 - (山)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과 달리 예상되는 미래급여상승은 급여계산방식이 중요하게 높은 수준의 급여를 후반에 배분 하는지를 결정할 때 포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 (대)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과 달리 IFRIC 14를 통합하지 않는 다.

BC273 2005년 공개초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2011년 개정에서는 기업이 더 이상 해고급여의 제안을 철회할 수 없을 때 해고급여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공개초 안에서는 종업원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자발적인 해고급여 가 인식되어야 하고, 기업이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비자발적인 해고급여가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 (2) 2011년 개정에서는 해고급여에 대한 측정 규정을 명확히 한다.

US GAAP과의 상호합치: 2011년 개정

복수사용자제도 공시사항

BC274 2010년 3월에 FASB는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한 기업의 참여에 관한 공시를 검토하고, 복수사용자제도에 참가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에 관하여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요구사항을 개발하는 새로운 과제를 발표하였다. FASB는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과 관련된 공시요구사항과 비슷한 공시요구사항을 포함한 ASC의 제안을 2010년 2분기에 발표하였다. FASB는 최종 ASC를 2011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확정급여원가의 인식

- BC275 2011년 개정은 US GAAP과 일관되게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초과적립액 또는 과소적립액의 측정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US GAAP과 IAS 19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즉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변동이 인식되는 위치에는 차이가 있다.
- BC276 US GAAP은 순기간연금원가²¹)는 현행근무원가,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예상수익, 인식되지 아니한

이전의 근무원가의 상각(존재하는 경우), 특정 범위를 초과한 후 인식되고 상각되는 손익(존재하는 경우), 미인식된 최초 순채무 그 리고/또는 순자산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 IAS 19의 확정급여 원가 세분화에 대한 규정과 확정급여원가 구성요소의 인식에 대한 규정은 US GAAP의 요구사항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1) 사외적립자산 수익의 세분화: US GAAP은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그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를 구분한다. IAS 19의 순이자접근법은 사외적립자산에 내포된 이자수익과 그 내표된 이자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를 구분한다.
- (2) *과거근무원가*: US GAAP에서는 과거근무원가를 최초에 기타 포괄손익에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IAS 19에서는 과거근무원가를 현행근무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3) *제분류*: US GAAP에서는 후속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요구한다. IAS 19에서는 후속적인 재분류를 금지한다.

해고급여

BC277 FASB ASC 주제 420은 '일시 해고급여'로 알려져 있는 해고급여의 종류에 대한 회계처리를 특정하고 있다. 주제 420에서는 기업이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해고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체류보너스'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인식하고 그 밖의 해고급여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개정에서는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와 해고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를 구분한다. '체류보너스'는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IAS 19에따르면 해고급여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IAS 19의 문단 70에 따라 근무기간에 배분될 것이다.

²¹⁾ FASB ASC 715-30-20 확정급여제도: 연금용어

BC278 FASB ASC 주제 712에서는 '특별해고급여'로 알려져 있는 해고급여의 종류에 대한 회계처리를 특정하고 있다. Topic 712에서는 종업원이 기업의 해고급여 제안을 받아들일 때 이 특별해고급여를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IAS 19 개정은 이 요구사항과일관된다. 주제 712에서는 또한 '계약상 해고급여(contractual termination benefits)'로 알려져 있는 해고급여의 종류에 대한 회계처리를 특정하고 있다. 주제 712에서는 종업원이 급여에 대한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때 기업이 계약상 해고급여를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개정은 이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대신 IAS 19에서는 기업이 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그 급여를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BC279 FASB ASC 주제 420에서는 기업이 '일시(one-time)' 해고급여를 공정가치(또는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금액)로 측정할 것을 특정하고 있다. IASB는 해고급여에 대한 IAS 19의 측정 규정을 주제 420과 일치시키지 아니하였다. IASB는 기업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를 통해 (예를들면, 퇴직금을 증가시킴으로써) 해고급여를 제공할 때 기업이 공정가치로 급여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특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해고에서 생기는 변동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적으로 제도의 나머지 변동과 분리시킬 것을 요구한다.

원가-효익 고려사항: 2011년 개정

BC280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상태, 성과, 기업의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IASB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FRS가 유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출되는 정보의 전반적인 효익이 이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비록 기존의 규정에 대한 변동을 실행하기 위한 원가를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재무보고가 개선되고, 그 결과로서 자본시장 및 신용시장의 기능과 경제에서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촉진되어 효익을 얻게 된다.

- BC281 원가와 효익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IASB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였다.
 - (1) 재무제표작성자에 의해 생기는 원가
 - (2)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에 의해 생기는 원가
 - (3) 재무제표이용자가 대용정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기는 원가와 비교하여 재무제표 작성자가 그 정보를 마련하는 경우의 비교 우위
 - (4) 개선된 재무보고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의사결정의 효익
 - (5) 이용자, 작성자 등의 이행 원가
- BC282 2011년 개정의 목적은 기업의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미래현금 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의 평가를 위해 이용자에게 이용가능한 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또한 제안된 개정사항의 실행원가와 계속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원가를 고려하였다. 제안된 개정사항의 상대적인 원가와 효익을 평가하면서 IASB는 종업원급여작업반과의 회의에서 얻은 정보에서 도움을 받았다.
- BC283 개정사항은 다음을 통해 재무제표이용자가 퇴직급여에 대한 재무 보고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1)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변동과 사외적립자산의 변동을 보다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보고한다.
 - (2) IAS 19에 의하여 허용되는 일부 인식조건을 삭제하여 비교가

능성을 개선한다.

- (3) 다양한 실무관행을 일으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 (4) 기업이 확정급여제도에 관여하는 데 생기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개선한다.

BC284 개정사항의 채택과 계속적인 적용을 위해서 원가가 생길 것이다. 이 원가는 기업의 확정급여약정의 복잡성과 기업이 현재 적용하기로 선택한 IAS 19의 선택권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이전 판의 IAS 19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사항이 요구하는 정보의 많은 부분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원가는 매우 작은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개정사항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믿는다.

IAS 19에 대한 소수의견

2004년 12월의 '보험수리적손익, 연결집단제도 및 공시(Actuarial Gains and Losses, Group Plans and Disclosures)(IAS 19에 대한 개정)'의 공표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과 Tatsumi Yamada 위원의 반대

Leisenring 위원

- DO1 Leisenring 위원은 IAS 19 개정 '보험수리적손익, 연결집단제도 및 공시'를 공표하는 데 반대한다.
- DO2 Leisenring 위원은 문단 40의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고 문단 41과 42를 추가하는 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Leisenring 위원은 연결실체 내의 기업이 (종업원에게 확정급여약속을 하면) 그러한 확정급여약속을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Leisenring 위원은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가 IFRS에 따라 작성한 것이 되려면 IFRS에 따라 작성된 다른 재무제표와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Leisenring 위원은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도 확정급여제도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문단 41의 규정을 도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 DO3 Leisenring 위원은 연결실체 내의 기업이 제도 전체에 관하여 주석공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주석공시만으로는 IAS 19에 따른 인식과 측정을 적절히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

Yamada 위원

DO4 Yamada 위원도 IAS 19 개정 '보험수리적손익, 연결집단제도 및 공시'를 공표하는 데 반대한다.

DO5 Yamada 위원은 보험수리적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모두 인식하는 기업의 경우, 비록 이전의 IAS 19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식손익표에 당기손익과 구분하여 인식할 수도 있게 선택권을 추가하는 데는 동의한다. 또 그러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기존 IAS 19에 따라 일반적으로 선택되었던 이연 인식법보다는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그러나 Yamada 위원은 모든 수익과 비용항목은 언젠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항목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기 전까지는 이익잉여금과 구분되는별도의 자본계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항목이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에는 별도의 자본계정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Yamada 위원은 문단 93D의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DO6 Yamada 위원은 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험수리적손익을 처음에는 인식손익표에 인식하였다가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또 Yamada 위원은 IFRS에 따르면 일부 손익이 별도의 자본계정에 직접 인식되었다가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Yamada 위원은 그러한 회계처리를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DO7 누적보험수리적손익은 제도가 수명을 다하거나 기업의 외부로 이전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별도의 자본계정에 인식되었던 누적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는 연결집단의 보고통화와는 다른 측정통화를 갖는 종속

기업에 대한 환율변동손익의 회계처리와 일관될 것이다.

DO8 따라서 Yamada 위원은 문단 93D의 규정을 추가하면 새로운 선택권을 주더라도 재무보고가 개선되지 못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보험수리적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여 이익잉여금에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2011년 6월에 개정된 IAS 19의 공표에 대한 Jan Engström 위원과 Tatsumi Yamada 위원의 반대

Engström 위원

- DO1 Engström 위원은 2011년 IAS 19의 개정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였다. 이 과제는 모든 퇴직급여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과 범위접근법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범위의 과제였다.
- DO2 Engström 위원은 과제수행기간 동안에 이 과제의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측정원칙에 대한 검토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보았다. 최근의 금융위기 동안 IAS 19의 측정규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한 기업의 확정급여채무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거시경제지표를 가지고 있는 인근 국가에서 영업하며 동일한 확정급여채무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50% 정도 많을 수 있다.
- DO3 Engström 위원은 2011년 IAS 19 개정은 기업의 활동과 진정으로 관련된 일부 수익과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원칙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조정은 많은 기업들에게 매우 유의적인 금액이었으며, 이러한 조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기타포괄손익에만 표시함으로

써 이 과제는 당기손익의 개념을 점진적으로 훼손시킨다.

- DO4 Engström 위원은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정과 일관되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측정요소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근거는 없다고 본다.
- DO5 Engström 위원은 측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IAS 19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선호할 것이며, IASB가 당기손익이 무엇인지, 기타포괄손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후속적으로 당긴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입장을 취한 이후에만 표시방법이 결정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 DO6 IAS 19에 대한 개정과 IFRS 9에 도입되었던 선택권의 결과로서, 일부 중요한 금액이 결코 당기손익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IFRS 9은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일부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도입하였다. Engström 위원은 기업의 활동과 진정으로 관련된 일부 사항이 당기손익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의 임시적 결정은 사실상 단일의 손익계산서에 의한 재무보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Yamada 위원

- DO7 Yamada 위원은 2011년 IAS 19의 개정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였다.
- DO8 Yamada 위원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와 확정급여채무의 모든 변동을 발생한 시점에 즉시 인식하는 것이 이연 인식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IASB의 견해(문단 BC70)에 동의한다. Yamada 위원은 또

한 즉시 인식이 확정급여채무를 보다 충실한 표시하며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더 쉬울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DO9 그러나 Yamada 위원은 다음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

- (1) 확정급여원가의 세분화(문단 DO10 참조)
- (2)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순이자와 재측정요소의 정의(문단 DO11~DO14 참조)
- (3)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문단 DO15~DO17 참조)

확정급여원가의 세분화

DO10 Yamada 위원은 문단 120에서 확정급여원가를 구성요소(즉, 근무원가,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로 세분화하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표시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Yamada 위원의 견해로는 재무상태표에서 단일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표시하는 것과 일관되게 하기 위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단일의 순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명시하지아니하는 문단 134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세분화된 정보의 유용성은 이해하지만,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그러한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와 재측정요소의 정의

DO11 Yamada 위원은 문단 120에 설명되어 있는 세분화(근무원가, 순이 자 및 재측정요소)에 아무런 원칙도 없다고 본다. 특히 그는 순확 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측정하는 접근법이 재무보고를 개선

하지 않는다고 본다.

- DO12 Yamada 위원은 문단 125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중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구성요소를, 확정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자율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그는 문단 BC82에 요약되어 있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즉, 사외적립자산이 서로 다른 많은 종류의 투자자산으로 구성될수 있고 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익은 자의적이며 투자자들이 각 유형의 자산에서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수익을 충실하게 나타내지못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Yamada 위원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사용하는 이전의 요구사항을 대신하여확정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 DO13 Yamada 위원은 IASB가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이자요소와 재측정요소로 나누는 데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실용적인 접근법[으로서] 부채를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을 [사외적립자산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문단 BC82)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이전 판의 IAS 19에 의하여 사용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에 의한 판단을 요구하지만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는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추정하는 것은 그 밖의회계추정과 같은 정도의 판단을 요구한다고 본다.
- DO14 Yamada 위원은 재측정요소의 성격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이 금액을 세분화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본다. 이전 판의 IAS 19에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은 경험조정, 즉 이전 기간의 보험수리적 가정(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과 실제 발생한 결과와의 차이의 영향으로 정의되었다. 그

러나 BC86에서는 재측정요소의 성격을 근무원가와 순이자요소를 결정한 후의 잔여분으로 설명하고, 문단 7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반복하고 있다.

재측정요소의 기타포괄손익 표시

문단 BC88에서는 '재측정요소에 포함된 변동이 미래현금흐름의 DO15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적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측정요소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 되어야 한다는 IASB의 근거를 명시한다. Yamada 위원은 사외적 립자산의 실제 수익은 회계기간 중 사외적립자산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수익을 이자수익과 재측정요소로 세분화 하는 것은 미래현금흐름의 발생가능한 시기와 금액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초과하는 사외적 립자산의 실제 수익이 발생할 때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 익으로 표시되는 것은 사외적립자산의 성과를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대신 모든 구성요소는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표시되어 야 한다. 따라서 그는 문단 120(3)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견해 로는 재측정요소를 나타내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DO16 Yamada 위원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대한 정의로 인해 사외적립자산에 적용되는, (확정급여채무를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이자율과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률과의 차이가 기타포괄 손익으로 표시된다는 데 주목한다. 이렇게 되면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확정급여채무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차이의 효과가 당기손익에서 없어진다. 그의 견해로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이익평준화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제안이 IAS 19의 이전 판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고 본다.

DO17 IASB가 확정급여원가의 일부(즉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결정한 경우에도, 그는 IASB가 보험수리적손익과 유사하지만 명백하게 더 우월하지 않은 재측정요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이전 판의 IAS 19와 같이 보험수리적손익의 개념을 유지했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문단 DO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Yamada 위원은 이러한 차이가 개정된 재측정요소보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9호(IAS 19)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 19호(IAS 19)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을 제한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을 밝히기 위하여 문단 한2.1을 추가하였다. 이 수정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접두어 '한'을 붙여 구분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9호(IAS 19)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가 IAS 19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를 따르면 동시에 IAS 19를 따르는 것이 된다.

이 기준서의 개요

- IN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는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와 공시사항을 정한다. 이 기준서는 종업원급여제도에 의한 재무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참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2 이 기준서는 종업원급여를 4가지 범주로 식별한다.
 - (1)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 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유급연차휴가, 유급병가, 이익분 배금·상여금,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 택, 자동차, 무상이나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용역) 등
 - (2) 퇴직급여: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그 밖의 퇴직급 여(예: 퇴직후생명보험, 퇴직후의료급여 등)
 -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장기유급휴가(예: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등
 - (4) 해고급여
- IN3 이 기준서에 따라 단기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단기종업원급여를 인식한다.
- IN4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 이 기준서 에서는 복수사용자제도, 공공제도, 보험에 가입된 급여제도를 분류하는 특정한 지침을 제공한다.
- IN5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은 별도의 실체(기금)에 고정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

더라도 기여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을 것이다. 이 기준서에 따라 기업은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그 기여금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한다.

IN6 확정기여제도 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다. 확정급여 제도는 기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전부나 일부의 기금을 적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준서에 따라 확정급여제도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법적의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 의무에 대해서도 회계처리한다.
- (2)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재무 제표에 인식된 금액이 보고기간 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산정한다.
- (3) 기업의 채무와 원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한다.
- (4)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의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의 급여 수 준보다 중요하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계산방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한다.
- (5) 인구통계적 변수(예: 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와 재무적 변수 (예: 미래의 임금상승률, 의료원가변동률, 공공급여의 특정한 변동)에 관하여 편의가 없고 양립할 수 있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한다. 재무적 가정은 채무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예상치에 기초한다.
- (6)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한 회사채나 국채의 통화와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 지급 시기와 일관되어야 한다.
- (7)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결정하기 위하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

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다. 사외적립자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보상권은 사외적립자산과 동일하게 처리하지만,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개의 자산으로 표시한다.

- (8) 순확정급여자산의 장부금액이 퇴직급여제도에서 환급이나 미래 기여금 절감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지 않 도록 제한한다.
- (9)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모든 변동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개) 근무원가와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내)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 IN7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급여는 기타장 기종업원급여이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이 기준서에 따라 퇴직급여 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측정하지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부채 의 장부금액의 모든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는 기타 장기종업원급여에 관하여 특별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 IN8 해고급여는 정상적인 퇴사일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기업의 결정이 나 해고에 대한 대가로 기업이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는 종업원의 결정에 의해 생긴다. 해고급여는 다음 중 이른 날에 인식한다.
 - (1)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을 때
 - (2) 관련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할 때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이 기준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8. 5.25. 개정	종업원급여	IAS 19 Employee Benefits
2015. 2.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Annual Improvements to
	2012-2014 연차개선	IFRSs 2012-2014 Cycle
2014.12.19. 개정	번역개선	-
2014. 4.25. 개정	종업원급여	IAS 19 Employee Benefits
2011.11.11. 개정	종업원급여	IAS 19 Employee Benefits
2008.11.28.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Annual Improvements to
	연차개선	IFRSs
2007.11.23. 제정	종업원급여	IAS 19 Employee Benefits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 ·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타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21. 4.23.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IFRS 17 Insurance Contract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Amendment to the
2018.11.14. 개정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	References to Conceptual
	정'	Framework in IFRS
2017. 2.24.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Annual Improvements to
	2014-2016 연차개선	IFRSs 2014-2016 Cycle
2015. 9.25.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금융상품	

개정 주요 내용

○ 2011년 11월 개정

1. 인식

- 이번 개정에서는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허용하고 있던 범위접근법을 폐지하고,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변동을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도록 하였다.

2. 표시

- 이번 개정에서는 일관성 있는 표시를 위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 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선택권을 삭제하였으며, 순확정급여 부채(자산)의 변동을 3개의 구성요소(근무용역원가, 순이자 및 재측정요 소)로 분리하고, 이 중 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3. 공시

- 이번 개정에서는 공시사항의 이해가능성과 유용성을 개선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확정급여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부채와 자산의 재무적인 영향을 보다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 ①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
 - ②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상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 ③ 확정급여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정보

○ 2014년 4월 개정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개정)에서는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보고일 이전의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미래 기여금의 현재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무기간에 부(-)의 급여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종업원이나 제삼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는 확정급여제도에 대하여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수행하면 복잡성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종업원 등의 기여금이 기여금 지급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만 연계되는 경우, 근무원가에서 동 기여금을 차감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하였고, 종업원 등의 기여금을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에 반영할 때(즉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나 제삼자의 기여금의 배분은 문단 70에 따른 총급여의 배분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문단 93에 명시하여 총급여와 기여금의 배분방법을 명확하게하였다.